

광주김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김치타운 2차 예정부지 활용방안



광주김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김치타운 2차 예정부지 활용방안



연구진

김현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 세계적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광주 광역시는 김치산업의 세계적 도약을 표방
- 광주세계김치축제 개최, 김치타운 조성 등 김치 세계화를 위한 토대와 기반을 축적해오고 있음
- 광주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던 부지를 3개년에 걸쳐서 구입할 예정이며 부지 활용이 중요한 과제가 됨
 - 매입기간은 2020~2023년, 매입가격은 25,550백만원(3년 분할상환)
-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구입을 완료할 부지 활용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의 목적임
 - 부지는 旣 조성되어 있는 김치타운의 가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1,292.2㎡(약 6,441평)

□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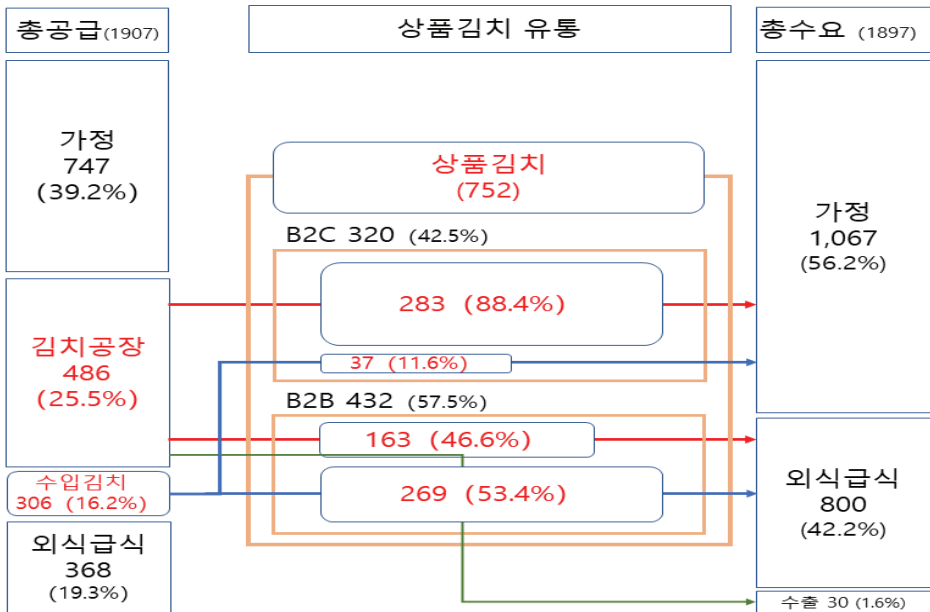
- 우리나라 및 광주의 김치산업의 현황과 실태에 비추어 본 김치산업의 문제점 도출
-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김치타운의 여건 및 기능, 필요한 과제 확인
- 김치산업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김치타운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지활용의 최적 방안을 개발

2.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 김치산업 실태분석

- '19년 김치 총공급량은 1,907톤, 수요량은 1,867톤, 김치업계 총매출은 1조 6,185억원, 9,510명이 종사
 - 총공급 주체는 가정 39.2%, 김치공장 25.5%이며, 총수요는 가정 56.2%임

〈그림 1〉 김치산업의 구조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21. 6. 25 발표자료

- '19년의 경우, 김치업계의 총매출액은 1조 6,185억원이며, 9,510명이 김치 업계에 종사하고 있음
- 식약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김치류 제조업체 수는 943개임

- 전체 가구의 41.7%가 김치를 직접 담가 먹으며, 그 가운데 배추김치가 전체의 72.0%를 차지하고 있음
- 문제는 김치업체 규모의 영세성, 원료 조달 불안정, R&D 및 홍보판매 부족, 통계정비 부족, 해외 김치수입 증가로 인한 원재료 자급률 하락 등임
 - 11.8%만 R&D 수행, 자급률은 2000년 100%→ '15년 86.7%→ '19년 76.0%
- 김치업체는 자금·생산인력·전문인력 양성 지원, R&D·정보제공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이 필요

□ 광주광역시 김치산업 실태

- 육성기반은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김치산업 육성계획' 등이 존재
- 광주광역시의 김치 사업체수는 전국 대비 4.9%('18), '19년 김치 생산량은 전국 대비 1.1%('13년 대비 112.2% 증가)
- '20년의 경우, '18년 대비 수출은 50% 증가, 수입은 6.8% 증가하였으며, 수출에 비해서 수입의 증가가 낮음
- 지역별 김치 사업체수는 광산구, 북구, 동구와 남구, 서구의 순을 보이고 있음

□ 김치산업 육성 대응과제 도출

- 김치 소비량 감소 등 식생활 패턴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우수 김치자원, 김치명인 이점 활용한 김치산업의 지속적 육성 필요
- 김치 도시 광주의 이미지 확산 및 증추적 기능 강화 필요

□ 김치타운 진단 및 분석

- 지난 10여년에 걸쳐서 광주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음
- 2010년 김치타운 건립, 2012년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2017년 전통발효식품단지 건립 등 김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음
- 교육 및 체험, 홍보, 김치생산과정 견학 등의 기능 뿐 아니라 조합과 공방을 위한 공간의 제공, 김치 박물관 및 자료 축적
-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담, 총괄 기능의 부족으로 김치타운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능의 연계 및 업그레이드에 한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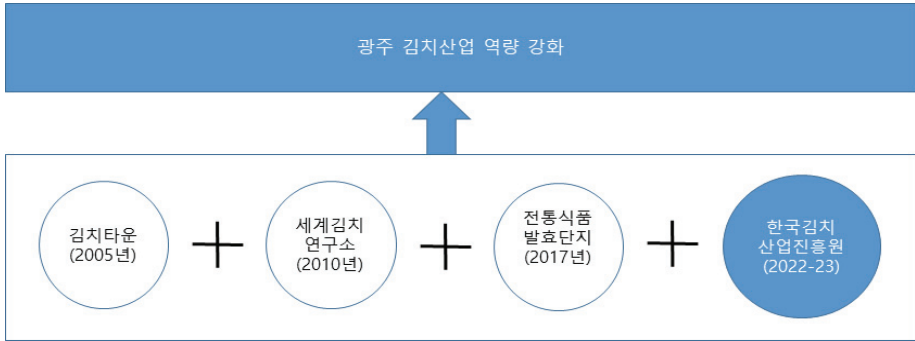
3. 부지활용 방안의 개발

□ 최적안 선택 방법

- 절차는 실태분석과 진단을 토대로 과제해결을 위한 대안 설정→검토기준→대안 평가를 통해 최적 방안 도출
- 기준은 1차적으로 부지활용이 김치타운의 한계극복 및 광주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2차적으로 전남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대안 검토의 접근은 단일기능 수행하는 공간 VS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 최적의 부지활용 방안은 복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김치산업진흥원 공간으로 활용
 - 전국 및 광주의 여건, 대학 및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김치산업 및 기업 관계자, 협회, 조합, 공무원 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김치산업진흥원의 기여

- 총괄적으로는 기존의 김치 인프라 축적과 연계하여 김치 총괄 전담 지원기관으로 광주광역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김치산업 발전 기여
- 광주광역시 측면에서는 △기존 축적의 다양한 김치 인프라와 연계한 김치산업의 역량 강화(타 지역에 비해 입지 조건 유리), △세계김치연구소의 불안정한 기능과 시너지 효과 창출, △세계 김치도시 광주 도약의 토대 확보에 기여



- 국가 측면에서는 △중국 김치공정 등 글로벌 김치산업 문제 대응, △김치산업지원의 종합성·체계성 강화, △김치연구기관 및 통계산출기관 난립 문제 해소, △김치산업의 총괄적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가능

□ 김치산업진흥원 기능 및 설립

- 광주광역시 김치 관련 조례, 김치산업육성계획, 「김치산업진흥법」 규정 상의 사무를 수행
 -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조사·연구, 사업개발, 정보구축), 진흥사업(기술·품질,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 설립 형태에 대한 검토
 - 정부출연기관, 정부기관·정부출연기관의 부설기관, 지자체 출연 기관의 설치방안(근거법, 설치요건), 장단점 검토, 쟁점 사항 검토

- 시너지 효과, 인프라 축적, 기능 중복 측면에서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산업진흥원 간의 쟁점 검토
- 최적안으로 정부출연기관의 법적 지위를 가진 김치산업진흥원을 세계김치연구소와 연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 설립의 규모는 기능과 역할 사무를 수행하는데 최적의 조직, 인력, 예산으로 구성
 - 기능과 역할 등의 증가에 대비하여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

4. 후속적 추진사항

□ 세계김치문화단지 조성

- 기능적, 시간적, 공간적 측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김치산업진흥원 설립과 연계해서 김치타운을 세계김치문화단지로 육성

□ 후속적 추진 사항

- 광주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치산업진흥원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의 시행, 김치산업진흥원 설립의 타당성 조사, 관련 조례 등 제도의 정비

제1장 |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3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체계	7

제2장 | 김치산업의 현황과 과제

제1절 김치산업의 중요성	11
1. 김치의 정의	11
2. 김치산업의 중요성	15
제2절 김치산업의 제도 및 시책	17
1. 법률	17
2. 주요 시책	21
제3절 전국 김치산업의 현황과 한계	29
1. 김치산업 총괄	29
2. 김치의 제조 및 생산	31
3. 김치산업의 유통 및 판매	37
4. 김치산업의 한계 및 시사점	43
제4절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현황과 과제	48
1. 제도적 기반	48
2. 김치산업 현황	54
3. 환경변화 대응 및 과제	58

제3장 | 광주광역시 김치타운의 진단과 과제

제1절 김치타운의 현황과 특성	61
제2절 김치타운의 진단과 분석	68
제3절 김치타운의 활성화 과제	78

제4장 | 김치타운 부지의 활용 방안

제1절 방안개발의 개요	83
1. 방안개발의 프로세스	83
2. 개발한 방안의 주요 내용	84
3. 최적 방안의 선택	85
제2절 부지의 활용: 김치산업진흥원	89
1. 설립의 필요성	89
2. 기능 및 사무	100
3. 설립 및 운영 형태	107
4. 설립의 규모	135
제3절 연계적 공간 활용	141
1. 활용의 개요	141
2.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부지 연계	142
3. 김치타운 장기 비전 연계	148

제5장 | 후속적 추진사항

제1절 유관 연구의 축적	155
제2절 타당성 조사 시행	156
제3절 조례 등 기반 정비	157

【참고문헌】	159
---------------------	-----

【부 록】

1. 김치산업 진흥법	161
2.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171
3. 식품산업진흥법	179

〈표 2-1〉 형태별 김치 종류	12
〈표 2-2〉 계절별 김치 종류	13
〈표 2-3〉 전국의 지역별 김치	14
〈표 2-4〉 김치의 영양과 효능	16
〈표 2-5〉 「김치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	18
〈표 2-6〉 「식품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	20
〈표 2-7〉 김치산업육성방안의 주요 내용	23
〈표 2-8〉 김치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자원 투자계획	24
〈표 2-9〉 김치 R&D 로드맵의 주요 내용	25
〈표 2-10〉 김치산업 육성 관련 직접적인 지원 사업	27
〈표 2-11〉 김치산업 육성 관련 간접적인 지원사업	28
〈표 2-12〉 국내 김치산업의 규모	29
〈표 2-13〉 김치 제조업체수의 연도별 현황	31
〈표 2-14〉 김치 제조업체수의 종업원수 및 매출액	32
〈표 2-15〉 품질관리 운영 여부	32
〈표 2-16〉 연구·개발(R&D) 운영 여부	33
〈표 2-17〉 김치산업 제조 분야별 투입 비용	34
〈표 2-18〉 업체별 저온 저장창고 보유	34
〈표 2-19〉 김치산업 종사자 인력 현황	35
〈표 2-20〉 김치산업 연령별 종사자 현황	35
〈표 2-21〉 김치판매 상위 업체의 판매 집중도	36
〈표 2-22〉 김치산업의 국내외 매출 현황	37
〈표 2-23〉 김치의 국내 판매 채널	38
〈표 2-24〉 주요 대상국의 김치 수출	39
〈표 2-25〉 대일본 김치 수출 현황	39
〈표 2-26〉 주요 대상국별 김치 수입액	40
〈표 2-27〉 김치 관련 통계작성 기관과 통계의 주요 내용	46

표목차 | LIST OF TABLES

〈표 2-28〉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의 주요 내용	49
〈표 2-29〉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의 주요 내용	50
〈표 2-30〉 광주김치산업 육성종합계획의 목표	52
〈표 2-31〉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추진 총괄	52
〈표 2-32〉 2018년 전국 시도 김치업체 현황(광역시)	54
〈표 2-33〉 2019년 전국 시도의 김치 생산량	55
〈표 2-34〉 시도별 김치 수출입 현황	57
〈표 3-1〉 세계김치연구소의 주요 기능	74
〈표 3-2〉 김치타운의 기능 진단 및 분석의 종합	77
〈표 4-1〉 제시된 부지활용 대안	86
〈표 4-2〉 광주광역시 및 전남의 旣 축적 김치 인프라 현황	90
〈표 4-3〉 전통주산업진흥원(가칭) 입지 선정 기준	91
〈표 4-4〉 김치 관련 연구의 분산적 추진 현황	93
〈표 4-5〉 김치 관련 통계 생산기관 현황	97
〈표 4-6〉 김치산업진흥원 설치·운영의 필요성	99
〈표 4-7〉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의 제시 기능	100
〈표 4-8〉 김치산업진흥법 제시 기능	101
〈표 4-9〉 광주 및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한계와 김치타운 진단을 통한 과제	102
〈표 4-10〉 김치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105
〈표 4-11〉 김치산업진흥원의 사업	107
〈표 4-12〉 고려 및 검토 가능한 설립·운영 대안	109
〈표 4-13〉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10
〈표 4-14〉 과기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11
〈표 4-15〉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12
〈표 4-16〉 정부출연연구기관 형태의 장점과 단점	115
〈표 4-1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형태의 장점과 단점	119
〈표 4-18〉 광주광역시 고려 가능 설립 형태별 기관의 장단점	120

〈표 4-19〉 광주광역시 김치 축적자산의 세부 현황	125
〈표 4-20〉 연구기관과 진흥기관의 비교	126
〈표 4-21〉 세계김치연구소의 기능과 수행 사무	127
〈표 4-22〉 김치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수행 사무	129
〈표 4-23〉 기능의 유사성·중복성 검토	131
〈표 4-24〉 한국김치산업진흥원 설치 대안 비교	133
〈표 4-25〉 진흥기관의 주요 사무	136
〈표 4-26〉 진흥기관의 기능별 인력	136
〈표 4-27〉 환경 및 여건 분석	137
〈표 4-28〉 조직의 설계	137
〈표 4-29〉 기능별 인력 구성	139
〈표 4-30〉 실증 테스트베드 유형의 구분	145
〈표 4-31〉 사례: 싱가포르 전기차 테스트베드	145
〈표 4-32〉 육성방향별 관련 법률 및 지원	150
〈표 5-1〉 타당성 조사 대상 및 시행기관	157

〈그림 1-1〉 김치타운의 매입 부지	5
〈그림 1-2〉 활용방안 개발의 체계	8
〈그림 2-1〉 제2차(2018~2022)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의 내용	22
〈그림 2-2〉 김치산업의 구조	30
〈그림 2-3〉 김치 수출입 추이	37
〈그림 2-4〉 김치 교역액 및 교역량 추이	38
〈그림 2-5〉 김치 수입 업체의 수입 방법	40
〈그림 2-6〉 배추 자급율 변화	41
〈그림 2-7〉 연도별 김치 소비량 변화	42
〈그림 2-8〉 연도별 가구의 김치 소비량	42
〈그림 2-9〉 김치 담그는 가구 비율	43
〈그림 2-10〉 김치 담금 가능 가구	43
〈그림 2-11〉 김치산업 발전의 장애 요소	43
〈그림 2-12〉 김치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수요의 내용	44
〈그림 2-13〉 상품김치 수출 과정상의 어려움	45
〈그림 2-14〉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	47
〈그림 2-15〉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	47
〈그림 2-16〉 광주광역시 구별 김치 업체수(2020년)	55
〈그림 2-17〉 광주광역시 김치 생산량 추이	56
〈그림 3-1〉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66
〈그림 3-2〉 세계김치연구소	67
〈그림 3-3〉 토지이용 결정 프로세스	68
〈그림 3-4〉 토지이용의 가치	69
〈그림 3-5〉 토지이용 문제 해결 및 목표달성 요소	70
〈그림 3-6〉 기능 분석 및 진단 프로세스	71
〈그림 4-1〉 부지활용 방안의 착안사항	85
〈그림 4-2〉 기존 인프라와 김치산업진흥원을 통한 역량강화	91

〈그림 4-3〉 김치 교역액 및 교역량 현황	96
〈그림 4-4〉 광주 김치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제시 기능	101
〈그림 4-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분류체계	109
〈그림 4-6〉 정부출연기관 설립 시 기관 신설 프로세스	114
〈그림 4-7〉 광주광역시의 김치 입지의 자산 현황	125
〈그림 4-8〉 세계김치연구소 세부 목표	128
〈그림 4-9〉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조직도	135
〈그림 4-10〉 1단계 조직설계	138
〈그림 4-11〉 2단계 조직설계	138
〈그림 4-12〉 3단계 조직설계	139
〈그림 4-13〉 순창군 발효 저장고	142
〈그림 4-14〉 전국 8도 김치	146
〈그림 4-15〉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151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체계

□ 세계적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가

- 행복에 있어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비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인류의 수명 연장에 따라 건강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김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김치와 더불어 유럽의 불가리스, 일본의 나또 등 발효식품의 효능에 주목하고 각광을 받고 있음
 - 특히 2020년 5월 프랑스 장 부스케 교수의 연구로 김치가 면역력 향상과 항바이러스에도 효능을 보이면서 코로나19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발효식품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함(<http://www.thinkfood.co.kr>)

□ 광주광역시는 김치산업의 세계적인 도약을 표방

- 광주 김치의 인지도 향상
 -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광주 김치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김치문화와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향
 - 국제적인 김치 메카 조성을 위해 1994년부터 매년 광주세계김치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김치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음

□ 김치 세계화를 위한 토대 조성 및 축적

- 김치의 우수성 강화 연구 기반 형성
 - 김치 축제, 김치 산업화 등에 대한 연구 축적 및 세계김치연구소 유치
- 김치종주국, 김치 종주도시 광주 위상 제고를 위한 토대 구축
- 김치 종주도시의 이미지 형성, 위상 제고를 위해 김치타운,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등을 건립
- 맛의 고장인 광주의 김치에 대한 시민의 애착과 높은 자부심 보유

□ 새로운 부지 활용을 통한 광주 김치타운의 위상 제고 필요

- 광주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던 부지를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 구입할 예정임
- 광주 김치타운은 여러 가지 관련 기능과 시설이 집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김치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적 실현에는 한계 보유
 - 김치타운의 기능과 역할 향상을 통한 광주 김치 이미지 및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는데 기여할 필요성 제기
- 광주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타운의 새로운 기능 충족을 통해서 기존의 기능과 시너지 창출 필요
 - 처음부터타운의 정밀한 설계도와 기능 간의 정합성, 지향점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 출발한 김치타운의 완성도 향상이 필요

□ 부지활용을 통한 향후 김치타운과 광주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

- 부지의 최적 활용을 통한 김치타운의 경쟁력 향상 필요
- 김치타운의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전반적 검토 및 최적 방안의 도출이 필요
 - 현재, 20,000여평의 김치타운은 비교적 협소한 공간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공간적 한계를 보유

제2절 연구의 목적

□ 광주광역시의 과제

- '23년 구입을 완료할 부지를 광주광역시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게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음
- 부지의 규모
 - 旣 조성되어 있는 김치타운의 가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1,292.2㎡(약 6,441평)
 - 보다 정확하게는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1044번지에 위치하고 있음
- 부지의 구입
 - 광주광역시는 3년에 걸쳐서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2차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 있음
 - * 매입기간은 2020~2023년, 매입가격은 25,550백만원(3년 분할상환)

〈그림 1-1〉 김치타운의 매입 부지



□ **본 연구의 목적**

- 광주광역시 김치와 관련된 우수한 인프라와 연계해서 향후 매입을 완료할 부지의 활용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

【 과업지시서 요청사항 】

- 광주김치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매입 부지에 대한 단·장기 활용방안 연구
- 단기는 행사 시 주차문제 등, 장기는 김치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에 활용

□ **본 연구의 기대효과**

-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 제시하는 방안이 향후 김치타운으로 하여금 김치 도시 광주광역시의 김치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 둘째,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김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산 실로 자리매김을 하는 데 기여

제3절 연구의 체계

□ 연구의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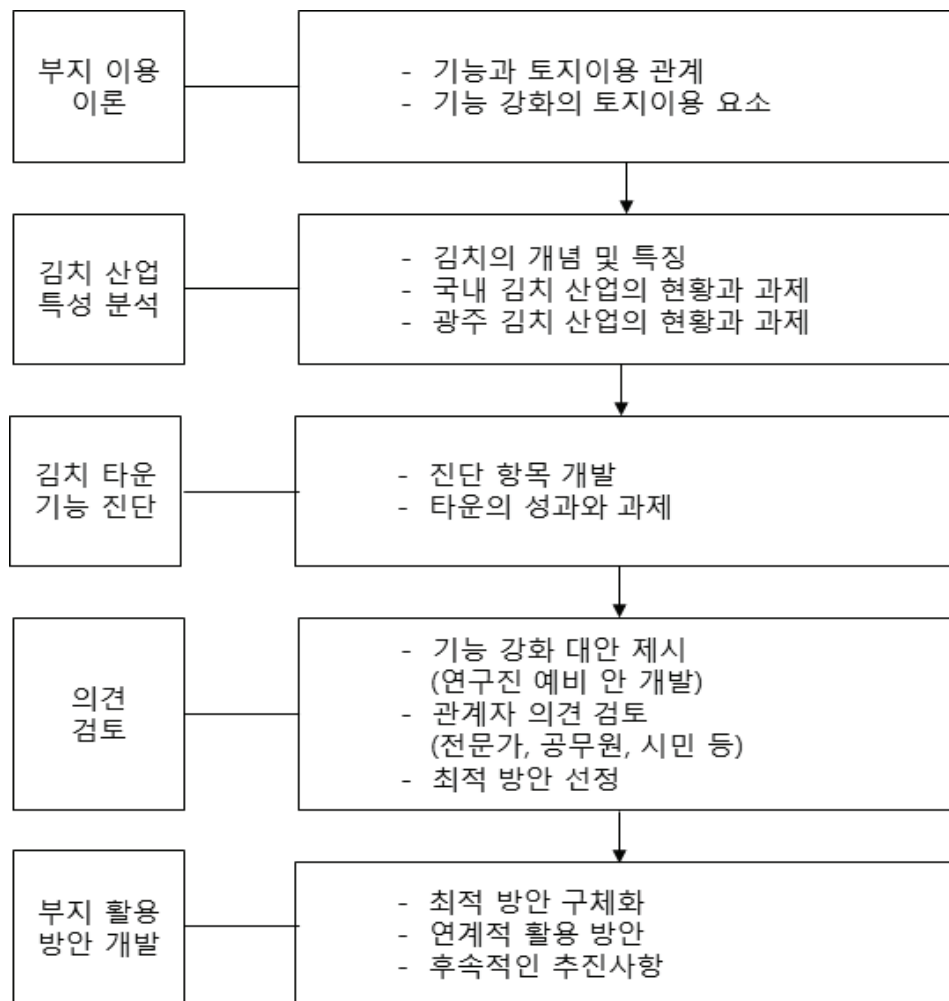
- 부지활용은 김치타운의 기능을 강화에 연계, 종속됨을 고려하여 김치산업 도시 광주광역시의 도약을 위한 최적의 기능을 찾아내서 이를 부지활용, 즉 토지이용(land use)으로 적용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선택
- 김치타운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용도를 검토하고 분석

□ 연구의 체계

- 우리나라 김치산업과 광주 김치산업의 현주소에 비추어 보아 김치타운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 검토
 - 김치타운이 광주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의 도출과 이를 광주광역시가 구입하고 있는 부지 활용과 연계
- 연구의 구성
 - 부지의 이용인 토지이용과 기능의 관계 논의
 - 김치산업의 현황과 실태에 비추어 본 문제점과 과제
 - 광주김치산업의 실태에 비추어 본 김치타운의 필요 기능
 -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김치타운의 여건 및 기능적 문제, 과제
 - 김치산업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김치타운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 채택과 최적의 부지활용 방안
- 부지 활용방안 개발
 - 주로 중장기 전략 개발에 초점을 둔 방안 제시
 - 중장기 방안 제시의 경우 방안의 수준 설정이 중요한데, 필요한 기능의 설치를 위한 기초연구나 큰 방향의 제시 차원에 무게를 둘 것임
 - 이유는 기능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그리고 타당성 분석 등은 본

연구를 토대로 추후 수행해야 할 과업에 해당하기 때문임

〈그림 1-2〉 활용방안 개발의 체계



제2장

김치산업의 현황과 과제

제1절 김치산업의 중요성

제2절 김치산업의 제도 및 시책

제3절 전국 김치산업의 현황과 한계

제4절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현황과 과제

1. 김치의 정의

□ 김치의 기원

- 우리나라의 김치는 기원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김치는 식품의 다섯 가지 기본 맛에다 젓갈로 인한 발효의 향을 더한 독특한 풍미를 보유
- 김치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계절, 풍토와 생활 습관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해서 우리 문화로 정착

□ 김치의 정의

- 김치는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의 혼합 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함”(「김치산업진흥법」제2조)
 - 채소에 주재료에 부재료를 첨가한 뒤 소금 절임 후 발효시킨 유기산 발효 식품이며, 수십 가지 재료가 어울려 만들어진 음식임
- 여기서 “주원료”는 제조하려는 김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 원료가 여러 가지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함(동법 제2조 2)
 - “김치 재료”는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함(동법 제2조 3)

□ 김치의 분류

○ 형태별

- 크게는 김치류, 깍두기류, 동치미류, 절절이류로 구분되고 대표적인 김치류의 경우, 배추김치, 무김치, 오이김치, 기타 채소 김치, 쉬박지, 어패류 김치, 육류 김치, 해조류 김치, 물김치류가 있음

〈표 2-1〉 형태별 김치 종류

구분		김치 종류
김치류	배추김치	배추김치, 통배추김치, 동태배추김치, 수삼배추김치, 해물배추김치, 배추잎쌈김치, 배추잎보쌈김치, 양배추김치, 꼬마양배추김치, 양배추쌈김치, 가두보쌈김치, 속대김치, 배추속대밤김치, 보쌈김치, 쌈김치, 백김치, 보쌈백김치, 열갈이김치, 생김치, 풋절이김치, 봄김치, 겨자김치, 봄동김치, 배추오이쌈김치, 열무보배추김치, 배추속대김치, 호배추김치, 열절이 등
	무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열무마늘김치, 열무오이김치, 속김치, 채김치, 비늘김치, 무비늘김치, 무청김치, 나박김치, 수삼나박김치, 묘삼나박김치, 비지미, 무무음김치, 무백김치, 무명태김치, 무국화김치, 무배김치, 무말랭이김치, 무말랭이파김치, 무쌈김치, 매화김치, 무초김치, 삶은무김치, 순무김치, 무순김치, 서거리김치, 무복어김치, 통무김치, 무김치, 석류김치, 젓무김치, 무배추김치, 무청소박이, 알타리소박이 등
	오이김치	오이김치, 오이지김치, 오이백김치, 오이소김치, 오이쌈김치, 오이소박이쌈김치, 돌나무 오이나박김치, 통오이부추김치, 오이소박이, 별식오이소박이, 통오이소박이, 오이장김치 등
	기타 채소김치	깻잎김치, 들깨잎김치, 깻잎보쌈김치, 미나리창란젓김치, 미나리김치, 시금치김치, 호박김치, 콩나물김치, 고들빼기김치, 박김치, 썩갓김치, 고구마줄기김치, 더덕김치, 돌나물김치, 돗나물김치, 고춧잎김치, 가지김치, 달래김치, 도라지김치, 부추김치, 부추젓김치, 콩잎김치, 썬배귀김치, 갓김치, 돌산갓김치, 봄갓김치, 케일김치, 컬리플라워김치, 파김치, 쪽파김치, 오징어파김치, 장김치, 달래장김치, 고추소박이, 더덕소박이, 하루나김치, 고추김치, 풋고추김치, 영채김치, 인삼김치, 수삼김치, 대추김치, 두부김치, 유채김치, 오색김치, 토란김치, 양파김치, 마늘김치, 우영김치 등
	쉬박지	쉬박지, 동아쉬박지, 오징어쉬박지, 양배추쉬박지, 숙쉬박지, 무쉬박지, 순무쉬박지김치
	어패류 김치	굴김치, 어리굴김치, 오징어김치, 전복김치, 해물김치, 감동젓김치
	육류 김치	닭김치, 꿩김치, 제육김치
	해조류 김치	청각김치, 툇김치, 파래김치

구분		김치 종류
	물김치류	양배추물김치, 배추물김치, 배추속대물김치, 연배추물김치, 무청물김치, 무말이물김치, 총각무물김치, 열무물김치, 열무연배추물김치, 열무인삼물김치, 인삼물김치, 인삼오이물김치, 수삼물김치, 죽순물김치, 가지물김치, 미나리물김치, 고구마순물김치, 돌나물물김치, 더덕물김치, 갓물김치, 오이물김치, 과일물김치, 무물김치, 오이소박이물김치, 청경채물김치 등
	깍두기류	깍두기, 알깍두기, 굴깍두기, 정깍두기, 즉석깍두기, 비늘깍두기, 서거리깍두기, 부추깍두기, 우엉깍두기, 풋고추잎깍두기, 썩갓깍두기, 오이깍두기, 숙깍두기, 대구깍두기, 북어무깍두기, 해물깍두기, 감동젓무깍두기, 창란젓깍두기, 모젓깍두기, 무청깍두기 등
	동치미류	동치미, 총각무동치미, 무동치미, 햇무동치미, 반동치미, 연꽃동치미, 과일동치미 등
	겉절이류	겉절이, 열갈이겉절이, 배추겉절이, 하루나겉절이, 양배추겉절이, 상추겉절이김치, 오이겉절이김치, 부추겉절이김치, 달래겉절이, 더덕겉절이, 가지겉절이, 썩갓겉절이, 돌나물겉절이, 당근겉절이, 파슬리겉절이, 풋고추겉절이, 깻잎겉절이, 봄동겉절이 등

○ 계절별

-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여 배추김치는 계절에 관계가 없지만 계절별로 서로 다른 김치가 존재

〈표 2-2〉 계절별 김치 종류

구분	김치 종류
봄(3~5월)	통배추김치, 고들빼기김치, 미나리김치, 썩갓김치, 무말랭이, 나박김치, 우엉김치, 더덕김치, 게쌈김치, 더덕물김치, 햇 도라지 김치, 통마늘절임, 병잎절임, 생두릅김치, 부추젓김치, 쪽파젓김치, 홍어섞박지, 죽순절임, 돌나물김치, 햇배추김치, 파김치, 시금치김치, 봄갓김치 등
여름(6~8월)	가지소박이, 부추김치, 오이소박이, 깻잎김치, 비늘김치, 콩잎김치, 열무물김치, 열무김치, 수삼나박김치, 토마토소박이, 연근절임, 풋고추절임, 오이짠지, 포도잎절임, 깻잎말이김치, 풋콩잎김치, 부추김치, 오이소박이, 양배추김치, 가지김치 등
가을(9~11월)	가을배추겉절이, 섞박겉절이, 통배추가을김치, 비늘무젓김치, 총각무소박이, 백깍두기, 무청젓버무리, 무채김치, 호박김치, 고구마줄기김치, 고춧잎김치, 통대파김치, 통오징어소박이, 갈치식해, 통가지썰겨절임, 무쌈겨절임, 가을콩잎절임, 무청젓갈절임, 생굴김치, 파김치, 갓김치, 무편지, 장김치, 총각무동치미, 총각김치, 고춧잎김치, 통잎김치, 깻잎김치, 동아김치 등

구분	김치 종류
겨울(12월~익년 2월)	총각김치, 석박동치미, 통배추동치미, 통무동치미, 석박통김치, 동태식혜, 낚지석박지, 동태석박지, 오징어석박지, 대구석박지, 통대구김치, 통무소박이, 동치미, 보쌈김치, 무청김치, 석박지, 통배추김치, 깍두기, 백김치 등
사철	통배추백김치, 배추막김치, 풋배추겉절이, 당근깍두기, 알양파깍두기, 양배추동치미, 양배추보쌈김치, 당근쌈겨절임, 당근소박이, 해물김치, 시금치겉절이, 깍두기, 양배추물김치, 양배추겉절이, 명게절, 생굴절, 오징어절, 해삼젓김치 등

□ 전국 김치의 종류

- 우리나라 전국 지역별로 다양한 김치 자원 보유
 - 김치의 지역적 특징은 소금 사용량에 따라 달라짐
 - 이북 지방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소금간을 심계게 하고, 양념을 적게 넣어 맛이 담백하고 넉넉하고 맑은 국물이 있는 것이 특징
 - 영호남 지역은 소금과 젓국을 많이 사용하여 짠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며, 양념으로는 마늘·고춧가루·생강 등을 많이 쓰고, 찹쌀풀을 섞어 담기 때문에 발효할 때 나는 군내가 사라져 맛이 좋음
 - 김치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두 번째 요소는 젓갈임
 - 북쪽 지방에서는 조기젓·새우젓을 많이 쓰고, 중부 지방에서는 새우젓·조기젓·황석어젓을, 영호남 지방은 멸치젓이나 갈치속젓을 주로 사용함

〈표 2-3〉 전국의 지역별 김치

구분	내용
서울·경기	- 석박지, 보쌈김치, 장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강원도	- 무청김치, 더덕김치, 오징어석박지, 해물김치
충청도	- 열무김치, 시금치김치, 호박김치, 통무소박이
경상도	- 부추김치, 콩잎김치, 우엉김치, 무말랭이김치
전라도	- 고들빼기김치, 돌산갓김치, 토하젓김치, 나주동치미, 해남갓김치
제주도	- 해물김치, 전복김치, 게쌈김치, 굴물김치

구분	내용
황해도	- 조개젓배추김치, 호박지, 고수김치, 감김치
평안도	- 동치미, 무청김치, 꿩김치, 총각무김치, 알양파깍두기
함경도	- 가지미식해, 대구깍두기, 동태식해, 쪽파젓김치

출처: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kimchitown/>)

2. 김치산업의 중요성

□ 발효식품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주류(酒類)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발효식품은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영향¹⁾을 끼침
- 발효식품을 통해 미생물을 섭취하면 우리의 몸에서 유익한 미생물이 증식하여 건강한 장내 미생물인 Microbiota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줌
- 아울러 발효식품은 식품에 존재하는 거대한 단백질, 다당류를 미생물이 소화 시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빠름²⁾
- 김치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의 양을 감소시키고 피가 굳어서 생기는 혈전을 분해하는 역할도 수행함³⁾

□ 김치의 중국산 입지 불안정

- 김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식품으로 19년 국내 김치시장 규모는 총 72만t 규모, 1조 2,380억 원에 이룸
- 이중 중국산 저가 수입 김치가 29만t으로 40%를 차지하고, 지난 10년간 김

- 1)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만성 장염 완화, 다장암 예방, 소화 촉진, 장 감염 예방 외에도 뼈 건강, 간 건강, 신장 등 다양한 이익 줌(한국가정학회, 2020)
- 2) 우리가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이 높은 것이 입증되었는데 그 이유가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 때문임을 지적(이시형, 홈페이지)
- 3) 생김치보다는 잘 익은 김치가 체지방, 콜레스테롤 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Kim et al. 2011)

치 무역수지는 2억 6,000만\$의 적자를 기록

- 올해에 들어서야 11년 만에 겨우 흑자로 전환될 정도로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다소 추락

□ 영양과 효능에 대한 인식 강화

- 김치는 우리 고유의 식품으로 각종 채소에 부재료를 첨가한 뒤, 소금 절임을 통해 발표시킨 유기산 발효식품
 - 주재료에 따라 수십 가지로 다양하며, 각종 영양소와 생균을 보유
- 미국 잡지 <헬스(Health)>가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하자 외국인들이 김치의 맛과 영양학적 가치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음⁴⁾

- 채소를 오래 보존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것은 소금이나 식초에 절여 숙성하는 방법. 김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금은 지방과 계질, 개인의 기호, 가정의 식습관 등에 따라 쓰는 양이 다르지만, 소금은 김치 맛을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채소를 양념과 함께 버무려 김치를 담가 숙성시키면 원료의 맛과는 다른 특유의 맛과 향 보유
- 김치에 사용되는 재료는 크게 주재료·향신료·조미료·기타 부재료의 4가지인데, 주재료인 배추와 무 외에도 30여 가지의 식물성 재료이며, 부재료는 갓·미나리·당근·파 등의 채소류와, 육류·어패류·젓갈 등의 재료가 사용됨

- 다양한 영향과 효능 보유
 - 각종 영양소와 생균, 항암, 소화기능 활성화 등의 기능 보유

<표 2-4> 김치의 영양과 효능

영양	효능
- 다양한 종류의 부재료를 첨가하여 탄수화물 단백질,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소 풍부 * 미국의 건강 분야 잡지 <Health>(2006년 3월호)가 뽑은 세계 5대 건강식품에 김치가 선정될 만큼 중요한 건강 기능성 식품	- 생균, 바이러스 감염 억제, 암 예방 및 항암 작용, 항산화(항노화) 효과 및 피부 노화 억제, 항 동맥 경화, 빈혈 예방, 소화 기능 활성화, 변비 및 대장암 예방,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다이어트 효과

4) 김치박물관(https://www.kimchikan.com/?page_id=16)

제2절 김치산업의 제도 및 시책

1. 법률

□ 유관 법률

- 김치와 관련된 법률은 김치산업의 진흥, 위생 및 안전, 인증 및 표시, 유통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김치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는 「김치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이 있음
- 그 밖에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등이 존재

□ 「김치산업 진흥법」

- 동 법은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의 근거법임
- 동 법의 목적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 문화의 계승, 발전 등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 촉진임
 -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 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음(법 제1조)
- 내용상으로 주로 김치산업의 기반조성,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등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법 제4조)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의 내용〉	
1.	김치 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품질 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김치 및 김치 재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5.	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김치의 소비 촉진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8.	김치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9.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외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한국 김치 등의 표시, 김치 자조금의 적립지원, 경영개선 지원,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규정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비, 김치유통센터, 전통김치 복원 및 계승자 등에 대한 지원도 규정

* 지원 주체: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3차례 개정을 통해 김치의 날 지정(제20조 2), 수입 김치에 대한 통계조사(제9조), 종합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제5조), 국가명지리적 표시제 도입(제24조 2) 등이 새롭게 규정
- 동 법은 김치문화 향상, 종합계획 수립의 체계화, 수입김치에 대한 통계조사의 강화, 김치에 대한 국가명지리적 표시제 도입이 특징임

〈표 2-5〉 「김치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 김치 세계화 촉진,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제2조(정의) 김치, 주원료, 김치재료, 김치사업자, 농어업인 정의
제2장 김치산업진흥 기반조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제5조(사전심의) 종합계획수립 등을 식품산업진흥심의위원회 심의

구분	내용
	제6조(경영개선지원)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시책 추진
	제7조(농어업인과 연계강화)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인과 연계강화사업 추진
	제8조(제조기술 등 연구개발) 전문연구기관 등에 김치의 품질향상, 포장, 저장,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에 관한 연구개발 의뢰가능
	제9조(통계조사)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 유통 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가능
제3장 김치산업 활성화 촉진	제11조(교육훈련)제조기술등의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시행
	제12조(전문인력 양성)대학연구소 등을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제13조(세계김치연구소)김치연구, 전시,체험 등을 위해 설립
	제14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김치유통센터, 전문판매점 지원
	제16조(전통김치 복원,계승,발전)김치제조기술 복원 계승 개인지원
	제17조(세계화 촉진 등) 김치 국제규격화 추진 해외시장개척 지원
	제18조(사업자단체 설립) 김치사업자는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 설립 가능
	제20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 김치의 날 지정) 매년 11월 22일
제4장 보칙	제25조~제28조(조세의 감면, 권한의 위임위탁 등) 김치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가능, 위탁 가능 기관 명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https://www.law.go.kr/>)

□ 「식품산업진흥법」

- 동 법은 식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법임
- 동 법의 목적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

- 바지함에 있음(법 제1조)
- “식품”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지칭
- 내용 측면에서 동 법은 전통식품을 포함한 식품산업의 육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여기서 전통 식품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을 말하며 김치도 여기에 속함
- 식품산업 진흥과 관련된 식품산업에 대한 통계조사,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 및 육성,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2-6〉 「식품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식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제2조(정의) 식품, 식품산업, 전통식품, 국가식품클러스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5년단위 계획수립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2장 식품산업 진흥 기반조성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8~9조(기술개발촉진, 통계조사) 식품산업진흥기술동향, 수요조사 실용기술 개발, 식품산업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통계조사 등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해외 교류 시장개척 외국인 투자유치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육성) 국가 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제12조 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설립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관리, 참여기업과 기관의 활동 지원

구분	내용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 증진,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식품 제조·가공·조리
	제15조(식품산업컨설팅지원)식품사업자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지원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문화 세계화) 지역별 전통식품 식생활문화 조사 및 세계화
	제19조(농산물가공산업육성시책마련)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0~22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전통 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전통 식품의 품질인증 등)
	제24~26조(우수 식품등 인증기관의 지정 등, 우수 식품등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우수 식품등 인증 및 우수 식품등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5장 보칙	제31조(조세의 감면) 특례법에 의한 조세감면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https://www.law.go.kr/>)

2. 주요 시책

□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 수립

-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
 - 2013년 ‘제1차 종합계획(2013~2017)’에 이어 2018년 ‘제2차 종합계획’(2018~2022년)을 수립
- 시기별 계획의 방향과 초점
 - 제1차 종합계획: 김치산업 발전의 토대 구축과 향후 기본방향 제시
 - 제2차 종합계획: 김치산업의 정책 대상 확대, 국산 김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향상을 통해 김치 수입에 적극적 대응
- 특히, 국산 김치시장 점유율 70%를 목표로 한 제2차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은 ① 김치 소재 산업 육성, ② 김치 품질 경쟁력 제고, ③ 수입 대응 및 수출 확대, ④ 소비자 인식개선 및 홍보, ⑤ 거버넌스 구축, ⑥ 원료의 안정적 공급

의 6가지 중점과제를 제시(농림축산식품부, 2018)

- 국산 김치의 시장점유율 향상과 김치 무역수지 개선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
 - 국산 김치시장 점유율: 5년 동안 '17년 65%에서 '22년 70% 향상
 - 김치 무역수지: '17년 4천 7백만 달러에서 '22년 Zero로 개선
- 김치와 관련된 상품의 개발과 품질 경쟁력 제고도 중시하고 있음
 - 김치와 관련된 응용상품의 시장규모를 '17년 1천9백원에서 '22년 3천 5백억으로 향상
 - 젊은 층 중심으로 김치 소비 감소에 대응해서 기능성 및 특수 김치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그림 2-1〉 제2차(2018~2022)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의 내용

목표	◆ 김치응용상품 시장 규모: (2017) 1,900억 원 → (2022) 3,500 ◆ 국산김치 시장점유율 확대: (2017) 65% → (2022) 70 ◆ 김치 무역수지 개선: (2017) △47백만 달러 → (2022) ±0	
중점 과제	① 김치 소재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임배추 산업화 및 안전관리 강화 • 김치소스 및 김치 HMR 산업 육성
	② 품질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 등 품질특성 표준화 및 등급화표시 • 기능성, 특수(Novel)김치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
	③ 수입 대응 및 수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유통 단계별 수입김치 안전성 점검 강화 • 원가절감기술 보급 및 수출국 현지화 전략 추진
	④ 소비자 인식 개선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년층 및 청소년 대상 김치 인식 제고 교육·홍보 • 김치 문화컨텐츠를 활용한 김치 우수성 홍보 강화
	⑤ 가버니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연 협의체 구성, 소통 및 유관기관 역량 강화
	⑥ 원료의 안정적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추 계약재배 확대로 원료수급 안정성 제고 • 원료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공급의 안정성 제고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8.4.16

□ 김치산업육성방안 수립

- 농식품부는 2019년 국산김치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입 김치에 대응하고 국산 김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김치산업육성방안’을 수립하고 2019년에서 2023년까지 6,698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음
- 육성 분야는 김치 품질 위생 차별화, 시장 차별화 등 6개로 선정

〈표 2-7〉 김치산업육성방안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품질위생 차별화	우수 종균 활용 품질 차별화, 우수 종균 활용 품질 유지기간 연장, 김치 맛 품질표시제 도입, 김치 파생상품 및 기능성 김치 개발, 학교 급식용 김치표준안 마련, 생물학적 위해 요소 관리 강화, 김치 원료 표준화
시장 차별화	군남, 학교, 단체 급식에 대한 국산 김치 확대, 내수 및 해외 프리미엄 시장개척
김치 유통관리 강화	김치 원산지 표시 개정, 수입 김치 판매조사 및 원산지 단속, 수입 김치 안전성 조사 및 성분 분석
안정적 원료 공급	김치업체에 대한 안정적 원료 공급, 김치업체 시설지원 확대, 김치원료 구매지원 확대
국산김치 소비확대	국산 김치 수출 확대, 국산 김치 우수성 홍보
생산기반구축	대중소 기업간 협업, 대중소 기업 연계사업 지원, 김치 일관 생산시스템 구축

출처: 농식품부 발표자료

- 6개 부분에 대해 5년 동안 총 5,69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가운데 시장 차별화에 대한 투자가 거의 매년 94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연도별로는 매년 990억원에 해당하며, 연도별 역시 시장 차별화 부문의 투자가 가장 크며, 그다음은 김치 원료의 안정적 공급, 품질 차별화의 순임

〈표 2-8〉 김치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자원 투자계획

주요과제 및 사업명	연차별 소요 예산(억 원)						비고
	합계	'19	'20	'21	'22	'23	
합계	5,698	1,135	1,135	1,137	1,139	1,139	
보조	748	163	145	147	149	149	
융자	4,950	990	990	990	990	990	
■ 품질차별화	229	37	48	48	48	48	
중균보급사업(자조금)	1	1	-	-	-	-	신규
우수 종균개발(김치연)	51	11	11	10	10	10	R&D
스마트 공정시스템 개발(김치연)	40	-	10	10	10	10	R&D
김치 기능성 규명(김치연)	123	23	25	25	25	25	R&D
중균도입 현장기술 지도(김치연)	13	2	2	3	3	3	R&D
■ 위생안전성 차별화	52	12	10	10	10	10	
학교급식관리체계구축	1	1	-	-	-	-	신규
HACCP컨설팅 지원	50	10	10	10	10	10	
절임배추HACCP매뉴얼 마련	1	1	-	-	-	-	신규
■ 시장 차별화	4,690	936	936	938	940	940	
가공원료 매입자금	4,450	890	890	890	890	890	
수출물류비 지원	90	18	18	18	18	18	
기능성평가 지원	140	26	26	28	30	30	
수출상품 현지화 지원	10	2	2	2	2	2	
■ 김치 유통관리 강화	55	7	12	12	12	12	
소비자합동 유통실태조사	8	-	2	2	2	2	신규
위해요소 분석	47	7	10	10	10	10	R&D
■ 김치원료 안정적 공급	549	138.5	102.5	102.5	102.5	102.5	
계약재배(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500	100	100	100	100	100	
저온유통시설 지원	36	36	-	-	-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	12.5	2.5	2.5	2.5	2.5	2.5	
■ 기업 간 협업 및 생산기반 구축	123	22	23	26	26	26	
식품소재반가공 지원	105	21	21	21	21	21	
중소기업 DB구축	0.5	0.5	-	-	-	-	신규
자동생산시스템 구축(김치연)	17	-	2	5	5	5	R&D

- 6개 부분에 대해 5년 동안 총 5,69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가운데 시장 차별화에 대한 투자가 매년 940억원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주목할 부문은 국산 김치의 상품성 확대를 위한 김치 R&D 지원의 확대라고 할 수 있음
 - ‘김치 R&D 로드맵’을 수립해서 김치 맛·품질 기간 연장, 김치 기능향상 복합종균 개발 등 김치 상품성 제고에 예산과 인력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김치의 유통기한 연장(30일→60일), 김치 발효대사 규명, 복합종균 개발(3종), 백색산화막(골마지) 방지 및 지능형 포장(숙성도 인식) 개발, 김치 종균개발 지원 확대⁵⁾ 등 포함

〈표 2-9〉 김치 R&D 로드맵의 주요 내용

구분	기술 분야	현재	초기(~'20)	중장기('21~'24)
발효기작 규명 및 종균기능 강화	발효기작 규명	김치유산균 2종 대사경로 규명	주요 부재료관련 발효대사 규명	환경변화 발효기작 규명 및 발효조절기술 개발
	김치종균 개발	김치유산균 약 35천균 확보 및 맛 개선 종균 개발	품질 유지기한 연장(60일) 종균 개발	품질 및 건강기능성 복합종균 개발
	종균 활성유지 기술 개발	동결건조 4주 냉동보관(-18℃) 생존율 80% 이상	동결건조 8주 냉동보관, 생존율 80% 이상	동결건조 16주 냉동보관, 생존율 80% 이상
공정개선	위생·안전 향상기술	pH 4.5 이하에서 위해미생물 제어	미생물 저감기술 등 생물학적 허들 기술 적용	pH 4.5 이상 김치에서 위해미생물 불검출
	중소업체 경쟁력 향상 기술이전	업체 수요 반영, 현장기술 지도	연구성과 후속지원 연계, 기능성김치 개발지원	맞춤형 지원체제 확립
기능성 소재	지능형 포장 기술	CO2 흡착 기능성 포장소재 개발	숙성정도 인식, 지능형 김치 포장재 개발	지능형 김치 포장기술 적용한 포장 용기 개발
	김치 기능성 규명 및 바이오 소재화	항비만 유산균 규명 기능성 유전자 발굴	동물실험을 통한 기능성 규명, 유산균 유전자 분석	개별인정(임상실험) 획득 기능성 유산균 유효소재 발굴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5) 2019년 8명, 12억원에서 '22년에는 20명, 22억원으로 확대

□ 그 외 주요 시책

- 김치산업과 관련된 시책은 굉장히 방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산업을 명시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시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1년 농식품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치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은 전통식품 산업화 영역에서 제시되고 있음

[전통식품 산업화]
우수 전통식품 소비시장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고품질 중심의 소비시장개척 지원 홍보 • 품질인증제 및 식품명인제 활성화를 통한 프리미엄 이미지 제고
전통 발효식품 산업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원료 기반 소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원센터 운영('19~) • 유용 발효종균 보급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종균 생산시설 건립운영('21~)
김치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김치 종균 보급 등 국산김치 경쟁력 강화 • 국산김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김치자조금' 운영 및 홍보 강화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김치산업과 관련된 직접 지원 주요 시책으로는 김치산업육성사업 등이 존재함
 - '21년 농식품 사업 안내서'(농식품부 발간)에 따른 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시책은 김치산업육성사업, 김치자조금 사업, 김치산업 통계조사, 종균 보급체계 구축사업, 종균 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김치산업 육성사업은 국산김치 우수성 홍보로 국고 보조율 100% 사업이며 2018년부터 21년까지 거의 매년 2~3억원을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
- 김치산업 통계조사 사업은 절임 배추, 세부 종류별 생산실적 조사, 판매량, 원료 구매액 등 김치산업 통계조사를 추진하며 20년, 21년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 김치 자조금 사업은 김치 원료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1년 10억원 지원하고 있음
- 김치 관련 품질인증사업에는 전통식품품질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⁶⁾ 등이 추진되고 있음
- 기타 종균보급체계 구축사업은 김치업체를 대상으로 종균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세계김치연구소가 사업을 시행하며 '21년은 12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표 2-10〉 김치산업 육성 관련 직접적인 지원 사업

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요건	재원지원
김치산업 육성사업	- 국산김치 품질경쟁력 강화 - 김치우수성 홍보	- 우수브랜드 선발·홍보 지원 - 문화축제개최 - 언론홍보 추진 *김치품평회개최	- 국고보조 100%	- 18년 2억, 19~21년 매년 3억원 *민간경상보조
김치산업 통계조사	- 김치산업 현황진단 및 육성위한 통계조사	- 절임배추, 세부종류별 생산규모, 판매량, 생산액, 원료구매액 등 조사	- 국고보조 100%	- 20년~21년 매년 3억5천만원 *민간경상보조
김치 자조금 사업	- 김치산업 자생력 확보	- 김치원료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품질향상을 위한 재원지원	- 국고보조 50%	- 18년~20년 매년 5억, 21년 10억원 *민간경상보조
품질인증	- 고품질 전통식품 생산	- 전통식품품질인증 - 대한민국식품명인 -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 자격인증	- 인증내용별 인증기간 차이 *민간경상보조
종균보급체계 구축사업	- 수입김치 대응 국산김치 품질향상	- 김치업체 대상 김치종균 무상보급체계 구축 *세계김치연구소	- 국고보조 100%	- 21년 12억원 *민간경상보조

출처: 농식품부, 2021년 농식품사업 안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6) 이 사업의 경우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도입되어 식품제조, 가공, 조리 등의 분야에서 명인을 지정해서 육성하는 제도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 김치산업과 관련된 간접적 지원 주요 시책

- 그 외는 농식품통합정보체계구축,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발효식품 기능성 규명(안전 모니터링), 식품기능성 평가지원, 식품판로지원,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 등이 있음

〈표 2-11〉 김치산업 육성 관련 간접적인 지원사업

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요건	재원지원
농식품통합 정보체계 구축	-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농식품 데이터 표준화 - 수요 맞춤형 분석기반 구축 등 *민간활용 프리시스템	- 국고 100%	- 20년 46.7억, 21년 63.2억원 *민간경상보조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	- 신제품 발효식품 개발, 품질향상	- 장류, 식초류 등 업체에 종균보급	- 국고 50%, 지방비 50%	- 18년 4억, 19년 6억, 20~21년 각각 10억원 *지자체경상보조
발효식품 기능성 규명	- 전통 장류산업의 안정성 모니터링	- 고추장 등의 기능성 규명 - 안전성 모니터링	- 국고 50%, 지방비 50%	- 20년 6억, 21년 24억원 *민간경상보조
식품 표준화	- 농식품 표준화, 규격화	- 민간국제표준 보급 - 한국산업표준 인증	- 국고 100%	- 18년 11.8억, 19~20년 각 11억, 21년 17억원 *민간경상보조
식품판로 지원	- 대한민국 식품대전을 통한 판로 확대	- 농공상 기업,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 식품트렌드 정보제공	- 국고 90~100%, 자부담 0~10%	- 19년 1.9억, 20년 22.4억, 21년 20.5억원 *민간경상보조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 사업화자금, 창업상담컨설팅, 기업제품 판로제공 및 홍보	- 국고 70~100%	- 18년 58.8억, 19년 94.8억, 20년 147.9억, 21년 166.9억원 *민간경상보조등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자체)	- 농업-식품기업의 연계 지원	-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 - 가공용 농산물 이용지원 *지자체에서 사업대상장 공·선정	- 국고25~40%, 지방비 25~40%, 자부담 20~50%	- 18년 25~40억원, 19~20년 30~48억원, 21년 52~84억원 *지자체 보조

출처: 농식품부, 2021년 농식품사업 안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제3절 전국 김치산업의 현황과 한계

1. 김치산업 총괄

□ 김치산업 규모

- '19년 김치의 총공급량은 1,907톤이며, 총수요량은 1,867톤임⁷⁾(농식품부, 2021.6월 발표 자료)
- 총공급량 1,907톤 가운데, 외식·학교급식 및 가구 자가 제조김치는 58.5%인 1,115천톤이며, 상품김치가 41.5%인 792톤(이 가운데 수입 김치는 306톤)을 차지
- 총수요량 1,867톤은 외식·학교급식 수요가 42.2%인 800천톤이며, 가구 수요가 56.2%인 1,067톤, 수출이 1.6%인 30천톤으로 구성
 - 국내 유통 상품 김치는 752톤으로 국산이 59.3%인 446천톤, 수입산이 40.7%인 306천톤으로 이루어짐

〈표 2-12〉 국내 김치산업의 규모

(단위: 천톤, %)

공급 수요	국산				수입산 상품 김치 (d)	총공급 계 (a+b+c+d)	국내유통 상품김치 (c+d)
	가정 제조 (a)	외·급식 업체 등 제조(b)	상품 김치 (c)	소계 (a+b+c)			
계	747	368	486	1,601	306	1,907	752
가정	747	-	283	1,030	37	1,067	320
외·급식 등	-	368	163	531	269	800	432
수출	-	-	30	30	-	30	-
감모*	-	-	10	10	-	10	-

출처: 2019 김치산업 실태조사(시범), 농림축산식품부·aT(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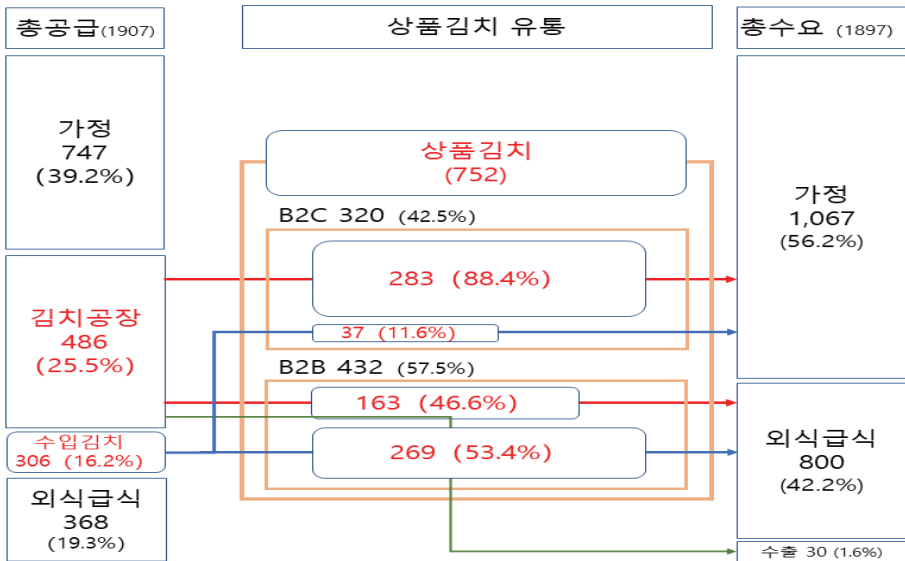
* 국산 상품김치의 재고 및 일부 유통과정 상 감모 등으로 총 공급-총 수요 불일치 10천톤 발생 추정

7) 총공급량과 총수요량의 차이는 공급과 수요 사이의 감모분에 해당됨

□ 김치산업의 구조

- 총공급의 주체는 가정이 39.2%로서 가장 크며, 그다음은 김치공장, 외식급 식업체, 수입의 순을 보이고 있음
- 총수요의 주체는 가정이 56.2%로 가장 크며, 그다음은 외식 급식, 수출 등 으로 구성(농식품부, 2021. 6)

〈그림 2-2〉 김치산업의 구조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21. 6. 25 발표자료

□ 매출액 및 종사자

- 2019년의 경우, 김치업계의 총매출액은 1조 6,185억원이며, 9,510명이 김치 업계에 종사하고 있음⁸⁾

8) 종사자수는 농식품부가 조사한 430개 업체에 더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168개 업체의 종사자수를 농식품부가 추정한 값임

- 2019년 전국에서 실제로 김치를 생산, 판매한 업체의 수는 616개가 존재하고 있음
 - 식약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에서는 2019년 김치제조 업체로 신고된 업체수는 943개였으나, 2019년 농식품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김치를 생산, 판매한 업체는 616개로 확인되었음
- 전체 가구의 41.7%가 김치를 직접 담가 먹으며, 그 가운데 배추김치가 전체의 72.0%를 차지하고 있음

2. 김치의 제조 및 생산

□ 제조업체 수

- 식약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김치류 제조업체 수는 943개임
- '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으나, 근래에는 2016년 979개소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함

〈표 2-13〉 김치 제조업체수의 연도별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8-'19년
개수	956	979	958	922	943	2.3%

출처: 농식품부, 2021. 6월 발표자료

- 식약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종사자수는 13,534명이며⁹⁾, 연도별 김치 제조 분야 종사자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음
- 연도별 매출액의 총액은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음

9) 농식품부 표본조사를 통해 추정된 인원과 식약처 통계가 차이가 있는데 '19년의 경우 이는 양기관 김치업체 모수(농식품부 616개 업체, 식약처 943개)의 차이에 기인함. 여기서는 농식품부의 발표대로(21.6월) 양자 모두를 인용할 것임

〈표 2-14〉 김치 제조업체수의 종업원수 및 매출액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8-'19년
종업원수 (명)	14,296	14,720	14,155	13,801	13,534	-1.9%
매출액* (백만원)	1,106,879	1,188,914	1,326,376	1,339,469	1,403,838	4.8%

*매출액: 국내판매액+수출액

출처: 농식품부, 2021. 6월 발표 자료

□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 김치 제조업의 경우, 품질관리 하는 업체는 30.9%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경우는 16.0%에 불과했음
- 품질관리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69.1%를 차지하며,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소규모 업체의 경우는 88.9%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5〉 품질관리 운영 여부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품질관리 운영			품질관리 미운영	
		전담부서 운영	인력만 배치	계		
계	430	16.0	14.9	30.9	69.1	
업체 규모	10억 이하	244	2.5	8.6	11.1	88.9
	10억 초과	89	19.1	28.1	47.2	52.8
	30억 이하					
	30억 초과	67	40.3	16.4	56.7	43.3
	100억 이하					
100억 초과	30	63.3	23.3	86.6	13.3	

출처: 농식품부, 2021. 6월 발표자료

- 연구·개발(R&D)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율은 13.5%였으며, 그중에서 전담부서를 갖춘 업체는 7.7% 정도만을 차지함

- 연구개발을 운영하지 않는 업체의 비율이 대부분인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억원 이하의 경우는 무려 98.0%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6〉 연구·개발(R&D) 운영 여부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연구·개발(R&D) 운영			R&D 미운영	
		전담부서 운영	인력만 운영	계		
계	430	7.7	5.8	13.5	86.5	
업체 규모	10억 이하	244	1.2	0.8	2.01	98.0
	10억 초과	89	11.2	10.1	21.3	78.7
	30억 이하					
	30억 초과	67	11.9	14.9	26.8	73.1
	100억 이하					
	100억 초과	30	40.0	13.3	53.3	46.7

출처: 농식품부, 2021. 6월 발표자료

- 연구개발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로는 43.3%가 연구개발 비용의 부족을, 9.4%는 연구개발 인력 및 장비의 부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 제조 분야별 투입 비용

- 김치 제조에 투입되는 비용 가운데 원료 구입비가 절반 이상인 54.9%를 차지하며 그다음은 인건비가 22.7%를 차지하고 있음
-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구개발비, 판매 홍보비, 품질 관리비이며, 임대료 및 세금 등 기타가 16.8%를 차지함
- 판매 홍보비와 품질 관리비, 연구개발비의 경우 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영세업체가 이들 부문에 애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10억원 이하의 경우, 임대료 및 세금 등의 비율이 21.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부문에 대한 부담이 많음

〈표 2-17〉 김치산업 제조 분야별 투입 비용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원료 구매비	인건비	판매홍 보비	품질관 리비	연구개 발비	기타 (임대료, 세금 등)	
계	430	54.9	22.7	2.8	2.4	0.5	16.8	
업 체 규 모	10억 이하	244	54.7	19.8	2.6	1.2	0.1	21.6
	10억 초과	89	55.1	27.3	2.9	2.8	0.8	11.1
	30억 이하							
	30억 초과	67	54.4	26.0	2.9	5.1	0.8	10.7
	100억 이하							
	100억 초과	30	57.7	24.0	4.6	4.1	2.5	7.1

출처: 농식품부, 2021. 6월 발표 자료

□ 저온 저장창고 현황

- 김치 제조 업체 중 김치 저온 저장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46.3%이며 56.4%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업체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많아질수록 자가 보유율이 높아져 매출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경우 81.0%가 보유하고 있음

〈표 2-18〉 업체별 저온 저장창고 보유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자가 보유 여부		임차 여부		
		보유	미보유	임차	미임차	
계	390	43.6	56.4	9.7	90.3	
업 체 규 모	10억 이하	121	24.0	76.0	7.7	92.3
	10억 초과-30억 이하	85	64.7	35.3	17.6	82.4
	30억 초과-100억 이하	63	71.4	28.6	9.5	90.5
	100억 초과	21	81.0	19.0	0.0	100.0

출처: 농식품부, 2021. 6월 발표자료

□ 인력 현황

- 김치 제조업체 종사자는 업체 당 평균 14.5명이며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증가
- 내국인 근로자는 12.6명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업체당 1.9명이며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 근로자수가 증가함

〈표 2-19〉 김치산업 종사자 인력 현황

구분		사례수	계	내/외국인 구분	
				내국인	외국인
계		430	14.5	12.6	1.9
업체 규모	10억 이하	244	4.3	4.0	0.3
	10억 초과-30억 이하	89	14.9	13.3	1.6
	30억 초과-100억 이하	67	31.2	27.5	3.7
	100억 초과	30	61.2	47.6	13.6

출처: 농식품부, 2021. 6월 발표자료

- 연령대 별로는 50대 이상이 62.1% 정도인 9.0명을 차지하고 있어 김치산업의 인력이 고령화되어 있음
- 반면 40대 이하의 경우 4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이하의 경우 0.6명에 그치고 있음

〈표 2-20〉 김치산업 연령별 종사자 현황

구분		사례수	계	연령별 종사자 수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430	14.5	0.6	20.	2.9	5.4	3.6
업체 규모	10억 이하	244	4.3	0.1	0.3	0.6	1.6	1.7
	10억 초과-30억 이하	89	14.9	0.5	2.0	3.3	5.2	3.9
	30억 초과-100억 이하	67	31.2	1.3	4.3	5.2	11.6	8.8
	100억 초과	30	61.2	2.7	10.9	15.4	23.4	7.5

출처: 농식품부, 2021. 6월 발표자료

□ 김치업체의 시장 집중도

- 김치 제조업체가 900여개 이상으로 많지만, 특정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 상위 5개 업체의 집중도는 2010년 24.2% 이후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18년 27.2%를 차지
 -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 2011-14년간은 30% 미만이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 33-36%로 증가

〈표 2-21〉 김치판매 상위 업체의 판매 집중도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 판매액	803,434	898,491	942,239	1,014,427	929,578	1,029,590	1,104,398	1,235,865	1,237,955
상위 5업체	194,622	196,431	191,172	217,252	177,807	254,413	276,441	327,736	336,700
CR ₅ (%)	24.2	21.9	20.3	21.4	19.1	24.7	25.0	26.5	27.2
상위 10업체	264,127	268,816	268,380	299,996	249,540	342,185	370,134	440,377	435,660
CR ₁₀ (%)	32.9	29.9	28.5	29.6	26.8	33.2	33.5	35.6	35.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각 연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저널(2020:249), 『2020 식품유통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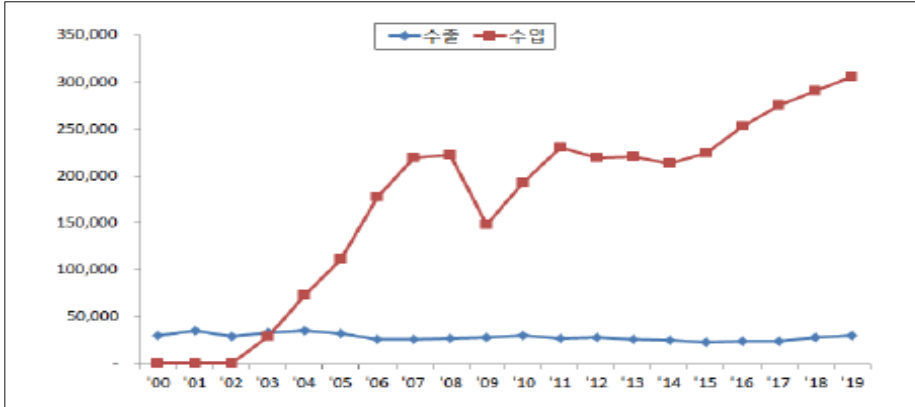
- 주 1) 2010~2012년은 국내 출하액, 2013~2017년은 국내 판매액 자료를 이용하였음.
- 2) 2018년부터는 김치류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절임류 또는 조림류에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어 2018년 수치는 식품저널의 『2020 식품유통연감』을 참고하였음.
- 3) 2018년 상위 업체 판매액 및 집중도는 백만 원에서 반올림한 수치를 이용하였음.

□ 김치 수출입 현황

- 수출은 2005년까지 매년 3만톤 이상 수출을 하다 그후 2만3천톤 수준까지 감소, 최근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9년 2만 9,628톤을 수출
- 수입은 2002년 1천톤 가량이었으나, 2003년 2만 8,707톤으로 증가한 후, 2011년 20만톤을 넘어섰고 2019년 30만 6,049톤으로 증가

〈그림 2-3〉 김치 수출입 추이

(단위: 톤)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웹페이지(<http://www.kati.net>, 검색일: 2020. 10. 14.).

3. 김치산업의 유통 및 판매

□ 국내외 매출

- 전체 매출 대비 국내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97.8%가 내수로 소비되고 있음
- 국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이며 영세업체 보다는 규모가 큰 업체일 수록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수출 경험 보유 업체는 9.9%)

〈표 2-22〉 김치산업의 국내외 매출 현황

구분		사례수	국내	국외(수출)
계		430	97.8	2.2
업체 규모	10억 이하	244	99.0	1.0
	10억 초과-30억 이하	89	99.0	1.0
	30억 초과-100억 이하	67	95.4	4.6
	100억 초과	30	89.7	10.3

출처: 농식품부, 2021. 6월 발표자료

- 국내 판매 채널은 직영점 또는 대리점이 62.4%를 차지하며 OEM 납품도 16.6%를 차지함
- 반면, 매출액이 큰 업체는 타 유통업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

〈표 2-23〉 김치의 국내 판매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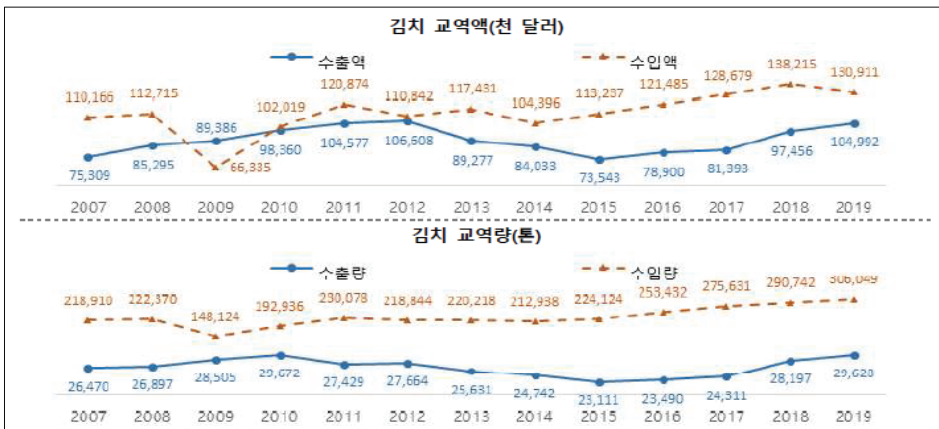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직영점 또는 대리점	자체 온라인 판매	타유통업체이용	OEM
계		430	62.4	9.1	11.9	16.6
업체 규모	10억 이하	244	66.5	5.9	8.7	18.9
	10억 초과-30억 이하	89	64.1	10.9	12.9	12.1
	30억 초과-100억 이하	67	52.3	15.2	17.0	15.5
	100억 초과	30	46.7	15.7	23.0	14.7

출처: 농식품부, 2021. 6월 발표자료

□ 김치 교역

- 2019년 김치 무역 적자액은 25,919천 달러로 전년 대비 36.4% 감소하였으며, 이는 수출액 증가 및 수입액 감소에 따른 결과

〈그림 2-4〉 김치 교역액 및 교역량 추이



- 2019년 김치 수출 대상국 수는 78개며 18년 68개 대비 14.7% 증가하였으며 78개 국가 중 수출액이 가장 큰 국가는 일본, 미국, 홍콩 등임

〈표 2-24〉 주요 대상국의 김치 수출

순위 (2019년 기준)	대상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천 달러)	점유율	금액 (천 달러)	점유율	금액 (천 달러)	점유율	금액 (천 달러)	점유율
1	일본	47,076	57.8	45,567	56.0	56,104	57.6	55,184	52.6
2	미국	6,248	9.2	7,246	8.9	8,969	9.2	14,802	14.1
3	홍콩	4,285	5.5	4,346	5.3	4,489	4.6	4,953	4.7
4	대만	3,832	5.6	4,440	5.5	5,099	5.2	4,781	4.6
5	호주	2,059	3.2	2,547	3.1	3,113	3.2	3,485	3.3
-									
19	중국	441	0.6	298	0.4	419	0.4	388	0.4
26	베트남	492	0.6	565	0.7	517	0.5	200	0.2
전체		81,393	100.0	81,393	100.0	97,456	100.0	104,992	100.0
집중도(1~5순위)		0.349	-	0.328	-	0.346	-	0.302	-

출처: 한국무역협회 K-stat
'집중도'는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임

- 2019년 대 일본 수출액은 55,184천 달러로 전년 대비 1.6%, 수출량은 15,949톤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

〈표 2-25〉 대일본 김치 수출 현황

연도	일본 수출액		일본 수출량		일본 수출 단가	
	금액 (천 달러)	전년 대비 증감률(%)	중량(톤)	전년 대비 증감률(%)	단가 (달러/톤)	전년 대비 증감률(%)
2015	44,548	△21.3	14,820	△12.7	3,006	△9.9
2016	47,076	5.7	14,045	△5.2	3,352	11.5
2017	45,567	△3.2	13,681	△2.6	3,331	△0.6
2018	56,104	23.1	16,343	19.5	3,433	3.1
2019	55,184	△1.6	15,949	△2.4	3,460	0.8

출처: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단가는 금액/중량으로 계산된 값임

- 2019년 김치 수입국 수는 11개이며, 주 수입국은 중국, 베트남 등임
- 19년 김치 수입 대상국 수는 11개국으로 18년 7개국 대비 증가하였으며 전체 국가 중 중국이 99.9%를 차지

〈표 2-26〉 주요 대상국별 김치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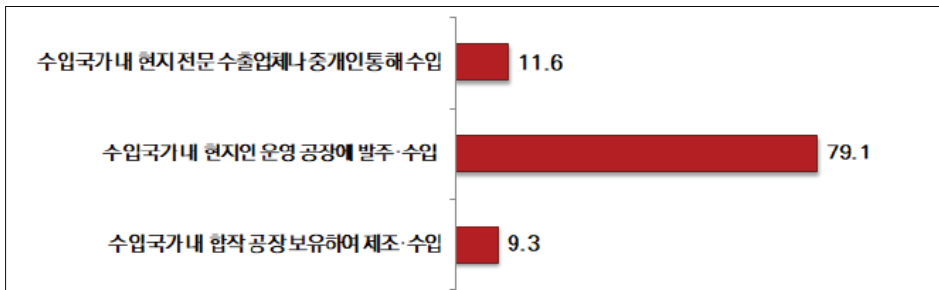
순위 (2019년 기준)	대상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천 달러)	점유율	금액 (천 달러)	점유율	금액 (천 달러)	점유율	금액 (천 달러)	점유율
1	중국	121,483	99.9	128,678	99.9	138,207	99.9	130,904	99.9
2	베트남	0.5	0	0	-	5.1	0	5.2	0
3	캐나다	0.6	0	0.5	0	1.0	0	0.9	0
4	미국	0.7	0	0.4	0	0.8	0	0.8	0
5	태국	0	-	0	-	0	-	0.1	0
전체		121,485	100	128,679	100	138,215	100	130,911	100

출처: 한국무역협회 K-stat

- 수입업체의 경우 주요한 수입 방법은 수입 국가 내 현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발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림 2-5〉 김치 수입 업체의 수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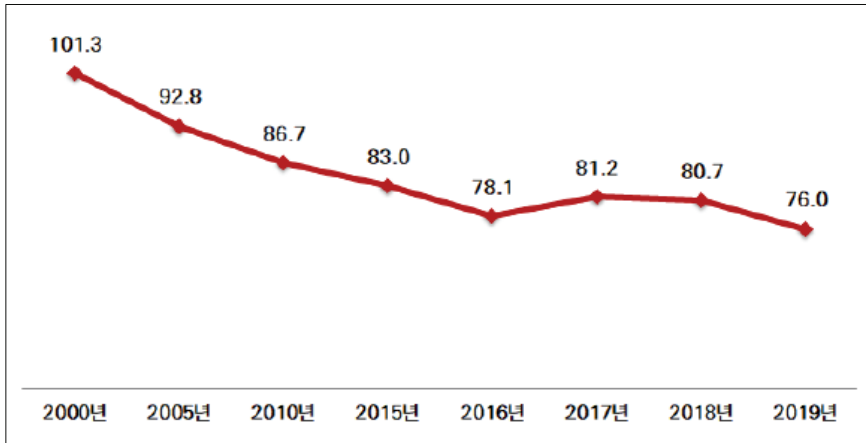
(단위: %)



- 수입의 증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배추의 자급율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 노출

〈그림 2-6〉 배추 자급율 변화

(단위: %)



주 1) 김치를 배추로 환산하여 공급량에 반영한 후 산정한 수치이며, 2019년은 KREI 추정치임.

2) 자급률=국내 생산량/총 공급량(국내 생산량+순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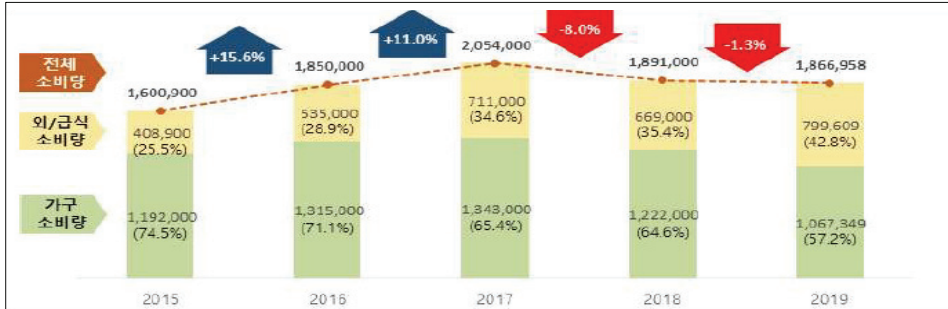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62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김치 소비

- 전국의 김치 소비는 186만 6,598톤으로 추정되며 19년은 18년 대비 1.3% 감소
- '19년 전체 소비량 중 가구에서 소비되는 김치는 106만 7천여톤으로 전년 대비 12.7% 감소했지만 외·급식은 약 80만톤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했음
 - 외급식 소비량 증가 이유: 외식이 증가하는 식생활 패턴의 변화 때문

〈그림 2-7〉 연도별 김치 소비량 변화

(단위: 톤,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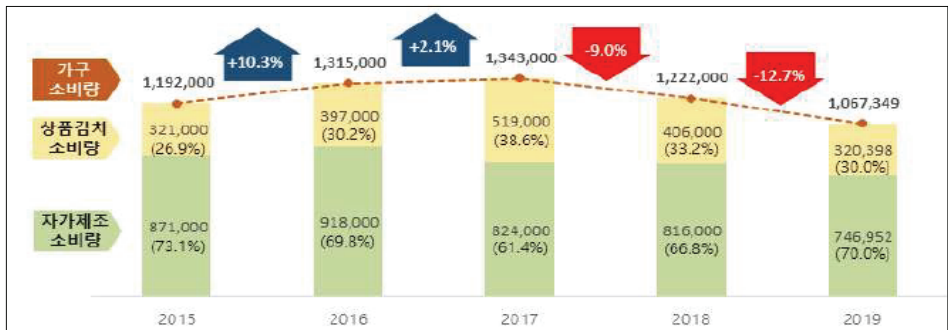


출처: 2015~2018년(세계김치연구소_김치산업 동향) / 2019년(2019 김치산업 실태조사_외급식업 조사 결과)

- '19년 연도별 가구 소비량은 206만 7천4백여톤이며, 이 중에서 자가 제조는 70.0%인 74만 6천 9백톤, 상품김치는 30.0%인 32만 400여톤임

〈그림 2-8〉 연도별 가구의 김치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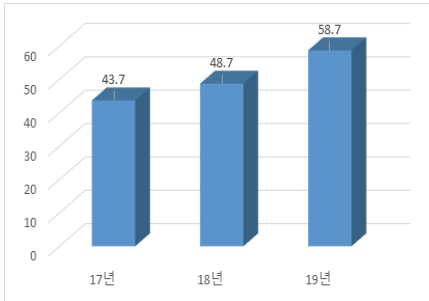
(단위: 톤, 비중(%))



출처: 2015~2018년(세계김치연구소_김치산업 동향) / 2019년(2019 김치산업 실태조사_외급식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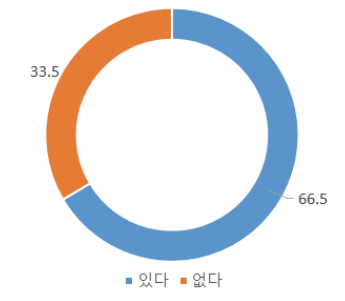
- '19년 김치 소비자의 경우, 김치를 직접 담그지 않는 가구는 58.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아울러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가구는 66.5%이며 주로 40대 이상 여성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

〈그림 2-9〉 김치 담그는 가구 비율



출처: 농림수산물부, 2021, 6 발표 자료 재구성

〈그림 2-10〉 김치 담금 가능 가구



4. 김치산업의 한계 및 시사점

□ 산업발전상의 한계와 문제점

○ 김치업체 규모의 영세성과 자동화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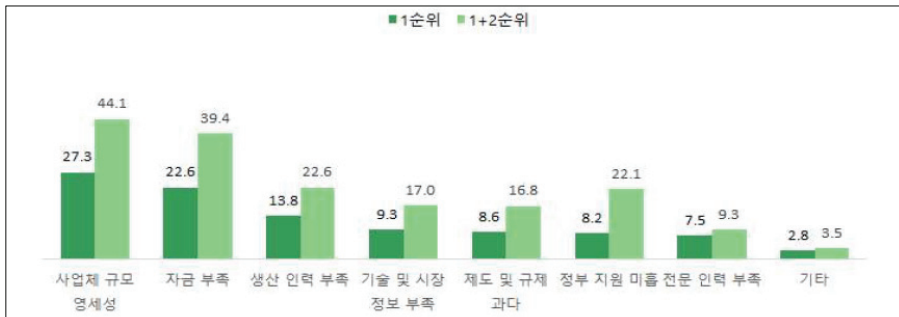
- 김치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소가 적지 않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요소로 사업체 규모가 영세한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김치 생산량이 500톤 미만인 업체의 비중이 56.7%이며 1,000톤 이상은 22.7%에 불과하며 상위 10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35.2%에 달함

- 두 번째 요소인 자금 부족도 기업의 영세성과 관련성이 적지 않음

〈그림 2-11〉 김치산업 발전의 장애 요소

(Base: 설문 조사 응답 기업(n=430), 단위: %, 복수 응답)



출처: 농림수산물부, 2021, 6 발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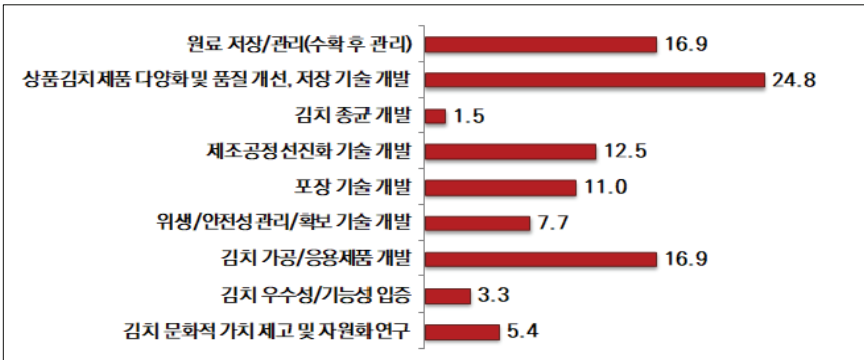
- 김치업체의 영세성으로 제조 공정의 자동화 비율도 낮는데, 김치업체 스스로 평가한 점수가 100점 만점에 52점으로 낮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 * 세계김치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의 자동화기기 보급을 통해 김치업계의 경영효율화 필요

○ R&D 부족과 조달 과정상 애로

- 김치업체의 11.8%만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의 대규모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김치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자체적으로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
- 김치업체는 연구개발 가운데서도 상품김치 제품 다양화 및 품질개선, 저장기술개발, 김치가공/응용제품 개발, 원료의 저장/관리 기술, 공정 선진화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그림 2-12〉 김치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수요의 내용

(단위: %)



주: 복수응답 결과를 100%로 환산한 결과임.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p.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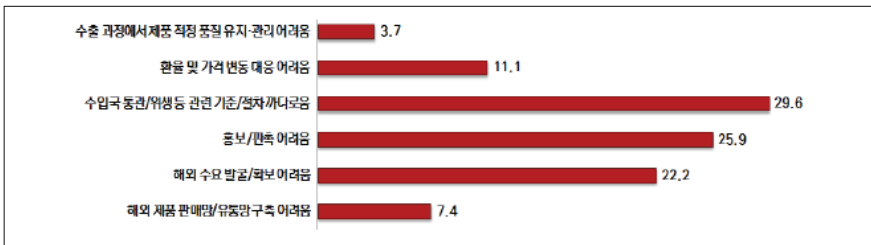
- 아울러 김치 원료 조달 과정에서 국산 원료의 가격 불안정, 일정하지 않은 품질, 안정적 물량 확보 곤란 등의 애로해소 지원이 필요

○ 국내 판매망 구축 애로 및 홍보·판촉·수출지원 부족

- 과거부터 김치를 제조해온 업체의 경우 단체급식이나 군납 등의 판매비중이 높아 수요처 확보가 가능하지만 신규 진입 업체는 수요처 확보에 애로
- 신규 업체 등일수록 온라인 유통 채널 활용 등 홍보, 판촉 전략이 부족
- 2008년 대비 2018년의 김치 섭취량은 25.9%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해외 시장개척 노력 부족
 - * 일부 10% 정도의 김치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수출경험이 없어 해외수요 창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수입국 통관 기준 및 절차 준수에 대한 어려움뿐 아니라 해외 수요 발굴/확보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

〈그림 2-13〉 상품김치 수출 과정상의 어려움

(단위: %)



주: 복수응답 결과를 100%로 환산한 결과임.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p.254

○ 해외 수입 김치 증가로 인한 원재료 자급률 저하

- 중국을 중심으로 한 김치수입이 증가해서 2019년 2,592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
- 수입 김치는 자국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국산김치를 외국산이 대체하게 되면 국내 김치 원료의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감소
- 이 때문에 2000년 100%를 넘어섰던 배추 자급률은 2010년 86.7%, 2015년 83.0%, 2019년 76.0%로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입김치 증가는 이뿐 아니라 수입김치의 안전성 문제도 지니고 있음

○ 연계성 있는 김치산업의 통계 정비 및 구축 부족

- 김치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김치산업진흥법」제9조(통계조사)에도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지만 김치관련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산출이 되지 않고 있음
- 김치 관련 통계는 식약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세계김치연구소, 한국무역협회, 농식품부 등의 관련 기관에서 생산, 작성되고 있음
- 그러다 보니 김치산업은 원료생산·조달 단계부터 제조, 유통·판매, 소비 단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단계별로 독립적으로 통계가 생산됨에 따라 통계자료간의 연결성이 부족하고 농민, 산업이나 정책 담당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표 2-27〉 김치 관련 통계작성 기관과 통계의 주요 내용

기관	통계명	주요 내용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김치(HS Code: 2005991000)의 연도별 수출금액, 수출종량, 수입금액, 수출종량, 수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 분야별 현황 조사	김치류(김치소, 배추김치, 기타김치 등)의 구매량, 구매 비용, 구매 시 고려사항, 원재료 구매 형태, 구매 시 유통 형태별 비율, 수입품의 원산지, 구매처별 구매 비율 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품목별 POS 소매점 매출액	분기별/누적 제조사/브랜드/세분시장(배추김치류, 무김치류, 기타김치류) 소매점 매출액 POS 자료
	식품기업 정보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	김치류 제조업의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자료 배추김치원료 현황,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유통 및 판매 현황 소미자 동향, 해외 시장 동향, 절임 배추 시장 현황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산업동향	김치 제조업체 현황, 김치 수출입 동향, 소비자가구 및 외·급 식업소 김치 소비 실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실적을 보고하는 모든 업체의 업체 수, 종업원 수, 생산량, 생산액, 출하량, 출하액, 수출량, 수출액 등 산출 및 판매 자료
	식품수거검사실적	김치류 수거검사 건수, 적합, 부적합, 부적합비율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종사자 10명 이상인 김치류 제조업체의 행정구역별(시군구) 사업체수, 종사자 수, 급여액, 출하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 연말잔액
	전국사업체조사	행정구역별(시·도) 김치류 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가공식품소비자 태도조사	김치류 주 구매자 특성(거주지역,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등)
	식품소비행태조사	김치 구매 빈도, 김치 구매 행태 등 김치 소비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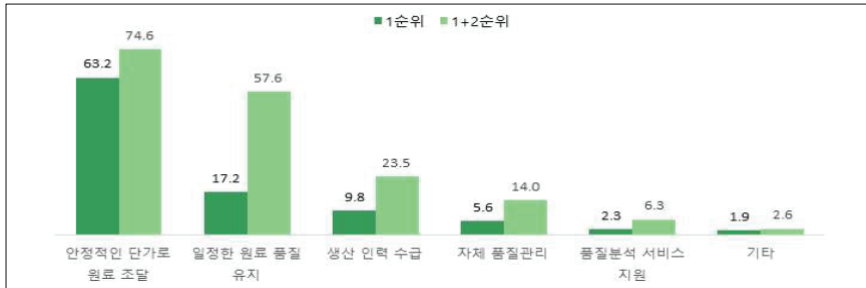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p.285

□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

- '19년 김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농식품부 조사에 의하면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단가의 원료조달'이었으며 두 번째는 '원료의 일정한 품질 유지'로 나타남

〈그림 2-14〉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

(Base: 설문 조사 응답 기업(n=430), 단위: %,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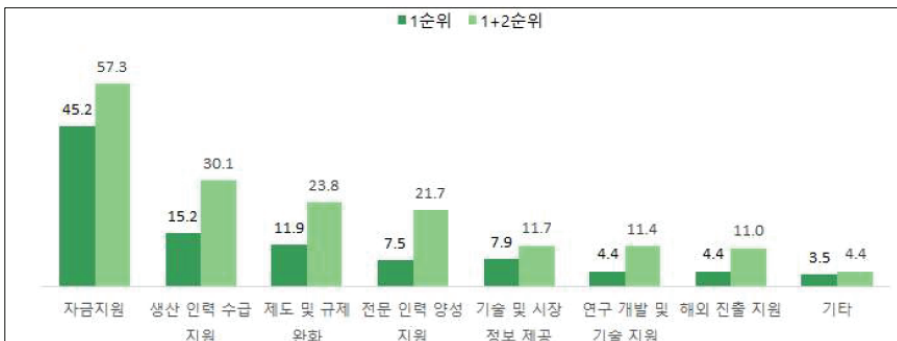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21, 6 발표 자료

- 또 김치산업을 육성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지원으로는 1순위 자금지원, 2순위 생산인력 수급지원, 규제완화, 전문인력 양성지원, 정보제공, 연구개발 지원, 해외 진출지원 등으로 나타났음

〈그림 2-15〉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

(Base: 설문 조사 응답 기업(n=430), 단위: %, 복수 응답)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21, 6 발표 자료

제4절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현황과 과제

1. 제도적 기반

1) 조례

□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 목적

- 광주광역시 김치의 경쟁력 향상 및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지역경제 발전

○ 김치산업육성위원회 설치

- 시장의 김치산업의 육성 및 광주김치 명품화에 관한 사항 자문

○ 김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5년 단위)

- 김치산업의 여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김치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 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

- 공동 브랜드 개발

- 김치산업과 지역농업의 연계 강화

- 광주김치 홍보 및 유통 지원 등

*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행 및 시행 결과 평가

○ 기술개발 지원, 명품화 사업 추진, 김치사업자 지원, 품질 인증 지원, 판매장 운영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광주김치 기술개발·생산·판매 촉진 공로자(기관, 단체, 개인) 포상 등 시행

〈표 2-28〉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조(목적)	- 김치산업 육성 및 명품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정의)	- 김치, 김치재료, 김치산업, 광주김치, 김치사업자 등
제3조(시장의 책무)	- 김치산업 육성과 광주김치의 명문화 촉진, 김치문화 계승·발전
제4조(위원회 설치)	- 김치산업육성위원회 설치를 통해 심의 및 자문
제5조 (김치산업 육성계획 수립)	-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 - 김치산업육성 기본방향, 김치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육성, 품질향상·공동브랜드 개발, 김치산업과 지역농산물 연계강화, 광주김치 홍보·유통지원, 관광 자원화,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등 - 시행계획의 평가 시행
제6-12조 (기술개발 등 지원)	- 기술개발 지원, 명품화 추진, 김치사업자·품질인증·판매장 운영·단체 등의 사업 지원
제16조 (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	- 관련 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	- 김치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생산자에게 김치제조기술 보급, 전수의 교육 훈련 시행 및 위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 목적

- 광주 김치산업의 위상 제고 및 김치 세계화를 위해 설립한 김치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김치타운의 업무 및 기능

- 시설관리 및 운영
- 김치박물관 운영
- 김치 아카데미 운영
- 김치 및 발효식품에 대한 교육·체험·전시 등
- 김치 생산·유통·홍보 지원
- 광주세계김치축제 지원

- 그밖에 김치타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그 외 시설 개방, 사용·수익 허가, 민간위탁 등 관리, 운영을 규정

〈표 2-29〉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조(목적)	- 김치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 김치제조업체, 김치·발효식품 관련 단체
제3조(위치)	- 김치타운의 주소지
제4조(업무 및 기능)	- 시설관리 및 운영, 김치박물관, 김치아카데미, 김치 및 발효식품에 대한 교육·체험·전시, 김치 생산·유통·홍보 지원, 광주세계김치축제 지원 등
제5조(시설의 개방)	- 시설의 개방일시 및 방법
제6-9조(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 사용 및 수익의 허가에 대한 사항, 사용료, 관람료
제12-15조(민간위탁 등)	- 김치타운의 시설의 민간위탁 방법,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의내용, 위탁의 해지 등
제16조(비용징수)	-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관련 비용징수
제18조(지도·감독)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김치산업 육성계획

□ 수립 근거

-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제5조
 -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주요 내용

- 비전 : 대한민국 김치의 표준, 광주김치
- 5개년(18~22년) 사업의 목표

- 광주김치 산업 육성 활성화, 광주김치 관련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광주 김치산업 상품 다양화, 김치종주도시 정체성 강화, 광주김치 홍보 네트워크 확대

○ 시행과제 : 4개 부문에 23개 도출

- 23개는 산업 부문 5개, 공간 부문 5개, 마케팅 부문 7개, 사회적 가치 부문 5개로 구성

사업비전(안)	대한민국 김치의 표준, 광주김치			
사업목표	광주김치 산업 육성 활성화	광주김치 관련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광주김치산업 상품 다양화	
	대표 김치종주도시, 광주로서의 정체성 강화		광주김치 홍보네트워크 확보	
세부 실행과제 (23개)	산업 부문 (5)	공간 부문 (6)	마케팅 부문 (7)	사회적가치 부문 (5)
	① 광주김치 문화 개발·보급 ② 현대식 식생활에 맞춘 김치제품 다양화 ③ 빛고을 김치레스토랑 양성·보급 ④ 광주김치정체성 찾기 ⑤ 광주김치 파트너 맺기	① 김치명가 맛집 육성·지원 ② 광주김치연구센터 설립 ③ 김치타운 리모델링 ④ 광주전통김치공방 육성 ⑤ 김치테마거리 조성 ⑥ 김치동굴 조성	① 광주김치 Day 제정 추진 ② 세계김치박람회 개최 ③ 광주김치특구 지정 ④ 명인명품 찾아 떠나는 광주김치여행코스 개발 ⑤ 광주김치 플랫폼 구축 ⑥ 김치 예술제 개최 ⑦ 우리집 장독대 프로젝트 추진	① 김치창업학교 운영 ② 100년 100개 김치스타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 ③ 전통발효식품대학 운영 ④ 김치사업통합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⑤ 찾아가는 김치 나눔서비스 추진

출처: 광주광역시, 김치산업 및 김치타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18

○ 계획지표

- 광주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협력 하에 김치타운 등 기 조성된 인프라를 토대로 다양한 지표를 개발

〈표 2-30〉 광주김치산업 육성종합계획의 목표

계획지표명	연차별 목표치				
	'18	'19	'20	'21	'22
광주김치 제조업체 수(개소)	34	40	47	55	65
광주김치 생산량 (ton)	4,903	5,883	7,059	8,470	10,164
일자리 창출	-	284명	326명	374명	430명
김치관련 청년 창업업체 수 (개소)	-	2	4	6	12
김치박물관 방문객 수 (천명)	56	71	90	115	147
명가맛집 육성 수(개소, 누적)	-	2	4	6	12
광주김치 (융복합) 신제품 개발	-	3	5	7	9

출처: 광주광역시, 김치산업 및 김치타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18

○ 추진계획

- 산업, 공간, 마케팅, 사회적 가치의 4개 부문별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추진
- 과제의 추진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로 중기적 추진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5개년 동안 총 투자 사업비는 14,326백만원으로 추정

〈표 2-31〉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추진 총괄

부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용 (백만원)
산업 (5개 사업)	광주김치 정체성 찾기	2018년 ~ 2019년 (2년)	70
	현대식 식생활에 맞춘 김치제품 다양화	2019년 ~ 2022년 (4년)	660
	빛고를 김치레스토랑 양성·보급	2021년 ~ 2022년 (2년)	600
	광주김치 문화 개발·보급	2019년 ~ 2022년 (4년)	240
	광주김치 파트너 맺기	2019년 ~ 2022년 (4년)	50
소계			1,620

부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용 (백만원)
공간 (6개 사업)	김치명가 맛집 육성·지원	2019년 ~ 2022년 (4년)	215
	광주김치연구센터 설립	2020년 ~ 2022년 (3년)	320
	김치타운 리모델링	2018년 ~ 2022년 (5년)	460
	광주전통김치공방 육성	2020년 ~ 2022년 (3년)	251
	김치테마거리 조성	2019년 ~ 2022년 (4년)	2,540
	김치동굴 조성	2020년 ~ 2022년 (3년)	1,640
소계			5,426
마케팅 (7개 사업)	광주김치 Day 제정·추진	2018년 ~ 2022년 (5년)	180
	세계김치박람회 개최	2021년 ~ 2022년 (2년)	6,065
	광주김치특구 지정	2019년 (1년)	50
	명인명품 찾아 떠나는 광주김치여행코스 개발	2019년 ~ 2022년 (4년)	80
	광주김치 플랫폼 구축	2019년 ~ 2022년 (4년)	180
	김치 예술제 개최	2019년 ~ 2022년 (4년)	60
	우리집 장독대 프로젝트 추진	2019년 ~ 2022년 (4년)	190
소계			6,805
사회적가치 (5개 사업)	김치창업학교 운영	2019년 ~ 2022년 (4년)	120
	100년 100개 김치스타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	2019년 ~ 2022년 (4년)	140
	김치 및 전통발효식품대학 운영	2018년 ~ 2022년 (5년)	100
	김치사업통합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2018년 ~ 2022년 (5년)	55
	찾아가는 김치 나눔서비스 추진	2019년 ~ 2022년 (5년)	60
소계			475
계			14,326

출처: 광주광역시, 김치산업 및 김치타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18

2. 김치산업 현황

□ 김치업체 현황

- 세계김치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김치 업체수는 22개로 전국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음
- 시도의 경우, 업체수 기준으로 볼 때 전남이 19.5%(88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경기도 15.7%(71개), 충북 9.5%(43개)의 순을 보이고 있음

〈표 2-32〉 2018년 전국 시도 김치업체 현황(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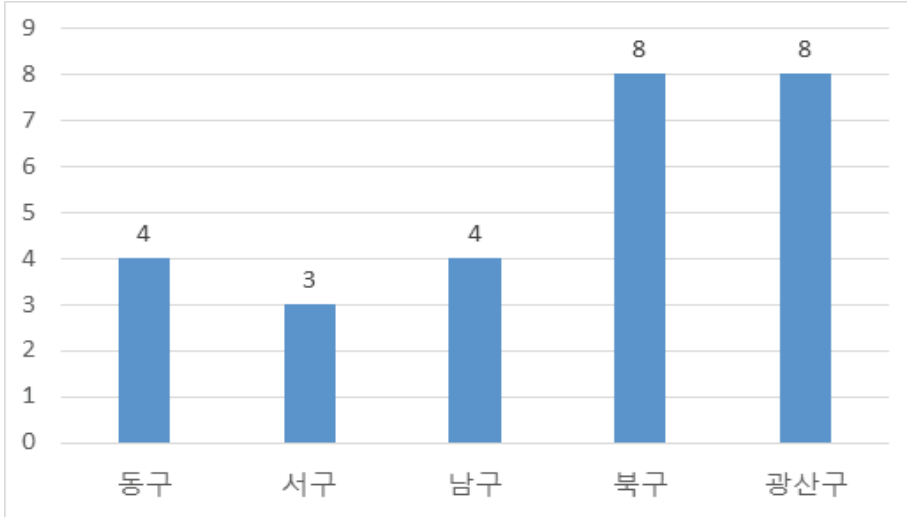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업체수	17	18	16	32	22	4	4
%	3.8	4.0	3.5	7.1	4.9	0.9	0.9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업체수	71	31	43	19	36	88	23
%	15.7	6.9	9.5	4.2	8.0	19.5	5.1

구분	경남	제주	계
업체수	22	6	452
%	4.9	1.3	100

- '20년의 경우, 광주의 김치업체는 '18년보다 5개 업체가 더 증가해서 27개 업체가 존재하고 있음
 - 구별로는 광산구와 북구가 가장 많은 각각 8개 업체, 그다음은 동구와 남구가 각각 4개 업체, 그다음은 서구에 3개 업체가 자리하고 있음

〈그림 2-16〉 광주광역시 구별 김치 업체수(2020년)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 김치 생산량

- '19년 식약처의 통계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의 생산량은 5,127로 전국 대비 1.1%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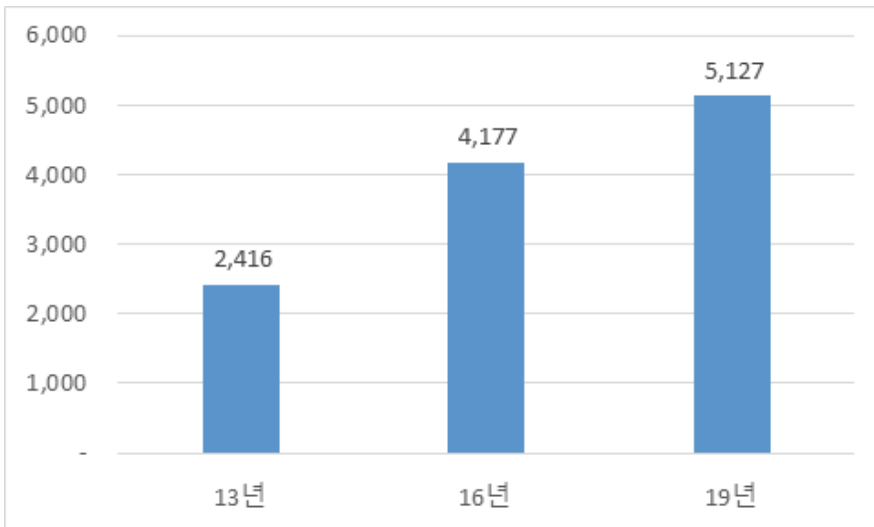
〈표 2-33〉 2019년 전국 시도의 김치 생산량

구분	생산량	비율(%)
서울	6,649	1.4%
부산	8,413	1.8%
대구	3,628	0.8%
인천	17,544	3.7%
광주	5,127	1.1%
대전	4,362	0.9%
울산	2,898	0.6%
세종	580	0.1%
경기	122,516	26.0%

구분	생산량	비율(%)
강원	48,122	10.2%
충북	83,824	17.8%
충남	36,380	7.7%
전북	19,803	4.2%
전남	18,451	3.9%
경북	42,253	9.0%
경남	46,754	9.9%
제주	3,394	0.7%
계	470,698	100.0%

- 경기도가 전국의 1/4이 넘는 26.0%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충청이 17.8%, 강원이 10.2%를 생산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의 경우, 연도별로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13년 대비 19년의 경우 112.2% 증가하고 있음

〈그림 2-17〉 광주광역시 김치 생산량 추이



□ 광주광역시 김치 수출입 현황

- '18년에 비해 '19년은 전국의 경우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광주광역시의 경우, 수출입 모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8년 대비 '19년의 경우, 수출은 50% 증가했으며 수입은 6.8% 증가해서 수출에 비해 수입의 증가율이 낮음

〈표 2-34〉 시도별 김치 수출입 현황

구분	수출 증량(ton, %)			수입 증량(ton, %)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총계	29,630	39,968	34.9%	305,831	281,186	-8.1%
서울	12,294	17,720	44.1%	34,621	34,484	-0.4%
부산	984	936	-4.9%	24,066	17,521	-27.2%
대구	5	2	-60.0%	12,726	11,054	-13.1%
인천	152	272	78.9%	104,991	97,732	-6.9%
광주	14	21	50.0%	1,473	1,573	6.8%
대전	16	19	18.8%	4,062	3,607	-11.2%
울산	2	1	-50.0%	0	0	0.0%
세종	0	218	100.0%	0	0	0.0%
경기	982	1,622	65.2%	94,756	86,027	-9.2%
강원	744	880	18.3%	769	389	-49.4%
충북	3,321	5,019	51.1%	1,599	2,320	45.1%
충남	571	679	18.9%	5,301	6,581	24.1%
전북	995	1,307	31.4%	3,206	2,791	-12.9%
전남	1,888	2,421	28.2%	2,127	2,103	-1.1%
경북	3,691	4,070	10.3%	0	0	0.0%
경남	3,964	4,773	20.4%	15,746	15,004	-4.7%
제주	7	8	14.3%	388	0	-100.0%

출처: K-STAT 홈페이지 지역별 수출입 통계

3. 환경변화 대응 및 과제

□ 식생활 패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김치소비 감소 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에 주도적 역할 수행
-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김치와 관련된 다양한 파생 및 연관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김치 소비문화 형성에 기여

□ 김치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필요

- 광주광역시의 김치 생산의 지속적 증가에 착안하여 김치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육성
- 김치의 관련된 농산물 원료 재배와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여 광주광역시 김치의 상품성 향상
- 우수한 김치 자원, 김치 명인을 보유한 이점을 활용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김치를 육성

□ 김치도시 광주광역시 이미지 강화, 전파 및 확산

- 비록 전국 가운데 김치 생산비율은 높지 않지만 맛과 풍미를 가미한 상품성 높은 김치를 생산, 전파, 홍보하여 김치도시의 이미지 전파
- 김치타운, 김치연구소 등 기존에 축적해 놓은 인프라와 연계한 김치도시 광주의 이미지 향상 및 강화 필요

□ 김치산업 주도 중추적 기능 확보

- 새롭게 재편, 전개될 김치시장과 김치산업의 육성을 주도할 수 있는 거점 및 중추 기능 확보, 강화

제3장

광주광역시 김치타운의 진단과 과제

제1절 김치타운의 현황과 특성

제2절 김치타운의 진단과 분석

제3절 김치타운의 활성화 과제

제3장

광주광역시 김치타운의 진단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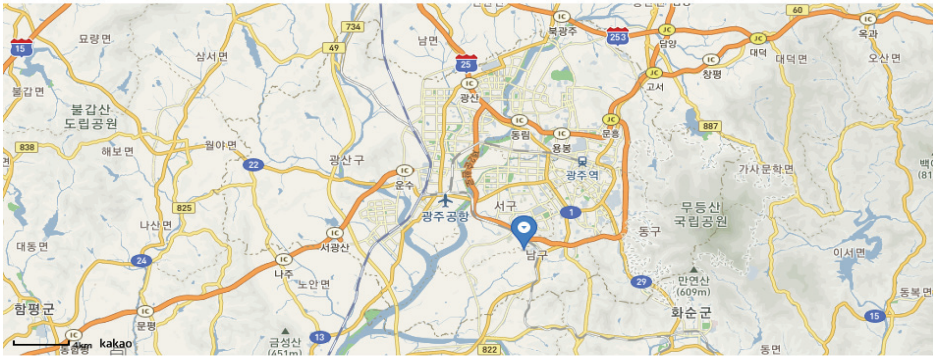
제1절 김치타운의 현황과 특성

1. 조성가능

1) 김치타운

□ 입지

○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 60(임암동 1044)



□ 조성

- 김치타운: 2004. 2월 김치센터 착공(광주 남구청)하여 '08년 남구에서 광주 광역시로 사업을 이관, 2011년 김치타운 준공
 - * 부지면적 78,310㎡, 건축 연면적 11,706㎡(지하2, 지상4)에, 426억원 (국비 201, 시비 195, 구비 30)
 - * 주요시설은 김치박물관(직영), 김치체험장(위탁), 김치공장(임대)
- 2018년 전통발효식품단지 준공 및 인수

〈전통발효식품단지〉

- 사업기간: 2015. 1. ~ 2018. 7.
- 사업비: 8,000백만원(국비4,000 시비4,000)
- 규모: 연면적 2,446㎡, 지상1층~지상3층, 3개동



□ 시설 및 기능

○ 주요 기능: 홍보, 전시 및 체험, 공방, 김치 생산

- 김치박물관의 전시 및 체험, 공방, 생산 및 제조 기능 수행

기능	내용
홍보	- 홍보관, 전통발효식품기념품점, 식당, 가공공장 견학로 등
전시 및 체험	- 김치박물관: 1,870㎡ 규모로, 김치의 역사, 우수성, 팔도 대표 김치 관련 자료 및 음식문화 관련 유물, 김치영상물, 놀이로 즐기는 김치코너 등 김치에 관한 다양한 전시물을 전시 - 기획전시실: 광주, 전라도 지역의 토속김치에 대한 자료와 김치 실물 모형을 전시 - 김치체험장
공방	- 수제공방, 문서고, 자료실, 명품김치사업단 사무실, 회의실, 광주김치아카데미 등
생산 및 제조	- 김치 HACCP 공장 : 3,269.50㎡ 규모로 김치를 생산, 제조, 유통 기능을 갖춘 시설로 방문객들의 현장 견학 가능

○ 제공 프로그램

- 김치교실 및 김치 마이스터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주말 김치체험, 한식 및 단오, 추석 등 문화 프로그램 제공

구분	내용
교육 프로그램	- 초보김치교실, 김치마이스터과정, 제철김치만들기과정, 맞춤형요리교실
체험 프로그램	- 김치요리교실, 주말김치체험프로그램, 찾아가는 김치교실, 온택트 김치교실
문화 프로그램	- 삼짚날, 한식, 단오, 유두절, 칠석, 추석, 중앙절, 상달, 동지 등 세시음식 체험

○ 김치박물관 프로그램

- 김치 역사의 장, 八道 김치의 장, 김치 탐구의 장, 발효음식의 장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

구분	내용
환영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밭, 김장날, 설, 추석 등의 모습을 담은 한지공예품 전시 - '문헌 속 김치 이야기' 전시 - 배추막김치, 동치미, 오이소박이 등의 '김치 레시피 북기', 다양한 김치를 종이 카드에 찍어보는 스탬프 체험
김치역사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년의 역사를 지닌 김치에 대한 용어 변천, 역사 등을 알아보는 테마로 '게미가 있는 김치', '김치 그 단어의 변천사', '언제부터, 왜 김치를 먹기 시작 했을까?', '김치의 으뜸, 남도' 등의 세부 코너 구성
八道김치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이, 가지 등 다양한 채소와 어패류, 육류를 이용한 각각각색 팔도 김치 및 젓갈류 소개 - 옛 선조들의 흔적이 담긴 식생활 유물과 각 도별 전통 옹기 전시 - 수목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김치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김장 담그기"를 총 5단계의 과정을 통해 연출 - 대형 김치독 스크린에 고추, 배추를 캐릭터화 시킨 이미지 영상 콘텐츠를 제작, 관람객의 흥미와 재미를 살린 포토존
김치체험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볼풀장: 유아 및 어린이들이 신나는 공놀이와 다양한 놀이체험을 통해 김치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놀이 공간 - 김치광: 겨울철에도 김치가 얼지 않고 맛있게 익도록 만든 김치냉장고 - 김치응용요리 레시피 배우기: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김치전 등 음성으로 응용요리를 설명해주고 배워보는 공간
김치탐구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이 쉽게 소금버튼을 눌러 배추 절임을 배워 볼 수 있는 콘텐츠 - 입맛 도둑, 김치를 찾아봐: 자신의 입맛에 맞는 김치를 버튼식 스위치를 눌러가며 찾아보는 체험 - 김치를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연출 - 산, 들, 섬지역 사람들이 즐겨먹는 김치를 모형으로 전시
발효음식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 일본의 낫토, 불가리아의 요구르트 등 세계 각국의 발효음식을 알아보고 광주김치 우수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

출처: 광주광역시 김치타운(<https://www.gwangju.go.kr/kimchitown/>)

〈김치박물관〉



〈김치 교육·체험장〉



〈기획전시실〉



〈김치카페&판매장〉



2)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 조성목적

- 김치 관련 자원과 원·부재료 발효가공시설의 집적화와 既 조성된 김치타운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농식품부 시책 활용)
 - 김치발효식품관, 토굴형저장시설, 다목적체험장으로 구성

□ 구성

- 김치발효식품관
 - 1,450㎡ 규모로, 김치 및 발효식품에 대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김치발효식품 홍보관과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
- 다목적 체험장
 - 계절별, 종류별 다양한 김치 만들기 체험, 교육, 전시 등의 체험 제공
- 토굴형 저장시설
 - 발효를 통해 유산균을 생성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김치의 저장을 위한 시설

〈그림 3-1〉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3) 세계김치연구소

□ 조성목적

- 김치 종주국의 위상 제고와 글로벌 김치문화 확산
- 김치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김치산업 육성·발전에 기여

□ 조성연혁

- 2010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로 설립되어 2012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광주광역시로 청사 준공·이전

- 규 모: 부지 11,150㎡/건축연면적 9,549㎡(지하1층, 지상4층)
- 시 설: 연구 및 실험시설, 행정시설 등
- 사업비: 182억 원(국비)

□ 주요 기능

- 기능성 김치 유산균 발굴(아토피피부염 예방/개선, 항비만, 대장염)
- 우수 김치종균 개발(18종) 및 종균 보급시스템 구축
- 김치생산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통한 공정 선진화
- 김치 미생물 유전체 정보 시스템 구축

〈그림 3-2〉 세계김치연구소



제2절 김치타운의 진단과 분석

1. 현황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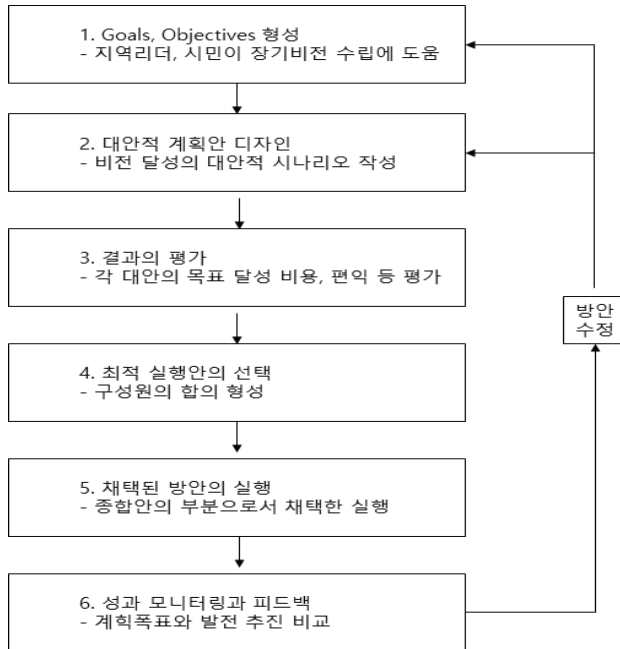
1) 진단의 프레임

□ 토지이용과 기능의 관계

○ 토지이용은 기능 극대화의 수단이자 도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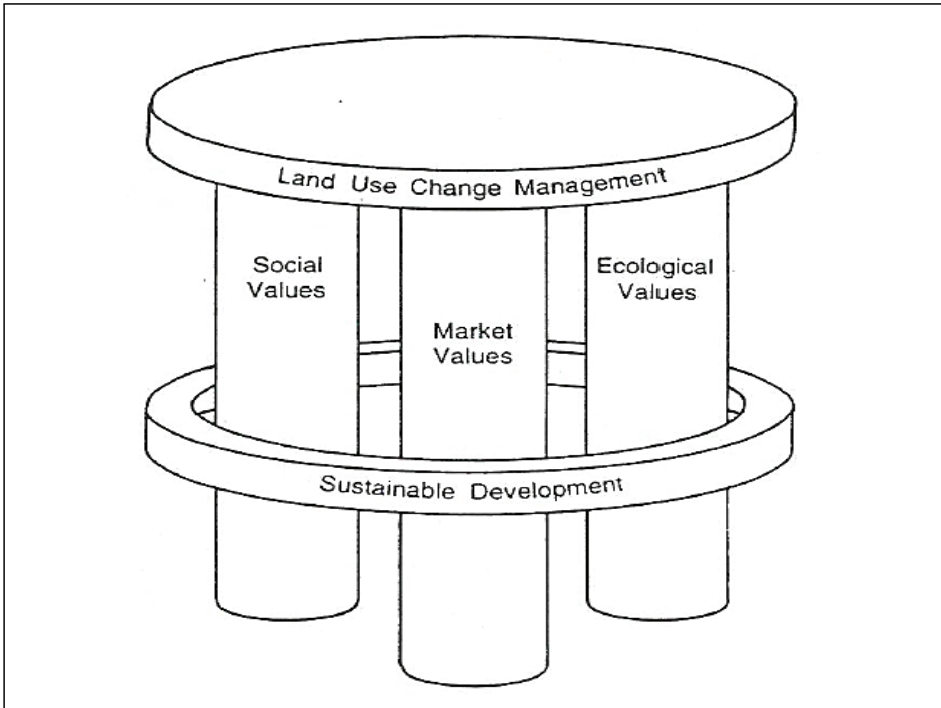
- 특정한 지역의 토지이용(local land use)은 미래의 토지이용을 두고 일련의 다양한 주체의 이해가 관계되는 게임의 장 성격 보유
- 바람직한 국지적 토지이용은 방안 선택, 시행, 평가 등의 Feedback을 동반하는 일련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구성됨(Kaiser et al, 38)

〈그림 3-3〉 토지이용 결정 프로세스



- 국지적 토지이용은 가치는 사회적 사용가치, 시장(market) 사용가치, 생태적 사용가치로 구성(Kaiser et al, 54)
 - 사회적 사용가치에는 토지이용 형태, 활동이, 시장 사용가치는 시장 실패 치유가, 생태적 사용가치에는 환경적 자산 및 통합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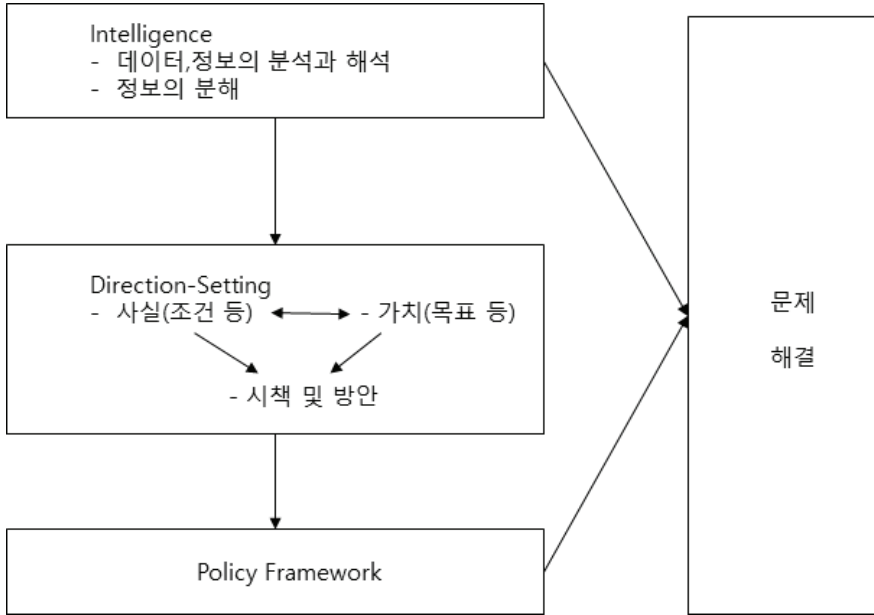
〈그림 3-4〉 토지이용의 가치



자료: Kasier et al.(1995), *Urban Land Use Planning*, p.59

- 토지이용의 변화는 다양한 부분의 정보 분석 및 종합을 통해 시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선택의 과정임
 -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정보 분석 등의 intelligence, 향상된 계획을 포함한 정책 프레임,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구성

〈그림 3-5〉 토지이용 문제 해결 및 목표달성 요소



출처 : Kaiser et als, 1995, p.62, p.259 수정

□ 본 과제에서 기능 진단 및 분석의 접근

- 1단계: 김치타운의 목적과 지향점 파악
- 2단계: 전문가 인터뷰, 면담 등을 통해 부족 기능에 대한 의견 청취
 - 김치타운 관련 자료 검토도 병행
- 3단계: 김치타운의 목적에 비추어 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부문 및 기능의 구성
 - 기업의 경우는 Value-chain 기법을 적용하지만, 김치타운의 경우는 겨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너지 창출 및 패키지 경쟁력 강화로 기업의 Value-chain을 본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적정하게 활용
 -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연구자의 판단을 종합해서 김치타운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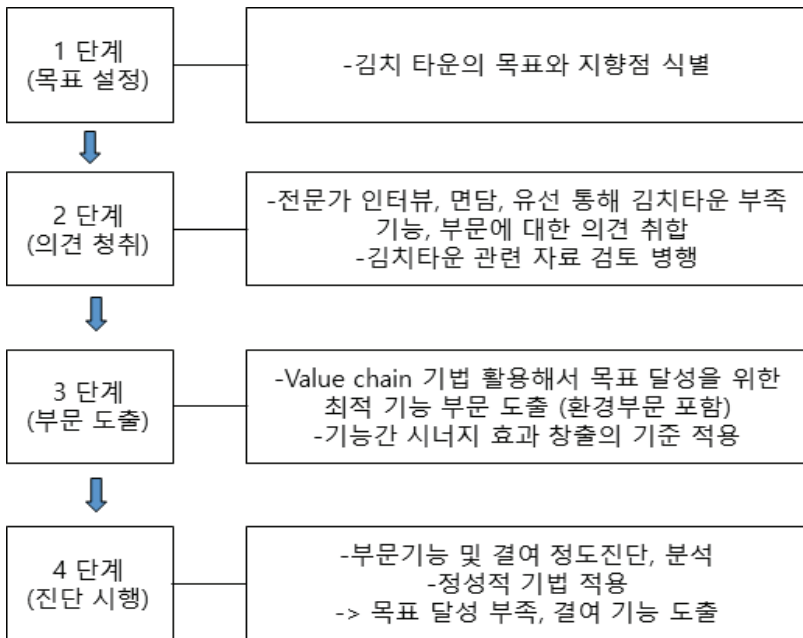
- 필요한 경우, 환경적 여건도 고려에 추가

〈일반적인 기업의 Value Chain〉

- Primary Activities: Input Logistics, Operations, Outbound Logistics, Marketing & Sales, Service
- Support Activities: Firm Infrastructure, Human Resource Management, Technology, Procurement

- 4단계: 목표 달성 애로의 부문 및 기능 진단 시행
 - 부족 및 결여, 부족한 내용 분석 시행
 - 부지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방안 도출에 활용

〈그림 3-6〉 기능 분석 및 진단 프로세스



2) 기능의 진단 및 분석

□ 김치타운 조성의 목적 및 지향점

-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 + 한국 김치문화의 세계적 전파
 - 한국의 대표적 발효 음식인 김치 인지도 향상,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측면
-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 - 김치산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 연구개발, 생산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측면
- 김치 문화의 세계적 전파 - 한국 대표 발표식품 우수성 전파 - 김치타운 명소화 * 광주 김치문화 우수성 홍보

-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광주김치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전파 한다는 김치타운 조성의 목적과 지향점 설정은 타당할 뿐 아니라 적극적 지향을 보유하고 있음

□ 장래 김치타운의 정체성 및 위상

- 2010년부터 김치타운을 건립해서, 추가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광주 김치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능을 핵심 기능을 확대하고 있음
 - 김치타운을 중심으로 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하고 박물관, 세계김치연구소 등의 기능을 충원
- 기능의 충진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 김치타운의 지향, 가고자 하는 목표 등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 보유
 - 광주김치나 한국의 김치와 관련해서 김치타운이 과연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의 문제, 즉 김치타운의 역할과 지향,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체성이 불분명
- 김치타운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의 종착지, 위상,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전제되어야 부지활용과 연관된 김치타운의 기능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김치 산업경쟁력 강화, 문화 전파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향점 설정 및 강화 필요

□ 전시 및 체험, 관광 측면

- 1,870㎡ 규모의 박물관 설치
 - 김치의 역사, 영양 측면의 우수성, 팔도 대표 김치, 음식 관련 유물 등 전시
 - 김치 생산과정, 김치체험 프로그램, 온택트 김치교실, 찾아가는 김치교실 등 운영
- 2019년의 경우, 138,721명(박물관 130,126명, 체험장 8,595명)의 방문객 창출
- '21년 8회째, “광주세계김치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광주김치대축제’ 개최하고 있음
- 김치 생산 과정 견학의 경우, 견학의 품질이 떨어지며,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킬러 소재 부족으로 인지도 및 체험 품질이 떨어지고 있음
 - 김치 생산 과정, 특히 팔도 김치 생산과 연계한 체험 제공 필요 (체험 관광 강화 필요)
 - * 관광의 바이블인 “串團子 원리”(OSMU) 구현이 불가능한 상황

□ 교육 및 김치 전통기술 전수 측면

- 다양한 김치 전통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초보 김치교실, 제철 김치만들기, 맞춤형 요리교실, 김치 마이스터 과정 등
- 그러나 교육 공간의 협소, 주부 위주의 교육, 비교적 높은 이수 비용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김치 담그는 문화의 감소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치 전승기술뿐 아니라 팔도의 다양한 김치 담그는 법에 대한 교육 제공 필요
- 대한민국의 전통김치 담그는 기술 전수, 김치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역부족한 위치를 차지

□ 김치 생산 지원 강화 및 확대

- 현재, 특정한 1개 김치 업체에게 기업활동에 필요한 생산 공간 임대
 - (※) 김치타운 김치 HACCP 공장 : 3,269.50㎡ 규모로 김치를 생산, 제조, 유통 기능을 갖춘 시설로 방문객들의 현장 견학 가능



- 생산시설의 경우, 김치 기업의 조업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체험, 교육, 연구 개발과 연계해서 운영함이 타운의 취지에 보다 합당
- 김치타운은 광주광역시, 전남, 전국의 배추재배 농가, 김치 생산 개인, 단체, 기업과의 연계강화로 방향 전환이 필요
- 공방을 포함한 생산 지원 및 네트워크 형성의 HUB로서의 기능 전환이 필요

□ 연구·개발·조사

- 국책 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가 연구개발 등의 기능을 담당
 - 주로 유산균 및 김치 종균 개발, 공정 자동화 등

〈표 3-1〉 세계김치연구소의 주요 기능

구분	내용
유산균 개발	- 기능성 김치 유산균 개발(항 아토피, 항 비만 등)
종균 개발	- 우수 김치종균 개발 및 보급 시스템 구축
공정 선진화	- 김치 생산 자동화 시스템 개발
정보 구축	- 김치 미생물 유전체 정보 시스템 구축

- 그러나 김치타운의 제반 기능과의 시너지, 연계성 부족
 - 연구개발에 치중한 결과, 김치타운의 섬과 같은 상황
- 김치타운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반 기능 지원 강화 필요
 - 향후 김치타운 정체성 강화 및 확대의 인프라 제공의 핵심 역할 담당

□ 벤처·인큐베이팅

- 미래 지향적인 김치타운의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김치 관련 벤처 업체 창출의 모태가 되는 Incubating 기능 수행이 필요
 - 김치타운이 광주김치캠퍼스, 광주김치밸리, 광주김치허브로 Upgrade 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김치 관련 벤처 기업의 창출 및 형성은 광주뿐 아니라 전남, 전국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요소
- 현재 김치타운에서 벤처 기업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능은 부재한 상황임
 - 공간, 핵심 제품의 생산, 테스트베드, 기업화 등과 관련된 기능
 - 김치 벤처 기업화와 관련된 제반 요소에 대한 지원 등 포함

〈산업에서 인큐베이팅의 의의〉

- 기업 발전 초기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태동 및 부화(incubate)를 넘어 기업으로 성장을 키워주는 벤처 인큐베이팅의 위치
- Accelerating은 스타트업에서 중기까지 기업을 지원하는 제반 역할 수행

□ 국내외 홍보·마케팅

- 김치 홍보 및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김치타운에 대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음
 - 현재는 체험, 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 국내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며, 외국의 인지도는 더 낮음

- 홍보, 마케팅의 토대는 “Empty marketing”이 되지 않는 게 핵심임
 - 홍보의 내용과 콘텐츠가 없으면 허풍 마케팅이 되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
- 김치타운의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김치타운 육성의 방향이 될 것임
 - 내용과 콘텐츠는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의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
 - * 홍보·마케팅의 대상, 단계, 전략 설정 구비 병행

□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

- 김치 유관기관 및 지역과 교류, 협력 네트워크 형성 중요
- 현재는 광주김치협동조합, 김치협회, 사업자 등과의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정도임
 - 지역적으로도 광주 위주이며, 일부 전남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
 - 지역의 대학, 전국의 연구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부족
-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문화 전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기획력 있는 교류 협력 필요
 - 가령, 김치문화를 지니고 있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연변 등과의 교류 협력도 김치 세계화를 위해 접근 가능

3) 기능의 진단 및 분석의 종합

- 김치타운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착실히 조성 축적해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치타운이 김치에 대한 체험, 전시, 관람, 교육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역할과 인지도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
- 유명무실한 김치 저장고 기능의 강화를 포함해서 김치생산의 견학 및 관람

의 품질제고, 팔도김치 생산 및 체험화, 김치 관련 산업의 인큐베이팅 지원
기능 강화 필요

- 교육 대상의 확대 및 교육과정의 세분화 및 체계화 강화 필요
- 이는 김치타운의 위상과 지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의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음

〈표 3-2〉 김치타운의 기능 진단 및 분석의 종합

부문	내용
김치타운 정체성	- 긍정: 김치타운 부지 마련, 조성은 긍정적인 측면 - 한계: 김치타운이 궁극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공간인지에 대한 지향, 방향, 위상 설정 부족
환경·기반 축적	- 긍정: 관련 시설을 착실히 조성, 설치하고 있음 - 한계: 미래 도달 장기적인 플랜 결여로 기반 축적의 체계성 부족
전시·체험·관광	- 긍정: 팔도 김치 모형 전시, 김치 생산과정 견학 - 한계: 생산과 연계된 체험 부족, 체험의 제한 체험·관광을 위한 특색있는 소재 부족, 저장 기능 부족
교육·전통기술 전수	- 긍정: 김치 전승 교육 시행 - 한계: 교육공간 협소, 주부 위주 교육 시행, 인재육성 부족
생산 지원 강화·확대	- 긍정: 1개 업체에게 타운의 일부 공간을 임대 - 한계: 광주시, 전남, 전국의 김치생산 개인, 기업, 농가 등과의 연계, 지원 부족 * 김치 생산 과정 견학의 품질 향상 결여
연구·개발·조사· 데이터	- 긍정: 김치연구소 유지 및 입지, 종균 보급 등 R&D 시행 - 한계: 제반 기능과의 연계성 부족
벤처·인큐베이팅	- 긍정: 김치협동조합 입점 - 한계: 김치 관련 벤처 인큐베이팅 지원 기능 부재
국내외 홍보·마케팅	- 긍정: 홍보, 마케팅 노력은 존재 - 한계: 홍보, 전파의 토대가 되는 콘텐츠 경쟁력 부족 제한적, 단편적인 국내외 홍보
교류·협력 네트워크	- 긍정: 일상적인 교류 및 협력 채널 형성 - 한계: 협력 범위 확대, 기획력 있는 교류 협력 강화 필요

제3절 김치타운의 활성화 과제

□ 김치 종주도시 광주에 대한 김치타운의 역할 강화

- 향후 김치타운이 가고자 하는 미래의 지향점이자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김치타운의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
- 이유는 김치타운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채 설치되었고, 나중에 세계김치연구소가 이전했으며, 전통발효식품단지가 추가적으로 설치된 탓이 큼
-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능(공간)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김치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김치타운이 가고자 하는 미래의 방향과 위상에 따라 결정
- 부지활용과 연관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김치타운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즉 김치타운의 명확한 정체성과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광주김치 경쟁력 강화를 주도, 총괄한 기능의 필요

-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세계김치연구소는 한국식품연구원 등과의 통합 논의, 오랜 시간 기관장 부재로 인한 기관 운영의 애로 등으로 인해 광주의 김치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김치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기능을 아직까지 수행하고 있지 못함
- 김치타운에서 제공하고 있는 김치 체험, 전시, 교육, 생산공간 지원, 기업지원 부족 등 제반 활동에서의 한계의 요인 중의 하나는 이들 기능을 총괄하고 전담해서 하나로 묶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됨
 - 김치사업관리소는 법적 지위가 사업소이기 때문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주요한 사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의 김치를 총괄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함

□ 장기적으로 광주의 김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전략 구비가 필요

- 김치타운의 또 하나의 한계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 김치타운 자체가 당초 광주광역시의 사업이 아니라 남구의 사업이 광주광역시로 이전되었기 때문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임
- 김치의 메카 도시에 비견할 만한 김치타운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아래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 사업과 시책의 추진이 필요

제4장

김치타운 부지의 활용 방안

제1절 방안개발의 개요

제2절 부지의 활용: 김치산업진흥원 부지로 활용

제3절 연계적 공간 활용

제1절 방안개발의 개요

1. 방안개발의 프로세스

□ 김치타운의 기능 진단과 분석 고려

- 부지활용 방안은 김치타운의 정체성 확립과 광주 김치산업, 나아가 전남 및 대한민국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장기적으로 김치타운의 기능 상의 한계나 약점을 보다 큰 관점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의 개발 및 도출
- 기능 진단 결과에서 도출된 한계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단편적 일부 기능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복합적인 경우가 이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서 방안을 개발

□ 관계자 의견 청취 및 연구진 판단

- 김치타운 문제 및 부족 기능 의견 청취
 - 김치타운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광주광역시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
 - * 전문가: 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광주전남연구원, 농업기술원, 발효식품 및 김치 관련 관계자, 대학교수
- 부지활용 판단의 착안 사항
 - 광주광역시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재 및 미래의 대응 필요성 및 수요
 - 이미 구축해 놓은 김치타운의 인프라와 연계적 활용 및 시너지 효과의 창출 가능

- 법률적인 토지이용 용도지역의 허용 가능한 용도와 쓰임새
- 광주 김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 * 제시 의견에 대해 연구진 속의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선택

2. 개발한 방안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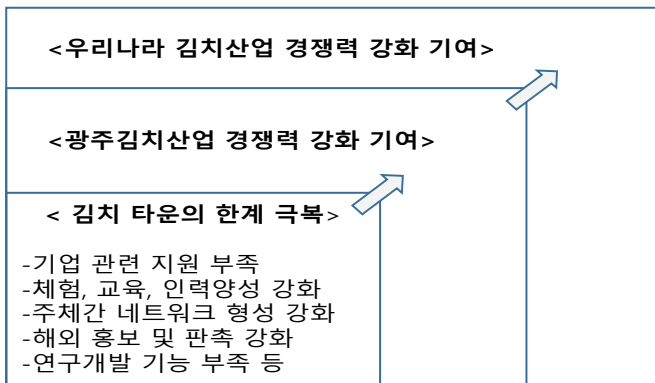
- 필요성과 목적
 - 제시하는 방안의 필요성
 - 방안의 목적과 기대효과
- 쟁점 사항의 검토
 - 제시하는 대안에 대한 논란의 요소
 - 기능의 중복, 기관 및 조직의 중복 등
- 방안의 개발, 제시
 - 방안을 실현하고 방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확보, 방안의 내용, 추진방식 등 제시
 - 필요한 경우 국내의 유사사례 제시
- 정부 시책
 - 연계하거나 활용해서 추진이 가능한 정부의 시책 및 사업 검토, 제시
- 추진 시 고려사항
 - 행정사항 등 후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기본계획, 실시계획, 타당성 조사 등
 - 관련 법률, 조례의 근거 마련 등

3. 최적 방안의 선택

□ 기준

- 부지 활용이 1차적으로는 김치타운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주 김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2차적으로는 전남뿐 아니라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림 4-1〉 부지활용 방안의 착안사항



□ 추진 가능 제시 대안

- 단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지의 용도와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용도 여부를 고려
 - 가급적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용도에 우선 순위 부여
- 진단 및 관련 인사,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단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과 복수의 용도를 수행하는 방안으로 구분
 - 단일한 용도: 토굴형 김치 저장고 조성, 전국 8道 김치생산 및 판매 공간 조성, 김치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공간 조성, 김치협동조합 등 공방 조성
 - 복수 기능 수행 용도: 김치산업진흥원 설치, 광주김치캠퍼스 조성
 - 행사 개최 공간 용도: 세계 김치박람회 개최, 남북교류협력 공간

〈표 4-1〉 제시된 부지활용 대안

구분	용도	세부 내용
단일 기능 수행	- 토굴형 김치 저장고 조성	- 현재 김치타운의 김치 저장기능 부재 문제 해소
	- 전국 8도 김치생산 및 판매 공간 조성	- 방문자가 8도 김치를 한자리에서 맛보고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설치
	- 김치기업 인큐베이팅 공간	- 김치산업의 창업을 지원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김치협동조합 등 공방 조성	- 김치협동조합이나 영세한 김치기업의 기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제공
복수 기능 수행	- 김치산업진흥원 설치	- 김치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
	- 광주김치캠퍼스 조성	- 김치타운이 김치캠퍼스로 보다 크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활용
행사 개최 공간	- 남북교류협력 공간	- 남북한 공동자산인 김치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세계김치박람회 개최	- 김치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주제, 국가별, 전국 지역별 공간 등으로 활용

□ 대안에 대한 의견 조사

- 대상: 광주 김치 관련 용역 수행 전문가, 광주전남연구원 등 김치 관련 대학 및 연구원 전문가, 김치협동조합 및 협의 등 관계자, 공무원 등
- 방법: 김치타운 육성 및 위상 강화방안, 부지 활용의 방안 등에 대해 전화, 대면 등을 통해서 의견 청취

□ 최적 방안의 선택

- 단일한 기능에 대한 판단
 - 전반적으로 복수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용도에 비해 단일 기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광주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복수 기능 수행에 비해 떨어짐

- 보다 구체적으로 토굴형 김치 저장고는 지하에 설치, 운영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광주 김치산업 육성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와 파급효과, 중요성이 다소 떨어짐
 - 전국 8道 김치생산 및 판매 기능의 경우도 전국 어디에서도 한곳에서 8道 김치를 생산, 판매하는 곳이 없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으나 광주김치산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는 다소 미약함
 - 김치기업 인큐베이팅 공간은 김치산업에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광주 김치산업 전체의 육성에 필요한 요소로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짐
 - 김치 영세업체나 창업업체, 협동조합 등을 위한 공방 공간으로의 활용도 필요성은 있으나 기능의 시급성은 다소 떨어짐
- 행사 개최 공간 활용에 대한 판단
- 남북교류협력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남북이 공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김치를 통한 문화교류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광주 김치산업의 육성과 세계화 측면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짐
 - 세계김치박람회 개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김치 문화를 세계에 전파,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김치타운과 연계해서 타 공간을 활용해도 가능한 측면에서 공간활용의 효용성이 떨어짐
- 복수 수행 기능에 대한 판단
- 연구개발 기능, 업체 지원, 홍보 마케팅, 교육, 교류협력 등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김치산업진흥원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부지의 장기적 활용 방안으로 보다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됨
 - 광주김치캠퍼스 조성은 김치타운 인근의 쇠락한 공구 단지를 비롯해서 김치타운을 둘러싼 보다 넓은 부지 활용과 비교적 광대한 면적에 걸친 발전전략으로 부지도 하나의 활용 공간에 속할 수 있지만 우선 순위와 부지 활용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최적의 방안

- 협동조합 관계자는 공방을 선호하고, 영세 업체 등은 이들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고, 김치 관련 전문가들은 김치타운의 인지도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는 등 이해 관계자에 따라 부지활용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다양함을 고려할 때 단일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복수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이들의 견해를 보다 잘 포함,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우월
- 복수의 기능은 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 ② 광주광역시 김치산업뿐 아니라 전남 및 전국의 김치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김치종주 도시 광주의 위상 강화에 기여 등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음
- ③ 아울러 이미 조성되어 있는 김치타운, 세계김치연구소, 전통발효식품 단지와 연계도 가능
- ④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안이 김치산업문화산업단지나 광주김치밸리 혹은 캠퍼스로 확장, 발전시킬 수 있는 연계, 후속적 이점도 보유하고 있음
- 이외에 광주 내외의 김치산업에 대한 기여, 중요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김치타운 2차 예정 부지를 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판단함

제2절 부지의 활용: 김치산업진흥원 부지로 활용

1. 설립의 필요성

1) 광주광역시 측면

□ 김치 종주도시 위상 강화 필요

- 광주광역시는 세계김치축제, 김장대전 개최뿐 아니라 김치명인 보유 등을 통해 광주와 우리나라 김치 자원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김치 종주도시의 소프트 인프라를 축적해오고 있음
- 문화 측면에서도 광주광역시가 김치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통문화 김치 도시의 인식과 이미지를 착실하게 쌓아오고 있음
- 축적된 김치 자산, 김치 문화 계승·발전을 통해 김치 종주도시 광주를 더욱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중핵기관의 유치 및 설립이 필요
- 중핵기관은 전남을 포함한 전국의 지역별로 다양한 김치문화 교류 확대, 유기적인 김치산업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
- 기존에 축적한 김치 관련 업체, 기관이나 협회, 원·부재료 공급의 네트워크 등에 비추어 광주광역시가 전문기관 설치의 입지적 이점 확보

□ 기존에 축적한 인프라와 연계한 광주의 김치 역량 강화

-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관련 기능과 인프라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경우보다는 집적한 경우가 이들 간의 집적과 연계를 통해 보다 빠르고 더 많은 성과를 창출
- 김치와 관련된 문화·역사·체험·교육을 제공하는 광주김치타운(2005년), 국내 유일의 김치 전문 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2010년), 전통발효식품단

지(2017), 박물관, 체험관 등 이미 조성·축적되어 있어 다른 지역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다수의 김치 인프라와 김치산업진흥원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보다 큰 광주 김치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향상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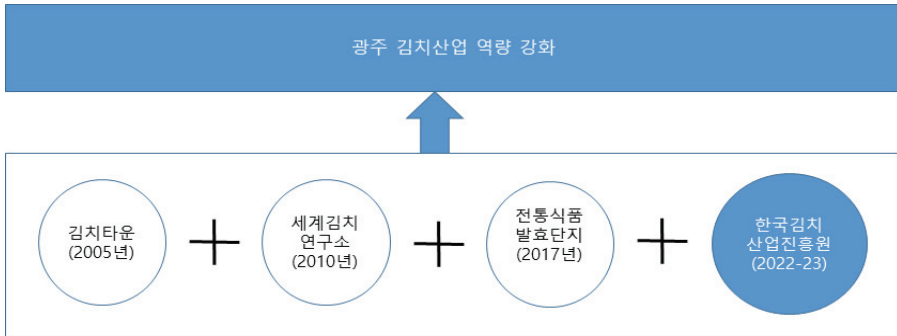
- 여기에다 광주광역시 인근 전라남도까지 범위를 확산하면 더욱 더 많은 김치 관련 인프라가 이 지역에 조성·축적되어 있음

〈표 4-2〉 광주광역시 및 전남의 既 축적 김치 인프라 현황

	명칭	내용	비고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 김치복합시설	- 박물관, 체험관, 교육관 등
	세계김치연구소	- 연구소	- 2010년 건립, 12년 이전
	전통발효식품단지	- 발효식품생산, 저장	- 2017년 건립
	광주김치박물관	- 박물관	- 김치역사, 모형 전시 등
	광주김치타운체험장	- 체험관	- 김치생산체험 제공
	남도향토음식박물관		- 김치생산체험 제공
	JS퀴진		- 김치생산체험 제공
	드레찬		- 김치생산체험 제공
	김옥심명품김치체험학습장	- 김치교육훈련기관	- 김치제조기술 교육 등
	(사)광주김치아카데미	- 김치교육훈련기관	- 김치제조기술 교육 등
	세계김치연구소	- 김치전문인력양성기관	- 김치전문인력 양성 등
	세계김치발효교육원	- 김치전문인력양성기관	- 김치전문인력 양성 등
	조선대 김치연구센터	- 연구소	- 대학 부설 김치 연구
	세계김치축제	- 축제	- 김치축제 국내외 참가
전남	돌산갯영농조합법인	- 체험관	- 돌산갯 체험 등
	산들바다애민박	- 체험관	- 김치 체험 등
	(사)전통우리음식진흥회	- 김치교육훈련기관	- 김치제조교육 제공 등
	순천대 김치연구소	- 연구소	- 돌산갯 등 남도김치연구
	해남김치마을	- 체험마을	- 김치체험 등 제공
	돌산갯김치마을	- 체험마을	- 돌산갯김치 체험등 제공
	돌산갯장터마을	- 체험마을	- 돌산갯김치 체험등 제공
	곡성 황동쌀마을	- 체험마을	- 남도김치 체험 등 제공
광양 형제의병장마을	- 체험마을	- 남도김치 체험 제공 등	

-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지는 재원투자의 효율성 관점에서도 광주 김치타운에 김치산업진흥원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기존의 시설이나 인프라 기능의 향상이 가능

〈그림 4-2〉 기존 인프라와 김치산업진흥원을 통한 역량강화



- 아울러 광주가 축적해 놓은 체험 및 관광 인프라, 연구개발 여건, 생산 및 가공 기반 등도 전문적 지원기관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입지적 요건 등은 진흥원 입지에 유리한 입지기준을 확보하고 있음

※ 참고: 전통주산업진흥원의 입지기준은 ① 연구 및 산업 인프라, ② 입지 환경, ③ 지자체의 의지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음

〈표 4-3〉 전통주산업진흥원(가칭) 입지 선정 기준

구분	내용
연구 및 산업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여건 • 산업 여건 • 원부재료 공급기반 • 체험·관광 인프라 • 식품 관련 인프라
입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여건 • 주변환경 여건
지자체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제공 실현 가능성 • 진흥원 운영 지원 가능성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용역, 2020

□ 세계김치연구소의 기능 불안정에 대한 대응 필요

- 세계김치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김치 관련 종합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설로 2020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현재 주무 기관은 과기부), 2012년 10월 31일 경기 성남에서 광주광역시로 이전하였으며
 - 2011년 「김치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서도 김치연구소를 규정

〈김치산업진흥법 제13조(세계김치연구소)〉

- ① 국가는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전시·체험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계 김치연구소(이하 “김치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연구소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계김치연구소는 매년 97억원 정도('21년 150억원)의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아¹⁰⁾ 김치 발효원리 규명, 우수 균주 개발, 김치 품질 균질화 연구 및 포장용기 개발, 저장성 향상 기술 등을 통한 김치 표준화와 과학화를 추진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세계김치연구소의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한국식품연구원과 세계김치연구소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현재 통합을 한시적으로 유예시켜 놓는 등 광주 김치산업의 역량강화 기반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세계김치연구소의 기능이 종균 개발과 자동화 등의 기술개발뿐 아니라 영세업체의 홍보 및 마케팅 및 수출지원, 이들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김치산업과 김치 농가와의 연계성 강화, 신뢰성 있는 통계 및 정책 지원 등 김치산업 전반의 발전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탓도 있다고 할 수 있음

10) 2021년 세계김치연구소의 예산은 총 181억원으로 그 가운데 83%인 150억원이 정부 출연금이며 17%인 31억원은 정부수탁 등 자체수입임(세계김치연구소 내부자료, 2021.7월)

- * 그 요인 중의 하나가 기관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류가 자연과학, 식품공학 등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뿐 아니라 김치산업 육성 전반을 포괄하는 산업, 경제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연구 기능의 경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시·도 연구원 등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역량이 산발적으로 분산되다 보니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표 4-4〉 김치 관련 연구의 분산적 추진 현황

구분	내용	비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소비자 김치소비실태조사 결과(21년) -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1년) - 고춧가루 혼합유통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16년, 농식품부 의뢰) - 김치제조업의 적정규모 추정과 채소가격 안정효과 분석(15년) - 김치원료 종합처리시스템 확산 마스터플랜수립(15년) - 김치브랜드가치평가와 CODEX 규격활용 제고방안(14년) -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13년) - 김치 CODEX 규격화 추진성과 분석(13년) 	<p>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p> <p>프리즈 홈페이지 (https://www.prism.go.kr/)</p>
세계김치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 기능성 연구: 김치미생물 기능적 특성 구명, 김치 미생물의 유용물질연구, 미생물유전자은행 및 동물실험 운영 - 신공정 발효연구: 김치원료의 수확후 관리 및 가공특성, 김치종균 대량생산 및 체험기술 개발, 김치제조공정 자동화 기술개발 등 - 문화융합연구: 김치의 문화적 가치 및 자원화 연구, 국내외 식문화 연구, 김치문화 자원 디지털화 등 - 산업기술연구: 김치응용 및 가공기술개발, 기능성 포장 및 저장기술개발, 응용제품개발 등 - 위생안전성 및 분석 연구: 유해 미생물 분석법 연구, 식품성분검사 지원, 위생안전성 확보기술개발 	<p>세계김치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wikim.re.kr)</p>
한국식품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기술연구본부: 전통식품연구단-전통식품 균주발굴, 건강기능성 물질 발굴, 생산기술 개발, 발효제어, 숙성기술 개발, 표준가공공정 개발 등 - 식품기능연구본부: 기능성소재연구단-소재발굴, 생리활성평가 등/ 천연물대사연구단-식품의 기능연구 등/ 헬스케어연구단-식품영 	<p>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fri.re.kr/)</p>

구분	내용	비고
	양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장내미생물 특성 및 식이상관성 연구 등 - 산업지원연구본부: 중소기업슬루션센터-중소기업기술 및 경영지원, 식품전문기술교육훈련, 품질인증 등/식품연구분석센터-성분검사 및분석기술지원, 품질인증제품품질평가 등/식품표준연구센터-전통식품 표준, 유통지원 등 - 기술지원센터: 시제공장-산업계수요에 필요한 식품기제집적화 기술지원, 원료가공, 시제품 등 생산지원, 현장실무교육 지원 등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원	- 배추 속 유전체 해독 통한 게놈 브라우저 개발 - 우수발효미생물 자원 확충 및 맞춤형 발효기술 개발(우수 발효종균 개발, 발효식품 실용화율 향상) - 식품영양성분 빅 데이터 구축 및 Food Adviser 개발 - 전통장류 안전생산 및 실용화기술 개발 - 발효식품 품목별 토착 종균 특성 평가와 국가자원 등록	2021년 국립농업과학원 주요업무계획 (2021.1)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 (http://www.naas.go.kr/)
기타	- 제26회 광주세계김치축제평가용역(광주대산합력단, 19년, 광주광역시 의뢰) - 김치산업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방안 연구(한남대산학협력단, 18년, 농식품부 의뢰) - 발효식품발전종합계획수립(다이어리랑(주), 19년, 경기도 여주시청) - 정선도종각김치산업육성전략연구(정앤서컨설팅(주), 16년, 정선군청)	프리즘 홈페이지 (https://www.prism.go.kr/)

□ 세계 김치도시 광주 도약의 토대 확보 시급

- 아직 외국에 내세울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 도시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김치 도시 광주의 세계적 전파, 홍보가 필요
- 광주 김치타운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타운의 유기적 연계,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의 개선이 필요
 - 대표적으로 당초의 설립목적 때문인지, 인적 구성원 때문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세계김치연구소는 연구개발의 산출물이 김치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김치의 기능성 실험연구에 치중한 측면이 많아 보임¹¹⁾

- “맛의 고장 광주”에 견주어 보아 아직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김치의 고장 광주” 전파를 위한 교두보와 거점의 구축이 필요

2) 김치산업 측면

□ 중국의 김치공정 대응 및 글로벌 김치산업의 육성

- 현재 중국, 일본 등이 우리의 김치 고유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국 및 베트남 김치의 수입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김치의 위상 약화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의 상품김치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식생활의 변화 및 다양화, 인구감소 및 인구 구조변화 등 국내 김치의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 필요
- 2010년 이후 김치 교역액 적자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2019년에는 교역액 적자의 폭이 다소 줄어 들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김치 교역액 적자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김치 무역 적자액은 25,919천 달러로 2012년 이후 거의 처음으로 적자 폭이 전년 대비 36.4% 감소하였음(농식품부, 2021)¹²⁾
 - 2019년 김치 수출량은 29,628톤으로 전년 대비 5.1% 수출액은 104,992천 달러로 전년 대비 7.7% 증가하였음
 - 2019년 수입량은 306,049톤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지만 수입액은 130,911천 달러로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음
 - * 중국의 저가 수입 김치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아울러 김치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체가 해외 김치시장에 대한 통계 및 정보 획득뿐 아니라 김치의 해외 수출 및 홍보 부족 등의 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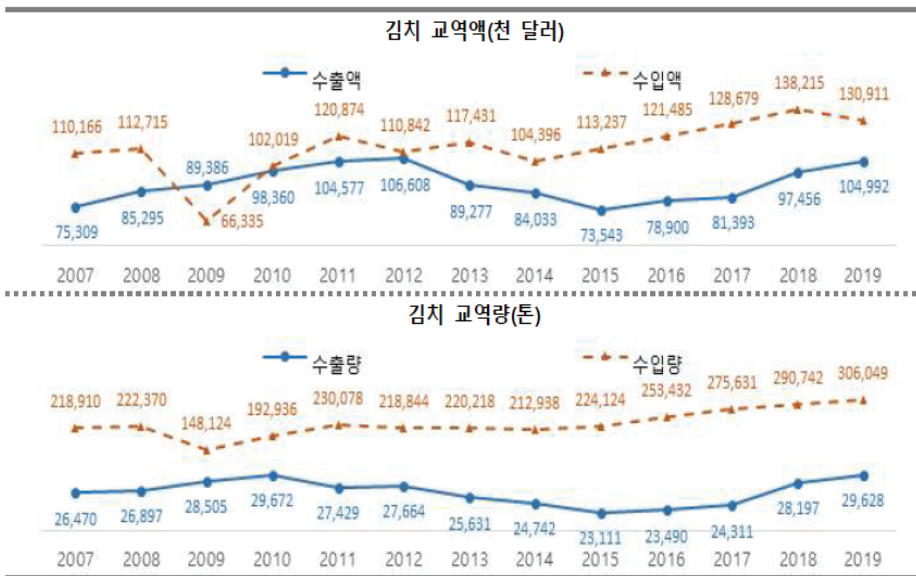
11) 최근 5년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통합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으며(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2016년 이후 21년 7월까지 기관장이 선임되지 못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음.

12) 이는 수출액 증가 및 수입액 감소에 따른 결과임.

를 겪고 있어 김치산업의 글로벌화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

- 김치 생산량이 연간 500톤 미만인 업체의 비중이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0톤 이상 업체의 비중은 전체 중 22.7%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서 상위 10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35.2%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4-3〉 김치 교역액 및 교역량 현황



출처: 농림수산물부, 2021년 발표자료

□ 김치산업 지원의 종합성, 체계성 강화 필요

- 기능연구 치증을 벗어난 김치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개발의 수행과 다수의 관련 기관(예: 농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등)이 김치와 관련된 통계·정보 생산의 중복 및 난립과 이로 인한 통계의 혼란과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고, 김치산업과 업체의 니즈에 맞춘 지원이 필요

〈표 4-5〉 김치 관련 통계 생산기관 현황

구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김치산업 실태조사(2014, 19년*, 20년 등) 김치산업 통계조사(2021) -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배추김치시장(19년)	- 김치산업진흥법 제9조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 전통식품산업 실태조사 및 김치산업 통계조사(2012년) - 김치산업실태조사(2019년)* -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배추김치시장(19년)	-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법
농촌진흥청	- 별미 김치 30선(2021년)	- 김치산업진흥법 제18조 3항, 제20조 1항
세계김치연구소	- 연도별 김치산업동향(제조업체, 가구소비, 수출입 등) - 김치산업 실태조사(2019년*) - 김치관광 자원 목록(21년)	- 과기출연기관법 *식품연구원 부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 양념채소 관측, 해외 농업관측 - 국내외 소비자 김치소비실태와 인식조사(20년)	- 정부출연기관 설립·육성법 - 양념채소관측팀, 해외농업관측팀
K-stat	- 한국 전체 및 지역별 김치 수출입 현황	- 수출입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 절임류에서 김치 포함

*김치산업실태조사의 경우 3개 기관 공통으로 조사

○ 김치산업은 원료 생산·조달부터 소비에 이르는 단계까지 다양한 산업 및 관련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김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제조 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원료생산·조달, 제조, 유통·판매, 소비의 쏠단계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과 대응이 필요

- 총괄기관의 부재로, 원료 의존도가 높은 김치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양질의 원료 공급뿐 아니라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김치 업체의 제조 및 생산의 수요 충족, 연구개발 지원, 유통 및 수출, 홍보 및 마케팅 등에 대해서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김치 체험·교육·학습, 문화 전승·전파 등의 체계적 추진이 미흡
- 그동안 다양한 부처·기관이 산발적으로 지원→전문 지원·진흥기관 필요
- 김치에 관계하는 기업뿐 아니라 김치 부재료 생산 농가, 개인, 협회, 대학, 연구원, 김치 전문가, 지자체 등을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김치 및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식, 경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주체의 설립, 운영이 긴요함
- 김치와 관련하여 분산된 역량을 집중하여 김치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김치산업 및 관련 단체, 기관을 지원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총괄지원 기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김치산업과 문화 진흥을 책임지고 기획, 홍보, 판촉, 생산지원 등 가치사슬 전반을 책임지고 기획 집행할 기구를 설립
- 2021년(9월 2일 창립이사회 개최) 한국의 섬 발전에 대한 총괄적 전담 기구인 '한국섬진흥원'을 전남 목포에 설치(9월 8일)하여 섬 발전에 대한 정책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사업추진 등을 맡긴 것도 동일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한국섬진흥원〉

- 그동안 섬 발전 및 진흥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 사업, 홍보 등 제반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의 부재 문제 발생
- '21년 '한국섬진흥원'을 설치하여 총괄적 관점에서 섬 진흥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구를 설치

- 그럼으로써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김치산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 집행하고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 진흥이 가능함

〈표 4-6〉 김치산업진흥원 설치·운영의 필요성

	구분	내용
광주광역시 측면	김치중주 도시의 위상 강화 필요	- 중핵기관을 통해 세계김치축제, 김장대전, 김치명인 등 광주에 대한 기존의 김치 인지도를 향상 및 업그레이드
	김치 문화자원의 중요성 증가	- 세계적 발효식품인 김치 자산의 현대적 가치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
	기존에 축적한 인프라의 연계 활용	- 타지역과 달리 광주가 축적해온 이점인 김치타운, 세계김치연구소, 전통발효식품단지 등과 연계해서 김치 경쟁력 강화의 시너지 효과 창출
	세계김치연구소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족	-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세계김치연구소의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기관으로서의 기능, 위상의 부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타 관련·유사 기관과의 기능적 유사성 및 차별성 부족
	세계 김치도시 광주의 도약	- 광주 김치 발전의 싱크탱크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김치도시 광주 도약을 건인
김치산업 측면	김치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	- 201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김치 무역수지 적자,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김치 소비감소에 대응
	글로벌 김치산업 육성	- 세계적인 발효식품 중의 하나인 김치의 세계화, 글로벌화 추진의 주체 역할 수행
	김치산업 자원의 종합성·체계성 강화	- 광주가 김치 원료생산, 제조, 유통·판매, 홍보의 체계적 지원뿐 아니라 연구개발, 문화·체험,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의 총괄적인 기관으로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 수행 필요

2. 기능 및 사무

1) 조례·법률·계획 상의 기능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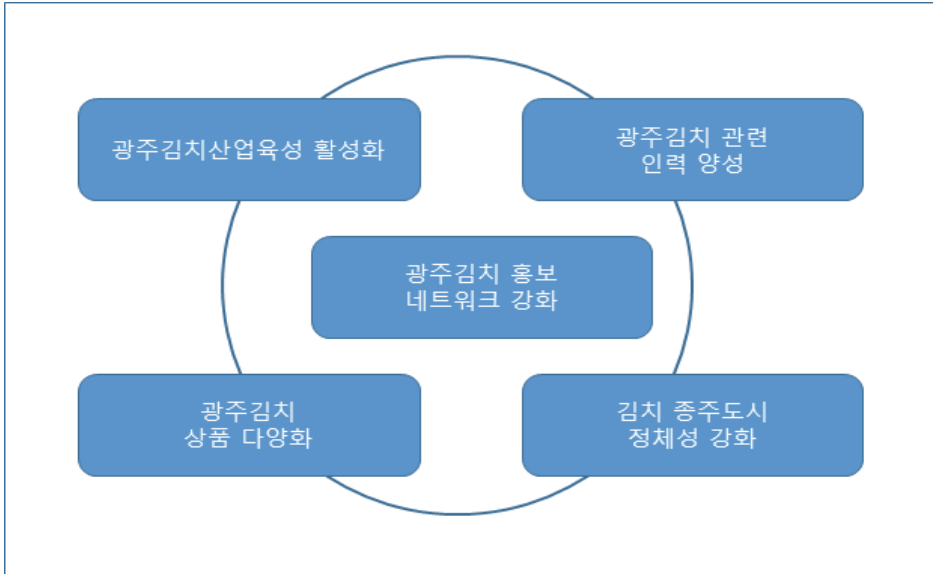
-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가 제시하고 있는 기능을 고려
- '광주광역시 김치산업 육성종합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 고려
- 「김치산업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내용을 고려
- 김치산업 현황 및 실태 등의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한 이슈
-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진단에서 나타난 한계 등

〈표 4-7〉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의 제시 기능

구분	내용
기술개발	- 기술의 개발 및 보급(조례 제5조) - 김치 제조기술 지원(조례 제6조)
통계 구축	- 광주 김치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조례 제7조)
품질 지원	- 품질 표준화 및 관리(조례 제7조), 품질인증 지원(조례 제9조)
인력 육성	- 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조례 제5조)
교육·홍보·유통 지원	- 시민, 김치 생산자에게 김치 제조기술을 전수·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 실시(조례 제17조) - 공동 브랜드 개발, 광주김치 홍보, 유통지원(조례 제5조) - 판매장 운영 지원(조례 제11조)
관광 자원화	- 광주김치의 관광 자원화 수행(조례 제5조)
김치 세계화	- 광주김치의 해외 진출 지원(조례 제5조)
김치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 농업과 연계강화 사업 추진(조례 제5조)
단체 지원	- 김치 명품화 관련 단체, 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조례 제12조), 김치 문화 계승 발전 단체 예산 지원(조례 제1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그림 4-4〉 광주 김치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제시 기능



〈표 4-8〉 김치산업진흥법 제시 기능

구분	내용
종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산업진흥 기본사항 -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김치 품질 표준화 및 품질향상 - 김치 재료의 안정적 수급 - 수입김치 실태조사 - 김치 전문인력 육성 - 김치산업과 농어업 연계 강화 - 김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 - 김치문화 계승·발전 - 김치의 세계화 홍보 (모두 제4조)
경영개선 지원	- 김치재료 확보, 시설개선, 시장개척, 김치사업자 경영개선 시책 추진(제6조)
연구개발	-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김치 품질 향상, 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에 관한 기술개발 의뢰, 제조기술 등의 산업화 촉진(제8조)
통계조사	- 김치산업 관련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 시행(제9조)

구분	내용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	- 소비자, 관련 종사자에게 제조기술 보급, 전수 교육훈련 실시,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 및 예산지원(제11조) - 제조기술과 식문화 보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관 단체의 전문인력양성 기관으로 지정 및 경비 지원(제12조)
세계김치연구소	- 김치중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전시·체험 등을 위해 설치(제13조)
유통 지원	-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예산 지원(제14조)
김치 세계화 촉진	-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17조)
김치 문화 계승 발전	- 계승 및 발전 단체나 기관의 지원, 전통김치 규격화 추진(제16조) - 계승 및 발전 단체나 기관의 예산 지원(제20조)
품질 인증	-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김치 품질 인증(제21조)
우수김치재료 사용촉진	- 김치사업자에게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김치 등 촉진, 예산지원(법제 23조, 24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표 4-9〉 광주 및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한계와 김치타운 진단을 통한 과제

구분	내용
광주 및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한계	- 김치 수지 적자와 저가 중국산 김치의 증가에 대한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 부족 - 영세 김치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부족 - 영세 김치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 결여, 홍보 판촉 능력 부족 - 김치 관련 통계 및 정보 생산의 미흡,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계생산의 결여, 통계생산기관의 난립과 결과물의 신뢰성 저하 - 김치 관련 연구개발 기관의 분산 - 김치 마케팅 홍보 관련 기관의 분산 - 김치의 제조, 생산, 판매, 유통, 해외 시장개척 등 전반에 대한 정책지원 부족 -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김치 소비감소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부족 - 일부 대기업 위주의 김치 생산 - 김치 제조와 김치 주재료 및 부재료 생산 농가와의 연계성 부족 - 김치산업에 대한 총괄적 전문기관의 결여 - 김치 교육 및 체험의 품질향상 필요
광주 김치타운 진단을 통한 도출 과제	- 김치타운의 미래상 등 정체성 불명확 - 발표식품단지의 기능 부족 - 김치 체험 및 생산과정의 견학 품질 저하 - 플라스틱 8道 김치 전시로 실효성 저하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 저장기능의 결여 - 관광 및 체험 거리의 매력 부족으로 재방문 유인 결여 - 既 투자한 인프라의 활용성 저하 - 김치타운에 대한 인지도 저하 - 광주 김치의 명품화를 위한 역할 부족 - 김치 영세업자 및 창업 지원 기능 부족 - 광주 김치 명품화를 위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 기능 결여 - 김치 생산 공간을 특정한 업체에게 임대 - 세계김치연구소의 역할 미흡 - 광주 김치 명품화를 위한 관련 주체의 네트워크 강화 필요 - 김치 명인 등을 광주 김치 명품화를 위한 활용 부족 - 김장대전과 세계김치축제와 괴리 문제 해소 필요

2) 역할 및 기능

□ 김치 연구 및 사업 관리

- 김치산업 진흥과 김치 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김치 관련 종합·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
- 김치의 재료, 김치의 생산 및 제조, 김치의 유통 및 판매, 김치 체험과 교육, 국내외 판매 및 홍보, 김치 관련 기관 및 주체의 협력 네트워크, 통계기반 구축, 연구·개발,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수요 대응을 총괄
- 광주광역시에서 김치팀, 김치연구소, 김치타운, 관련 기관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김치와 관련된 제반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역할을 수행

□ 정책지원 및 교육·훈련 거점 역할

- 김치산업 실태조사 및 제반 통계의 구축을 포함하여 산업이나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사업화, 산업화를 지원
- 김치 문화 및 제조기술을 계승, 발전하고 김치 학습과 교육, 체험을 제공하

며, 김치 기술 발전. 품질향상 및 표준화 추진 등과 관련된 김치 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

- 김치 관련 전문인력 양성뿐 아니라 국내외 판매 및 마케팅, 해외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

□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거점

- 김치타운-전통발표식품단지-세계김치연구소-광주광역시의 기능적 연계를 보다 활성화하고 강화
- 김치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협회, 전문가 및 관계자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김치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사업, 시책,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제시할 수 있는 네트워크 거점의 기능 수행
- 김치타운이 가까운 미래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김치의 연구 개발, 산업화, 유통 및 판매, 수출, 홍보 및 교육, 문화 체험 등 김치 관련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확대, 집적, 연계, 강화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

□ 제반 정보의 플랫폼

- 광주 나아가 전남뿐 아니라 전국의 김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발신의 기능 수행
- 김치 관련 통계, 정책정보,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정책 및 사업 관련 컨설팅 자료, 진단 및 평가 자료, 해외의 제반 정보, 시장정보 등을 수집·제공하여 정보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
 - 김치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DB화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정보를 발신
 - 정보를 수집해서 시각화하는 종합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
 - 우수사례, 컨설팅 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 서비스 구축

- 김치 관련 정책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 활용
- 온라인, 오프라인, 뉴스레터, 소식지 발행 등을 통해 김치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동향, 지역별(행사, 교육, 상품, 시장 등) 정보 등 제공

〈표 4-10〉 김치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구분	내용
연구 및 개발	- 종합적, 체계적 조사연구, 사업수행과 관련된 김치 종합-전문기관 - 김치 및 김치산업 육성 관련 제반 연구
정책 지원	- 김치 사업화, 제품화, 산업 활성화 정책 개발 - 기술개발, 품질 향상 및 인증
교육·훈련·체험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문화 계승·발전, 김치 체험 및 관광화 등 시행
홍보·마케팅	- 김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김치 해외 수출 지원 등
네트워크·교류협력	- 광주 내외의 주체·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 해외 교류 및 협력, 연계 강화 추진
정보 플랫폼	- 김치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수집하고 발신, 공유의 거점 역할을 수행

3) 주요 수행 사무

○ 조사·연구사업

-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자치단체 등이 의뢰하는 연구 수행
- 연구 분야는 김치 기초실태조사, 김치산업실태조사, 계획수립, 산업발전 여건 개선, 자원 활용, 문화 진흥, 물류 및 유통개선, 판매 및 마케팅, 산업구조 개선,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 자치단체가 김치 관련 연구·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타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특례를 부여
- * 조례나 관련 법률 개정예 반영 필요

- 정책지원
 - 김치산업 진흥 밑그림 기획, 사업 기획
 - 김치산업 관련 정책개발
 - 평가 체계 구축 및 개선, 김치 관련 사업 평가
 - 시책 및 사업 개발 등
- 기술지원 및 품질관리
 - 김치 자동화 등 신기술, 신공정 개발 및 지원
 - 김치 사업체의 애로 기술지원
 - 김치 종균 개발 및 보급
 - 새로운 제품 및 파생상품 개발
 - 김치 품질인증 및 품질 표준화
 - 김치 상품화 및 제품개발
- 교육·인력양성 사업
 - 김치 제조 기술 교육 및 연수 시행
 - 김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김치 관련 사업체, 기관, 소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우수사례 시찰 프로그램 운영 등
- 홍보 및 마케팅
 - 영세 업체의 김치상품 홍보 및 마케팅
 - 김치 수출지원 등
- 정보 및 교류 지원
 - 김치 관련 각종 통계 생산 및 발신
 - 김치산업 통계연보, 김치 홍보책자, 김치 가이드북 등 발간
 - 아카이브 및 온라인 포털 구축
 - 뉴스레터, 김치산업 백서 발간 등
 - 각종 기관, 주체, 협회, 소비자,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교류 활성화 지원 등

〈표 4-11〉 김치산업진흥원의 사업

구분	내용	
기반 조성	조사·연구	- 기술개발, 전략연구, 시책개선, 현황 및 실태 조사 등
	사업개발	- 김치산업 진흥 밑그림 기획, 사업 기획 등
	정보 구축	- 통계생산, 데이터 구축, 국내외 정보 수집 및 전파, 정보시스템 구축 등
진흥 사업	기술·품질	- 상품 및 제품개발, 컨설팅
	교육·훈련	- 교육, 인재 양성, 연수, 체험
	홍보·마케팅	- 홍보 및 판매 지원, 마케팅 지원, 해외 수출 지원 등
	교류·협력	- 대내외 교류 협력, 대학-연구소-협회-조합 등 관련기관 네트워크

3. 설립 및 운영 형태

1) 대안의 검토

□ 설립 주체·방식

- 김치산업진흥원을 광주 김치타운에 설립·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흥원을 누가 설립하는지, 즉 설립 주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법적 지위를 포함해서 설립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원론적으로 김치산업진흥원은 설립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부문이 설립하는 방안과 민간부문이 설립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민간부문이 설립하는 방안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가 설립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설치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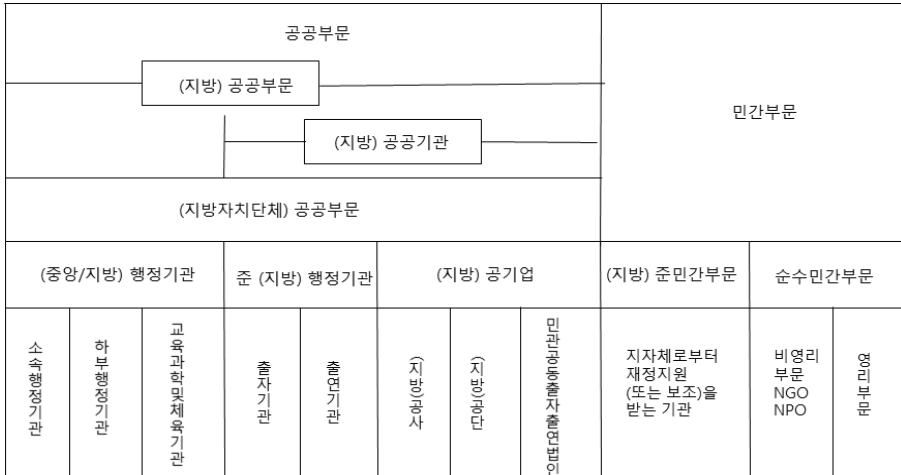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가·지자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의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1부터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에서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 국가가 설립하는 방안에는 중앙행정기관(예, 중앙부처 등), 준정부기관인 출자·출연기관, 공기업(공사, 공단, 민관 공동 출자출연법인)이 존재하고 있음
 -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기업 을 제외한 준정부기관인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출연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방안에는 지방자치단체(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교육 및 체육기관), 준지방정부기관(출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관공동출자출연법인)이 있음
 - 그러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고려 및 검토 가능한 대안은 준지방정부기관인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출연기관이 보다 현실성이 높음
- 그 외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는 정부기관 및 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대표적 사례로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섬진흥원, 농촌진흥청 산하의 국립원예특작원 사과연구소, 배 연구소, 국토연구원 산하의 건축공간환경 연구소¹⁴⁾, 한국식품연구원 산하의 세계김치연구소 등이 해당되고 있음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정책결정에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에서 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4) '21년에 독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었음

〈그림 4-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분류체계



출처: 행정안전부, 2014 수정

〈표 4-12〉 고려 및 검토 가능한 설립·운영 대안

주체	형태	근거	사례
중앙 정부	정부 출연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기타 개별법률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소속 23개 기관 - 과기연 소속 20개 연구기관 - 사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한국섬진흥원 등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 기관 부설기관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소속기관 및 하부조직의 형태) - 정관	- 정부출연기관 부설 연구소 형태로 설립된 대표적 사례: 건축공간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 국가기관 부설연구소 형태 사례는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사과연구소
지방 자치 단체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등	-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등

*건축공간연구원은 국토연구원 부설로 존재하다 21년 독립적인 출연기관으로 설립 형태 및 법적 지위가 변경되었음

□ 설립 주체·방식별 특성 검토

① 정부출연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정부출연기관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과기출연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받음
- 정부출연기관법 및 과기출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경제·인문·사회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함(각 법의 제2조)
- '21년 9월 현재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은 24개이며, 과기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21개임
 - 20년에 비해 정부출연기관 1개(건축공간연구원), 과기출연법에 의한 기관이 1개(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로 각각 증가하였음

〈표 4-13〉 정부출연기관법(제8조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 한국개발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 한국환경연구원
4. 통일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 국토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 한국법제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8. 산업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4. 건축공간연구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4-14〉 과기출연법(제8조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 삭제(2011.12.31.)	21. 한국재료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 외 개별법에 의해 정부가 출연하는 기관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함

- 가장 대표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도서개발촉진법」을 20년 개정하여 정부출연기관의 설립 근거를 만들고, 21년 9월 2일 설립한 한국섬진흥원을 들 수 있음. 그밖에 농식품부가 주무 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식품산업진흥법」제12조의2), 한식진흥원(「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2) 등이 있음
- 한국섬진흥원은 「도서개발촉진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주무기관이며 설립 시까지 행안부가 상당한 역할(설립위원회 운영, 기관의 정관 마련, 입지 선정 등)을 수행¹⁵⁾
- 이외 김치 유관 기관으로는 「식품산업진흥법」(제12조의2)에 의해 설립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있으며, 08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출범하였으나 ‘20년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였음

15) 한국섬진흥원은 정부출연기관 설립 절차를 밟은 후 최종적으로 입지를 전남 목포로 설정해서 10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음

〈표 4-15〉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근거: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 목적: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관리, 참여기업·기관 활동 지원
- 기능: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 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 지원
 -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촉진
 - 클러스터 활성화 연구
 - 대외 협력 및 홍보사업
 - 그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정부가 출연하는 새로운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는 정부출연기관법이나 과기출연법의 개정이 필요함
 - 정부출연기관법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함
 - 과기출연법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함
- 새로운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또 하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운영법)과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유관 기관과의 역할 및 기능의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기관 설립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함
- 공공기관운영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사대상 및 방법
 - 공공기관운영법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1항에 의거 주무기관의 장16)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16)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고자 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주무기관”이라 함(공공기관운영법 제6조2항)

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함

-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심사검토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관 신설에 대한 검토 심사기준〉

-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재화
-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
- 향후 5년간의 조직·인력 운영계획
- 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 이때 정부재정 필요성 여부를 핵심으로 하는 타당성 조사의 내용에는 통상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박진경·김현호 외, 2019)
- ① 사업 필요성 및 효과(사업수요의 보편성 및 공공기능 부합성, 재화서비스 수요의 충분성, 지속성, 경제적 타당성, 기관설립시기의 적절성 등)
 - ② 수행주체의 적정성(민간에 의한 공급가능성, 지방정부사업으로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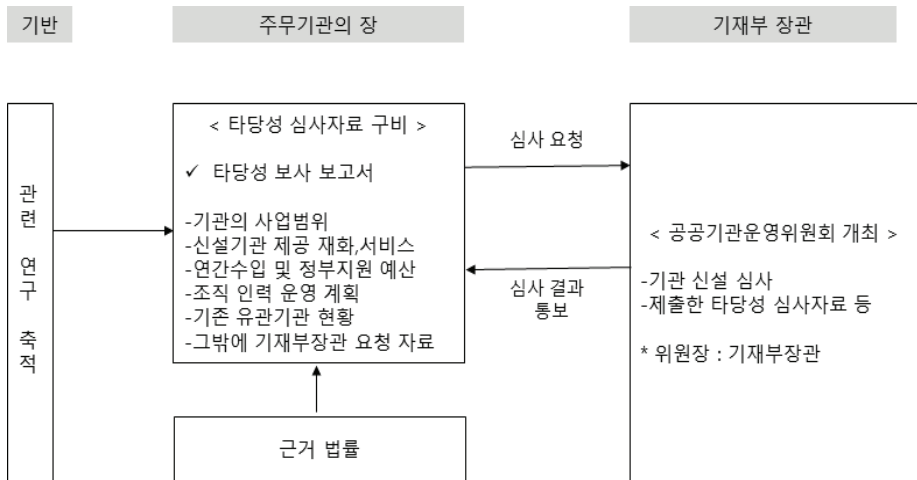
성격여부, 중앙정부 기존 조직·인력 활용가능성, 기존 공공기관의 활용가능성 등)

- ③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향후 5년간 자체수입 등 연간수입 책정의 적정성, 향후 5년간 인건비·운영비 등 비용추계의 적정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재정지원 형태의 적정성 등)

※ 타당성 조사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KDI¹⁷⁾

○ 결국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의 추진이 필요함

〈그림 4-6〉 정부출연기관 설립 시 기관 신설 프로세스



○ 아울러 이렇게 설립·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형태의 장단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17)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는 KDI,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국고보조 300억 이상 500억 이하인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타당성 조사를 수행(「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

〈표 4-16〉 정부출연연구기관 형태의 장점과 단점

구분	장점	단점
설립·운영	- 독자적 운영체계 확보 용이 - 운영 연속성, 안정성 확보 - 기관 위상 유지 용이	- 근거법 개·제정 필요 - 설립 장기화 가능성 존재 - 기존 유관 조직 반대
연구수행	- 연구 지속성 확보 - 연구성과 공공성 확보	- 기존 연구 중복성 소지 - 기존 연구시설·장비 활용 애로
재정	- 안정적 예산 확보 수월 - 신규사업 재원확보 용이	- 예산 지원 부담 - 초기 비교적 많은 재정 지출

출처: 김인철 외 2020 수정

② 정부기관·정부출연기관의 부설기관

- 첫째, 정부출연기관 부설로 설립, 유치될 경우는 토대가 되는 기관의 정관에 설치의 근거를 두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에 해당됨
 - 이 경우 설립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 승인을 득해야 함
 - 정관에 부설기관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아울러 개별법에 설치와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할 수도 있음
 - 가령,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세계김치연구소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정관뿐 아니라, 「김치산업진흥법」제13조(세계김치연구소)에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김치산업진흥법 제13조(세계김치연구소)〉

- ① 국가는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전시·체험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계 김치연구소(이하 “김치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연구소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이 경우의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토연구원 부설 기존의 건축도시공간연구

소(2007년 03년 국토연구원 정관 개정)로 설립되었다가 2020년 11월 정부출연기관으로 법적 지위가 바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있는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뿌리기술연구소 등 전국에 105개의 지역조직¹⁸⁾이 있음

- 세계김치연구소: 2010.03. 세계김치연구소 개소(한국식품연구원 내), 2010.01.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설립(지식경제부 소관), 2009.12.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승인(산업기술연구회¹⁹⁾ 제132회 정기이사회), 2009.07. 연구기관 육성 의결(국무회의)
- 이들 기관 설립의 장점은 필요한 장비를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부설기관으로 설립의 필요성, 차별성 확보의 애로임

- 둘째, 국가기관의 부설 연구소로 설립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이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부설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과연구소, 감귤연구소, 배 연구소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들 기관이 부설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대통령령²⁰⁾으로 근거를 둘 수 있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설치)〉

-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8) 디지털타임스(<http://www.dt.co.kr/>), 2021년 9월 24일자 012면 참조

19) 현재의 과기출연법 규정상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전신임

20) 대통령령에 의하면 소속기관을 둘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은 국립과천과학관(과기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안부 소속), 국립종자원(농식품부 소속), 국립정신건강원·국립재활원(복지부 소속), 항공교통본부(국토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해수부 소속), 국립원예특작과학원(농식품부 소속), 경인지방통계청(통계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부 소속) 등 19개임

- 장점은 설치의 용이성은 있으나 설치 필요성, 사무의 차별성, 재원 확보 등을 설득하는데 애로가 있음

③ 지방자치단체 설치 기관

- 이는 출자, 출연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함
 -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자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음(법 제4조)
- 이때 해당 사업은 ①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②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임
-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 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데, 설립을 위해서는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조사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법 제5조)²¹⁾
 - 설립 타당성 조사는 법7조 3항,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함

〈행안부 장관 지정·고시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 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②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평가원
- ③ 「과학기술기본법」제20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타당성 조사의 검토 항목: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21) 신규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정해제 또는 변경 지정도 동일

- 아울러 심의 절차를 득한 후,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시도가 출자·출연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설립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검토 결과를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서를 제출해야 함(법 제7조 2, 시행령 제8조)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서 내용〉

- 사업의 범위와 내용,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자본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계획,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계획,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의 현황, 지역주민의 등의 의견

-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지자체의 조례에는 설립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법 제4조의 3)

○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북농식품유통진흥원, 남해마늘연구소, 홍천 메티칼허브연구소, 순창 장류연구소, (재)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등으로 상당히 많음

〈사례〉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설립 근거: 산업통산자원부령(설립당시, 지식경제부) ‘산업통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설립 사업비: 국비 99억, 도비 16.5억원, 군비 16.5억원
- 연혁: 2010년 (재)순창군발효미생물관리센터설립 및 운영조례, 2011 지식경제부 법인승인 개소, 2012년 지자체 출연 승인, 2014년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 개편
- 운영 방법: 순창군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수익사업을 통한 자립운영(수익금 약 83억원, 2019년 기준; 영업수익 3억원, 국고 및 시도보조사업비 67억원 등 80억원)
- 조직: 8개 팀에 35명(행정지원팀 4명, 전략기획팀 2명, 기업지원팀 3명, 유통마케팅팀 6명, 발효산업화팀 8명, 지역식품팀 4명, 미생물융합팀 4명, 기능성평가팀 4명)
- * 2020년 3월에 비해 21년 9월 현재 6명의 인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업무: 일반지원사업,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기반구축, 바이오플랫폼구축, 한국형글로벌장 건강프로젝트,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

출처: (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mifi.kr>). 검색일 2021.9.4

- 그 외 지자체 등이 출연·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이 있음
 - 지자체 출연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 21년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의 광역시 9개, 경기, 강원, 전북 등 광역도 9개 총 17개 시·도 출연연구기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음
- 통상적으로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은 지자체가 공동 출자하는 방식(국가, 지자체 등)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가 용이하고, 산학연 등 다양한 니즈(needs)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음
 - 반면 김치산업의 발전처럼 국가 전체적인 이슈와 수요에 대한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고 지역의 소소한 이해관계가 휘둘러서 기관의 위상과 인지도가 떨어져 지역기관이 되는 단점을 보유

〈표 4-1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형태의 장점과 단점

구분	장점	단점
설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요에 대응한 자율적 기관 운영 용이 - 산학연 니즈의 신속한 반영 - 지역 사업체 애로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관의 위상 한계 - 설립의 용이성 확보 - 지역 정치역학 제약의 가능성 보유 - 지역 인재 중심의 기관 운영 소지
사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단기 수요 신속 대응 - 고객과의 밀착성 확보 - 지역내 기관간의 의사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중심 사무 편중, 전국 수요 대응 부족 - 연구 품질 및 위상의 저하 - 다 분야 사무 대응 부족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재정 지출 용이 - 재원확보 수월 - 신규사업 재원확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재원 확보 애로 - 부지 및 예산 제공 등 비교적 막대한 초기 지자체 재원 지원 불가피

출처: 김인철 외 2020 수정

□ 종합 및 시사점

○ 종합

- 기관의 설립은 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있지만, 민간은 공공부문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 주체가 되는 방안의 절차와 요건, 기관의 특성, 장단점, 사례 등을 검토해 보았음
- 검토는 주로 설립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가 되는 유형 가운데 광주광역시 설립할 수 있는 다음의 세 가지 방안에 초점을 두었음
-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설립 및 운영, 사무 수행, 예산 및 재정 등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어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들의 장단점과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세계김치연구소의 기능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때 동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타당성 조사의 검토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경제적 타당성 존재 여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표 4-18〉 광주광역시 고려 가능 설립 형태별 기관의 장단점

기관	설립형태	장점	단점	비고
정부출연기관	개별법, 공공기관운영법,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과기출연법 등에 의해 설립	- 중장기적 관점의 연구, 사업추진 가능 - 독자적 운영, 운영 연속성, 안정성 확보 - 기관의 인식 및 위상 강화 - 연구, 사무 성과의 공공성 확보	- 근거법 개정 필요에 따른 개정의 애로 - 설립 장기화 가능성 존재 - 기존 유관 조직 반대 소지 - 정부예산지원 부담, 예산확보 애로	- 경사연 소속 24개 기관 - 과기연 소속 22개 기관 - 기타법률 근거 한 국심진흥원 등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부설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출연기관정관에 의한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형태	-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 근거 가능 - 기존 보유 장비 시설 활용 - 설치절차가 비교적 간단 - 정부기관의 행정적 제약 소지	- 설치의 필요성, 사무의 차별성, 재원 확보 설득의 애로 - 독자적 운영체계 확보 애로 - 공무원 인력 활용 가능	- 국가기관 부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사과연구소 등 - 출연기관 부설: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기관	설립형태	장점	단점	비고
지방자치 단체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출 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등에 의해 설립	- 사업수요에 대응한 자율적 기관 운영 용이 - 지역 니즈 및 고객 과 긴밀한 의사소통 - 신규 및 기관 예산 확보 수월	- 연구, 사무 성과의 지역적 제한과 전 국 확산 애로 - 지역중심 기관 운영 - 국가재원 확보 애로	- 서울, 부산 등 17 개 시·도 연구원 - 순창 (재)발효미생 물산업진흥원, 전 남 바이오산업진흥 원 등

○ 시사점

- 앞서 언급한 각 기관 설립 형태의 장단점과 한계, 극복해야 할 사항 등은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이것이 기관 설립과 유치 형태를 결정하는 독립변수는 아님
- 광주광역시 관점에서는 이들 요소를 고려함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김치산업진흥원의 부지 활용에 가장 적합한 기관의 설립 및 유치 형태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광주김치타운에 기관을 어떤 형태로 설립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사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와 연계된 문제이기도 함
- 아울러 후술하게 될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기간 설립·유치 방식과 형태 결정의 시사점 〉

- 수행하고자 하는 사무기능과 특성을 고려
- 사무기능 범위, 즉 수행 사무가 지역적 수요에 한정되는지, 전국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지의 여부
- 유치,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과 유사 및 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존재 여부
- 기관 설립 운영과 관련한 인프라의 존재와 그 정도
- 기관의 유치, 입지에 유리한 제반 요소의 구비 여부
- 광주광역시는 특히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세계김치연구소와의 연계 및 위치 설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2) 쟁점의 검토

□ 검토 배경

- 현재 김치산업과 문화 진흥을 책임지고 기획, 홍보, 판촉, 생산지원 등 가치 사슬 전반을 책임지고 기획 집행할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김치산업진흥원 설립이 필요
- 특히, 총괄적인 관점에서 김치 종주도시 광주 및 한국 김치산업의 경쟁력과 문화 전파와 관련된 제반 사업 전체를 관장하는 기구를 광주광역시 진흥원을 김치타운에 유치, 설립
- 여러 곳에 흩어져서 김치산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 및 지원 기능을 총괄적으로 추진, 집행하여 광주 나아가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 김치문화의 진흥에 기여가 가능

□ 검토 쟁점

① 쟁점의 구분

- 문제는 현재 과기정부출연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설로 세계김치연구소가 광주김치타운에 이미 설립·운영 중에 있는 점임²²⁾
- 이런 상황에서 쟁점은 광주김치타운에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하는 것이 다음의 측면에서 기관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합당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첫째, 입지적 타당성의 문제로 광주김치타운이 진흥원의 입지로 과연 타당한지?
 - 둘째, 기능 중복의 문제로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산업진흥원이 기능적으로 중복되지 않는지?

22) 김치산업진흥법 제13조도 세계김치연구소의 설립,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셋째, 기관 목표 달성 문제로 광주김치타운에 입지하면 기관 설립 취지와 목표에 부합되게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② 입지 타당성 여부의 문제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원론적으로 기관의 최적 입지(location)는 해당 기관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곳에 입지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상반된 관점이 있음
- 하나는 균형적 관점을 중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시너지 창출효과를 중시하는 것인데, 전자는 우리나라처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153개)을 혁신도시에 고루 분산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며, 후자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처럼 기능의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임
-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지원기관, 특히 김치산업의 발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의 입지는 전국에 고루 분산시키는 균형의 관점보다는 관련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는 곳에 설립하는 것이 기관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보다 유리
- 특히 우리처럼 「김치산업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들이 현재 농식품부, 식약처 산하의 여러 부서와 기관들에 산재(散在)되어 있어서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더욱 그러함
- 그러다 보니 능력이나 전문성 발휘, 산업의 수요 대응이 미흡할 뿐 아니라 사업 추진이나 지원도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김성훈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0)
- 따라서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능이나 사업들을 이미 부지 등이 마련되어 있는 광주에 모아 기능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총괄적으로 관리·운영·지원·추진도 가능하여 입지의 타당성과 우월성을 보유하고 있음

〈지속적인 김치 인프라 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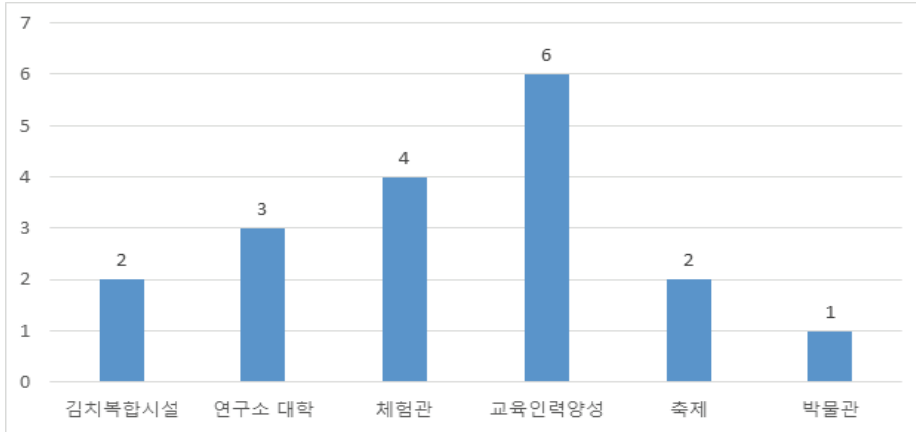
- 진흥원의 설립, 입지에 토대가 되는 김치 관련 문화·역사·체험·교육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광주김치타운(2005년), 국내 유일의 김치 전문 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2010년), 김치 등 전통발효식품을 생산, 저장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전통발효식품단지(2017), 박물관, 체험관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 축적
- 설립 및 입지의 문화적 기반이자 강점이 되는 광주세계김치축제, 김장대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김치 명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김치 전문가 보유 등 김치 문화 자산(cultural assets)을 보유, 축적해오고 있음
 - 광주는 여기에 더해 김치를 포함한 맛의 고장으로 ‘광주 5미’(떡갈비, 한정식, 김치, 오리탕, 무등산 보리밥)의 문화자산도 보유하고 있음
 - 이외에도 광주 김치는 천일염, 젓갈을 포함한 우수한 김치 부재료 자산도 보유하고 있음

“광주김치는 광주·전남의 천혜의 황토밭에서 생산 재배된 배추, 무, 고추의 우수한 원재료와 서남해안의 멸치, 새우등 우수한 젓갈류, 세계적으로 우수한 서해안 천일염을 사용해 정성껏 버무려져 감칠맛이 뛰어나다”

대한민국 김치명인 1호 김옥심 인터뷰광주일등뉴스(<http://www.igi.co.kr>)

- 광주광역시에는 김치와 관련된 교육·인력양성 기관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6개가 있으며, 김치 체험관 5개, 연구소 및 대학의 김치 관련 학과 3곳, 김치 복합시설 2개, 박물관 1개를 보유하는 등 입지 이점을 보유
- 범위를 전남까지 넓히면 돌산갓김치마을 등의 체험마을 5곳을 포함해서 순천대 김치연구소, 체험관 2곳, 교육훈련기관 1곳을 보유하고 있음

〈그림 4-7〉 광주광역시의 김치 입지의 자산 현황



〈표 4-19〉 광주광역시 김치 축적자산의 세부 현황

구분	내용	비고
김치타운	- 김치복합시설	- 박물관, 체험관, 교육관 등
세계김치연구소	- 연구소	- 2010년 건립, 12년 이전
전통발효식품단지	- 발효식품생산, 저장	- 2017년 건립
광주김치박물관	- 박물관	- 김치역사, 모형 전시 등
광주김치타운체험장	- 체험관	- 김치생산체험 제공
남도향토음식박물관		- 김치생산체험 제공
JS퀴진		- 김치생산체험 제공
뜨레찬		- 김치생산체험 제공
김옥심명품김치체험학습장	- 김치교육훈련기관	- 김치제조기술 교육 등
(사)광주김치아카데미	- 김치교육훈련기관	- 김치제조기술 교육 등
세계김치연구소	- 김치전문인력양성기관	- 김치전문인력 양성 등
세계김치발효교육원	- 김치전문인력양성기관	- 김치전문인력 양성 등
조선대 김치연구센터	- 연구소	- 대학 부설 김치 연구
세계김치축제	- 축제	- 김치축제 국내외 참가
김장대전	- 축제	- 김장문화 세계전파
전남과학대	- 호텔조리김치발효학과	- 후속세대 양성

〈입지 타당성 검토〉

- 광주광역시 김치타운은 입지적 관점에서 김치 관련 총괄기관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이 가능한 관련 기관의 물적 자산이 축적되어 있으며 기관 발전과 역량 발휘의 토대가 되는 김치 문화 자산도 풍부하여 입지적 관점에서 매우 유리함
- 광주 김치타운에 진흥원을 설립하면, 다른 지역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다수의 김치 인프라와 김치산업진흥원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보다 큰 광주의 김치산업 경쟁력과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임

③ 기능의 중복성 문제

〈예비적 검토〉

- 연구기관과 진흥기관은 설립목적에 따라 전자는 연구가 핵심 사무인 반면, 후자는 사업 진흥이 핵심 사무에 해당되고, 기관의 장단점 차이

〈표 4-20〉 연구기관과 진흥기관의 비교

구분	연구기관	진흥기관
역할	- 연구 목적, 주무부처 정책개발 연구	- 주무부처 사업수행, 민간 참여 사업 추진
형태	- 대부분 기타공공기관	- 대부분 위탁집행 준정부기관 형태
규모	- 예산 인력이 진흥기관에 비해 적음	- 예산 인력이 연구기관에 비해 많음
기능	- 조사·연구·분석, 교육·연수, 정보구축	- 조사연구·자료수집 분석, 교육·연수, 진흥사업 지원, 컨설팅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실태조사 DB 구축, 시설운영
장점	- 심도있는 연구, 연구성과를 신뢰, 초기단계 적은 인력 운영 가능	- 종합적, 체계적 사업 추진 가능, 큰 예산 규모로 현장밀착적 지원 가능, 연구와 사업 연계 추진 가능
단점	- 민간참여 사업수행 제약, 현장 밀착적 사업 지원 미진, 주무부처 대행사업 추진 시 사업 지속성 애로	- 연구 경우 현장 적용을 저하 가능, 다양한 사업수행 위해 많은 인력 필요, 다수 연구인력 보유 애로, 연구기관과 같은 연구인력 총원 위해 별도 부설 연구소 설립

출처: 국토연구원, 2021, 수정

- 광주김치타운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세계김치연구소는 국내 김치산업을 식품산업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

〈표 4-21〉 세계김치연구소의 기능과 수행 사무

구분	내용
설립 목적	- 김치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국내김치산업을 식품산업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기여
설립 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김치산업진흥법 제13조 - 한국식품연구원 정관 제31조의 2
주요 기능	<p>〈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의 원료, 제조과정, 미생물 및 발효, 저장·유통·포장, 위생·안전성 등 고품질 상품김치 생산기술 개발 - 김치산업(김치제조업 및 연관산업)의 발전을 위한 융합·혁신기술 연구개발 - 김치의 수출 촉진, 해외 현지화를 위한 전략 개발, 마케팅 지원 및 홍보 - 김치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중소기업 지원 - 김치문화 창진을 위한 정보, 통계, 학술 및 문화자원의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구축·운영 - 김치 우수성의 과학적 구명 연구 -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 위 각호의 부대사업 및 시험평가 등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사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 기능성 연구: 김치미생물 기능적 특성 구명, 김치 미생물의 유용물질연구, 미생물 유전자은행 및 동물실험 운영 - 신공정 발효연구: 김치원료의 수확후 관리 및 가공특성, 김치종균대량생산 및 체험기술 개발, 김치제조공정 자동화 기술개발 등 - 문화융합연구: 김치의 문화적 가치 및 자원화 연구, 국내외 식품화 연구, 김치문화 자원 디지털화 등 - 산업기술연구: 김치응용 및 가공기술개발, 기능성 포장 및 저장기술개발, 응용제품개발 등 - 위생안전성 및 분석 연구: 유해 미생물 분석법 연구, 식품성분검사 지원, 위생안전성 확보기술개발

출처: 세계김치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wikim.re.kr/>)

- 제시하고 있는 기능은 연구개발 포함해서 김치산업 전반에 걸쳐 있으나, 기관의 사무분장에 비추어 보면 미생물의 기능성, 종균개발 보급, 위생안전성 분석, 신공정 개발 및 보급 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됨
 - 아울러 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세부 목표’가 연구 부분과 경영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 부문은 김치기능성 구명, 김치 품질향상 선도기술개발, 김치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제시되어 있는데, 김치 기능성 구명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임

〈그림 4-8〉 세계김치연구소 세부 목표

연구부문	경영부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김치 기능성 구명 2. 김치 품질 향상 선도 기술 개발 3. 김치산업 생태계 활성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무중심형 연구환경 조성 2. 효율적 기관운영 3. 성과관리 활용·확산

출처 : 세계김치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wikim.re.kr/>)

- 광주광역시에 설립, 운영하려고 하는 김치산업진흥원은 김치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김치산업 발전과 김치 문화 계승·발전에 관계된 ‘연구’와 ‘진흥’이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 김치산업육성법이 규정하는 사무 수행을 위주로 김치 및 김치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 플랫폼 구축, 통계조사 등 기반구축에 관한 사무와 사업기획, 기술 및 품질개발, 미생물 및 종균 개발, 기업 및 산업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교육·훈련,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4-22〉 김치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수행 사무

구분	내용
설립 목적	- 광주 나아가 전국 김치 관련 활동을 지원, 수행하여 광주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김치 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
설립 근거	- 김치산업진흥법 제13조 및 개별법 등 설립형태에 따라 결정
주요 기능	<p>〈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 김치 및 김치재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 수입김치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 김치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김치품평회, 김치자조금, 김치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개발에 관한 사항 <p>〈사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 기술개발, 산업발전전략연구, 시책 개선, 현황 및 실태 조사 등 - 정보플랫폼 구축: 통계 및 데이터 생산, 정보시스템 구축, 국내외 정보 수집 및 전파 - 사업기획: 김치산업 진흥 밑그림 기획, 사업 기획 등 - 기술·품질 개발: 종균 및 미생물 개발, 상품화 및 제품개발, 컨설팅 - 교육·훈련·연수: 김치교육, 김치인재양성, 연수, 체험 - 홍보·마케팅: 기업체 김치 홍보 및 판매 지원, 마케팅 지원, 영세 업체의 해외 수출 지원, 김치 백서 발간 - 교류·협력: 대내외 교류협력, 대학-연구소-협회-조합 등 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 강화

〈기능 중복성 검토〉

- 기존의 세계김치연구소와 부지를 활용하여 설립·운영할 김치산업진흥원 사이에는 우선, 전자는 연구기관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진흥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양 기관이 제시하고 있거나 표방하고자 하는 목표는 대동 소이하게 허브 기관, 총괄 컨트롤타워 및 전담 기관으로 비슷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사무도 상당 부분 비슷해서 전적으로 상호 배제적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음
 - 특히, 세계김치연구소는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김치 교육 및 체험 제공, 김치 관련 평가, 품질인증 등 김치 관련 사업 일부를 추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진흥원의 사업과 다소 중복되기도 함
 - 하지만 기관이 표방·제시하고 있는 김치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라는 사업의 영역과 달리 인적 구성원이 식품공학, 영양학 등 전공자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는 김치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
 - 여기에 더해 세계김치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설연구소 형태로 설립되어 농식품부 및 김치 산업계 등의 니즈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존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 이런 탓에 상당기간 동안 세계김치연구소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 세계김치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원과의 통폐합 논의가 지속되었고 현재도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는 상황임²³⁾
- 그동안 세계김치연구소의 기능적 한계의 극복, 표방하고는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는 김치산업이나 사업체를 밀착적으로 지원하는 진흥 기능, 체계적이지 못한 김치문화 계승·발전 기능 등은 양 기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의 대안에 따라 연계적으로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음
 - 물론 세계김치연구소가 표방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나 산업, 문화 측면에서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한다면 기

23) 근자에 들어 그동안 공석으로 비어있던 원장이 선임되었으며 재원지원도 재개되었지만, 향후 6년의 연구기간 동안 2차례 점검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어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함(중앙일보, 21.7.23일자)

- 관 간의 기능의 중복성이 적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임
- 하지만 세계김치연구소의 본질적 법인격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김치산업이나 사업체를 설립하려는 김치산업진흥원처럼 밀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수행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임

〈표 4-23〉 기능의 유사성·중복성 검토

구분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산업진흥원
기관성격	- 연구기관	- 진흥기관
위상	- 김치 허브기관	- 김치 총괄전담기관, 컨트롤타워
기능	- 연구기능 중심	- 진흥기능 중심
사무(표방)	- 김치 관련 제반 기능 수행	- 김치 관련 제반 기능 수행
사무(실제)	- 종균, 자동화, 미생물 개발 등 실험연구 중심	- 종합적 사무 수행 *중장기적으로는 김치문화산업단지 및 김치밸리육성의 컨트롤 타워
사무(한계)	-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설형태로 설립되어 농식품부 및 김치 산업계 등의 니즈 대응 부족	- 향후 부처 정책 및 산업계 밀착적 지원 가능

3) 설립 방안

○ 방향

-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존에 광주광역시와 투자, 축적한 김치타운의 제반 인프라 기능과 연계 강화
- 기존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세계김치연구소와의 기능적 연계, 시설적 연계를 극대화하여 김치산업진흥원 뿐 아니라 광주김치타운의 획기적 역량 강화 및 업그레이드

○ 고려사항

- 현재 그동안 통합이 논의되어왔던 세계김치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원의 통합이 6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보된 상황임
- 2020년 11월 19일 우리나라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전문·집행부서 부재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

는 관점에서 김치산업진흥원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되어 있음

- '21년 4월 농식품부가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있음

○ 설립의 대안

- 1안 : 독립·연계적 설립
 - 세계김치연구소에 더해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
 - 이 경우 세계김치연구소 설립취지나 정관에서 표방하는 바의 기능에 의하면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산업진흥원 간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산업진흥원의 기능 조성을 통한 양 기관의 사무를 기관의 성격에 보다 합당하게 적정하게 분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 경우의 장점은 세계김치연구소가 축적해 놓은 기능과 인프라를 양자의 기관이 연계적으로 상호 활용하여 기관 모두의 역량이 강화되고 보다 큰 시너지 효과의 창출이 가능함
 - 이 방안은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산업진흥원이 상호 연계·협력하는 방안으로 광주의 김치산업뿐 아니라 전남, 나아가 국가 전체의 김치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결과의 도출을 기대할 수 있음
- 2안 : 통합적 설립
 -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산업진흥원을 통합, 확대해서 하나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 기능의 유사 중복성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점, 특정한 지역에 2개의 기관이 설치된다는 특혜 논란의 시비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단일의 기관에서 통합적인 김치산업 지원과 사업 추진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 단점으로는 조직의 관성 때문에 통합설립에 대해서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세계김치연구소의 동의를 획득하기가 어려운 점, 과기출연법의 개정이 필요한 점, 세계김치연구소 감독기관의 변화가 필요한 점 등은 어려운 점에 해당됨

- 최적의 방안

- 김치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존의 세계김치연구소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서 김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것이 광주광역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임
- 김치산업의 영세성에 따른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 증가, 중국의 김치공정 등에 대한 “김치주권” 확보 등에 비추어 보아서 총괄적이고 결집된 역량의 신속한 확대가 긴급하고 시급하기 때문
- 양 기간을 통합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은데, 우선 김치산업진흥원은 농식품부 소관의 법률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반면, 세계김치연구소는 과기부 소속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통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상호 연계적으로 설립하는 경우, 기관 미션 수행과 목표로 하는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연구 인프라의 활용 가능, 필요 장비 및 설비의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절감 등이 가능함²⁴⁾

〈표 4-24〉 한국김치산업진흥원 설치 대안 비교

구분	장점	단점	비고
1안 독립·연계적 설치	- 광주광역시 입장에서 김치타운에 2개 기관 유치 -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산업진흥 원 시너지 효과 창출 - 김치 관련 인프라 구축의 비 용 절감 가능 - 세계김치연구소 既 구축 인프라 활용으로 진흥원 조기 안착 및 성과 창출	- 세계김치연구소와 기능 유사 중복성 문제 해소 - 광주광역시 특혜 논란 시비 소지 - 광주광역시 설립에 대한 타지 역의 동의 확보	2안에 비해서 우월 (최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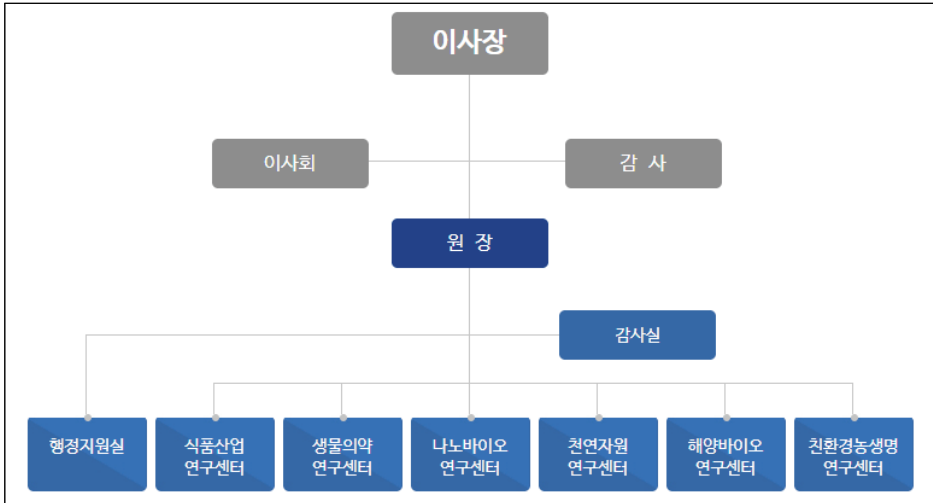
24) 물론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해야 함

구분	장점	단점	비고
2안 통합적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기관의 기능의 유사·중복성 문제 해소 - 단일 기관이 통합적 관점에서 김치산업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의 수행 - 거버넌스의 단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김치연구소의 동의 확보 어려움 - 세계김치연구소 청산 불가능 - 과기출연법 개정, 김치산업진흥법 개정 등 거버넌스 통합 	통합 반대 예상

○ 최적 방안의 보완

- 법적 지위 측면에서는 「김치산업진흥법」이 규정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위 기능을 수행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
- 그 이유는 중국의 김치공정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김치 문화의 계승, 발전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
- 광주 외의 다른 지역이 광주처럼 다양한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축적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어 입지는 광주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광주는 중장기적으로는 광주광역시에 “김치산업진흥원”(본원)을 두고 지역에 하부기관을 설치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도 기존의 인지도, 인프라 등의 연계적 활용이 가능
- 지역의 하부기관 설치는 1차적으로 전남, 2차적으로 전국 확산 등의 단계적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김치산업진흥원의 지향이 결국은 지역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기준 하의 지역에 대해 전국에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임
- 전남을 포함해서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전국의 김치와 관련하여 원·부재료 등 김치자원을 축적, 보유하고 있는 곳에 “지역김치센터”(본원의 위치)를 설치
 - * 대표적 사례: 전남바이오진흥원

〈그림 4-9〉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조직도



출처: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홈페이지

4. 설립의 규모

1) 조직 및 인력

□ 기존 진흥기관 현황 검토

- 통상 기관의 조직 구성은 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과 사무에 연동
- 진흥기관은 진흥사업의 수행이 중심이지만 대부분 연구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서 연구 기관에 비해 사업수행의 범위가 넓고 다양함
- 우선 몇 개 현재 다른 주요 진흥기관의 수행기능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주로 연구와 진흥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25〉 진흥기관의 주요 사무

구분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임업 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 디자인문화 진흥원	비고
조사·정책연구	○	-	○	-	연구 사업
자료수집·동향분석	○	-	○	-	
종합정보시스템운영	○	○	○	○	
통계·실태조사(DB구축)	○	○	○	○	
주무부처정책사업(위탁)	○	○	○	○	진흥 사업
컨설팅 사업	○	○	○	○	
교육·연수사업	-	○	○	○	
네트워크	○	○	○	○	
시설운영	-	○	○	○	

○ 기관의 조직과 인력 구성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기관의 미션과 목표에 비추어 중점을 두는 기능과 사무에 따라 조직의 구성과 인력의 구성을 달리하기도 함

〈표 4-26〉 진흥기관의 기능별 인력

구분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경영관리	67	43	92	15
조사·연구	27	-	24	-
동향분석				
정보·통계·DB	8	5	39	11
위탁사업	250	106	264	30
교육·연수	-	21	22	-
컨설팅 사업	-	19	15	-
네트워크	10	13	14	6
시설운영	-	9	19	23
계	362	233	489	85

□ 환경 및 여건

- 조직과 인력 구성은 환경변화와 여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통계조사뿐 아니라 제반 사업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사업 추진

〈표 4-27〉 환경 및 여건분석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적으로 중국의 김치공정 대응 • 세계의 김치전쟁 대응 필요 • 발효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증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김치에 대한 수출 증가 • 영세 김치 업체의 지원 요구 증가 • 김치업계 기술지원 강화 요구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젊은층 중심의 김치 수요 감소 • 안전한 김치에 대한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김치 문화의 전승계승 발전 필요 • 김치의 정체성 강화 요청 • 전통 김치문화의 계승, 발전 요구 증가

□ 조직설계 및 인력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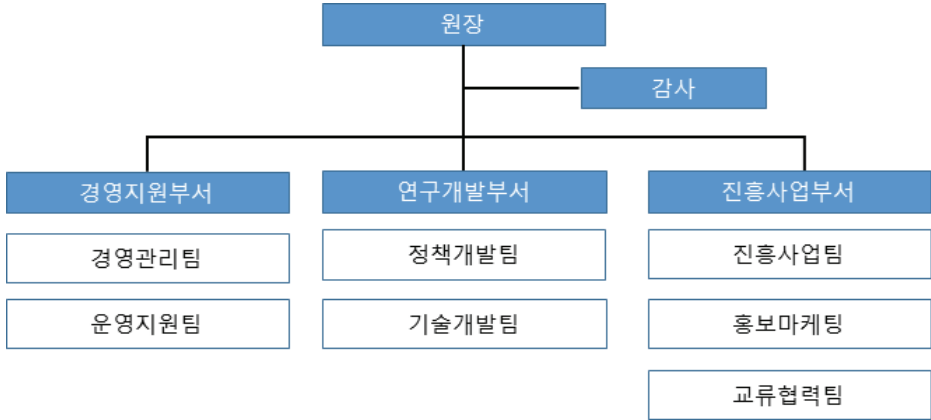
- 조직설계는 핵심 기능에 무게를 둔 조직으로 구성하되, 기능의 추가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조직의 확대가 가능하게 유연하게 접근하고 설계
 - 초기에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으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기본모형은 경영·행정부서(기획, 총무, 재무, 인사), 조사·연구부서(연구, 조사, 발간), 진흥·사업부서(주무 부서 위탁사무, 기업지원, 컨설팅, 교육·연수,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기능으로 구성

〈표 4-28〉 조직의 설계

구분	내용					
경영·행정	기획		총무	인사		재무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책개발	기술개발	통계구축	정보플랫폼	동향분석
진흥·사업	기업지원	컨설팅	교육연수	홍보	마케팅	교류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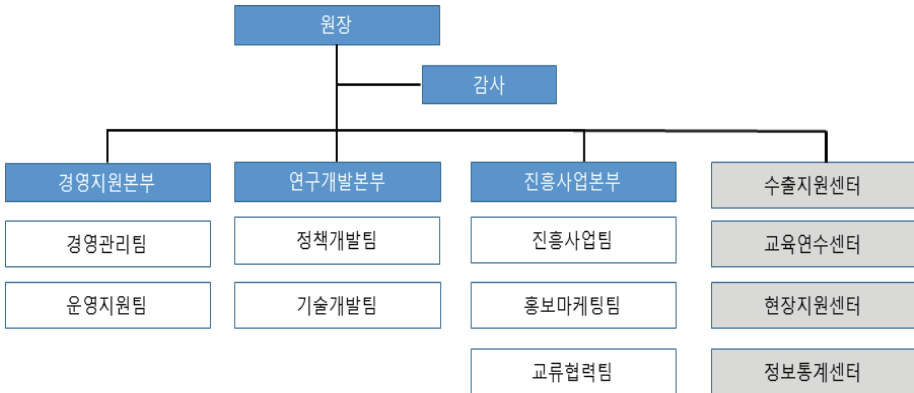
- 중기적으로 김치산업 전문기관의 특성을 부각시키면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3단계 접근이 바람직함
 - 1단계(2023~2024년) : 핵심 기능 위주로 3개 부서 체계로 운영

〈그림 4-10〉 1단계 조직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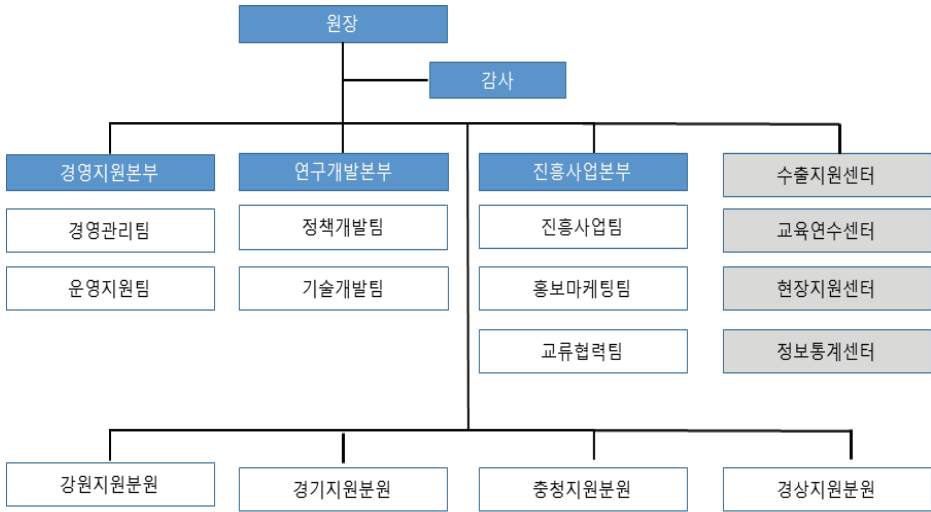
- 2단계(2025~2026년) : 핵심 기능 3개 본부에 수출지원센터 등 4개 센터를 추가해서 운영

〈그림 4-11〉 2단계 조직설계



- 3단계(2026년 이후) : 핵심 기능 3개 본부, 4센터에 전국 주요 지역에 분원을 추가해서 운영

〈그림 4-12〉 3단계 조직설계



○ 인력의 구성

- 인력의 규모는 설계한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한 방향에서 구성될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관리 상 기능 간의 균형을 최대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
- 기존의 문제점인 현장 밀착적인 지원, 영세 김치 업체의 다양한 사업의 지원, 김치산업 정책의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측면을 감안
- 동시에 선행 진흥원의 인력 운용 등도 참고하여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력의 구성

〈표 4-29〉 기능별 인력 구성

구분	기능유형	인력구성	비고(진흥기관 사례)
경영지원	지원	10%	10-20%
연구개발	목적	30%	20-30%
진흥사업	목적	60%	60-70%

2) 예산 및 재원

□ 기본방향

- 기본적으로 기관의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식은 기관의 설립 형태 및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짐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출연금 등 외에 자체 수입이 예산의 수입으로 책정이 가능

□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을 설립할 경우 기재부의 심사를 받고 이때 중요한 심사 내용 중의 하나가 재원 지원에 관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심사를 통과하면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임
- 이 경우 정부 출연금과 자체 수입이 주요한 재원조달의 수단임 됨
- 자체 수입에는 용역과제의 형태로 연구개발 과제 수행 수입, 기업체 지원 수입, 특허 등에 관련된 수입 등임
- 컨설팅과 기업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분담금 형태의 수입도 창출이 가능

□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의 경우

- 앞서 언급했듯이 국회 의견 및 관련 부처에 의한 정부 합의 형성의 지연, 법 개정의 지연 등으로 김치산업진흥원 설치의 근거 마련이 늦어질 경우에 해당됨
- 이때는 국가기관 지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광주광역시가 출연하는 기관으로 김치산업진흥원을 우선 설치
- 이 경우 재원의 조달은 광주광역시의 출연금과 자체 수입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제3절 연계적 공간 활용

1. 활용의 개요

□ 목적

- 김치산업진흥원이 설립되는 공간 및 부지에 김치산업진흥원과 기능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보유하고 있어 김치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공간이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설립되는 김치산업진흥원의 역할 및 기능 수행뿐 아니라 이른 시간 내에 기관의 위상 정립 및 강화, 인지도 향상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
- 아울러 김치산업진흥원이 설립되어 대한민국 김치의 메카로서 김치타운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개발

□ 접근

- 기능적 측면 : 김치산업진흥원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광주 김치타운의 현재의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
 - 김치 저장고처럼 김치산업진흥원의 기능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김치 벨리 조성처럼 별도의 기능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할 내용도 포함
- 시간적 측면 : 김치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광주김치타운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 제시
 - 가급적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법을 검토하기 보다는 전략 및 시책의 제시 측면에서 내용을 한정
- 공간적 측면 : 김치산업 2차 부지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김치타운의 장기적

발전에 필요한 공간 활용도 제시

- 김치타운 부지와 그 외 부지의 이원화된 접근

2.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부지 연계

1) 김치 저온 저장시설

□ 필요성

- 김치의 숙성, 저장 등을 통해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나 김치 보관, 전시, 체험, 김치 교육 등 제반 활동과 연계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토대로서 김치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운영이 중요함
- 그러나 현재 김치타운은 토굴형 김치 저장 용도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
- 참고로 순창장류특구의 경우 장류 상품화를 위해 토굴형 저장고를 설치 운영하여 장류 발전의 인프라가 되고 있음

〈그림 4-13〉 순창군 발효 저장고



자료: 순창군 홈페이지

□ 내용

- 김치의 전시, 판매, 생산을 고려한 저장시설 설치
 -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이 이상적인 모형으로 판단
 -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때부터 김치의 저장시설을 개발, 발전시켜 왔음
- 기능 및 용도
 - 광주시 및 전남의 협동조합이나 김치 제조 및 유통 업체가 생산하는 김치의 저장, 숙성
 -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치타운에서 생산하는 8道 김치를 저장하여 전시, 판매, 견학, 체험과 연계
 - 기능성 김치의 생산 및 김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생산, 개발하는 김치의 저장 및 숙성
 - 김치 생산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
 - 김치타운 김치 유통, 판매 등 수익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

□ 방안

- 저장시설의 공간은 김치산업진흥원과 동일 건물에 설치하는 방안과 별도의 건물에 설치하는 방안이 있으나 상당한 규모의 김치를 저장해야 할 공간의 필요성 때문에 별도의 건물로 설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광주 및 전남의 협동조합이나 김치 제조 및 유통 업체가 생산하는 김치의 저장, 숙성

2) 김치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시설 기능

□ 필요성

- 김치는 공정의 특성상 절이기, 양념 만들기, 양념 속 버무리기, 용기에 담기 등 비교적 많은 공정의 단계에서 수(手)작업을 필요로 함

- 아울러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종균, 미생물, 발효기술을 개발하는 등 신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 특히,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 대상 등 일부 대기업체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이를 실증, 시험하기 위한 시설이 부족함
- 아울러 이뿐 아니라 김치 공정의 자동화 등 정작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나 시설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실증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bed)의 기능을 가진 공간이 부재
- 따라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기계 등을 실증할 뿐 아니라 혁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지원이나 기술지원이 기업성장을 위해 필요함
- 이것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고서는 한단계 높은 김치 상품화가 거의 불가능하며 김치산업진흥원에 반드시 구비가 필요한 기능이라고 판단됨

〈사례〉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테스트베드
- 서울의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
- 경기 판교의 '인공지능(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실증 지원사업'
- 대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사업 등

□ 내용

- 김치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테스트베드 시설의 설치, 지원이 가능한 공간을 설립
- 테스트베드의 혁신기술과 아이디어, 제안 등의 실증 방식과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 첫째, 김치산업진흥원이 자체적으로 개발, 발굴한 김치제조 및 산업과 관련한 신기술, 신공정, 신제품이나 세계김치연구소가 개발한 이들을 시험 제작,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포함한 상용화 등을 실증

- 둘째,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공정개발 등은 보유하고 있지만 자원 등의 여건으로 인해 이를 실현시킬 수 없는 영세 김치업체 등의 의뢰에 따라 실증을 시행
- 실증의 유형도 연구개발형과 기회보급형으로 구분해서 접근

〈표 4-30〉 실증 테스트베드 유형의 구분

구분	R&D형	기회보급형
혁신기술 출처	- 김치산업진흥원, 세계김치연구소	- 영세 김치업체 - 개인 및 기관
사유	- 연구개발 테스트 시제품, 신공정, 실증 필요	- 시제품 제작 등 실증 여력 부족을 지원

〈표 4-31〉 사례: 싱가포르 전기차 테스트베드

참여업체	테스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 -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 -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HDB) -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IDA) -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MEWR) -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 - 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 -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SCDF) - SPRING Singapo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모색 - 충전과 전기차 주행거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관심사항 분석 - 전기자동차 전지(배터리) 시스템의 실효성 (robustness)점검 - 싱가포르의 도로상황에서 전기자동차의 성능 발휘여부 점

- 실증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적용
 - 예시 기준 :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시급성, 파급성 등
- 실증과 함께 김치품질지원센터, 인증센터 등도 동시에 건립
- 김치산업진흥원은 혁신기술을 테스트베드를 통해 실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용화 및 확산, 초기시장 진입과 정부 인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제공

□ 방안

- 테스트베드 공간의 설계를 위해서는 기업체 및 관련 기관, 개인 등에 대한 수요 조사가 선행
- 수요조사를 토대로 어떤 기술,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연동해서 테스트베드 공간 규모를 결정

2) 8道 김치 생산·판매 시설

□ 필요성

- 전통 김치 및 산업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해서 전국의 김치에 대한 홍보, 계승, 발전이 대단히 중요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8道 김치를 모아서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상황임
- 심지어 김치의 메카를 표방하는 광주광역시에서조차도 김치타운 박물관에 플라스틱 모형으로 8道 김치를 전시해 놓은 상황
- 그러다 보니 8道の 김치의 맛과 제조방법에 대한 방문객은 물론이고 시민이나 도민, 국민의 수요와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함
- 따라서 김치타운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8道 김치를 생산하여 김치 종주도시의 위상을 제고

〈그림 4-14〉 전국 8도 김치



□ 내용

○ 8道 김치생산 공간 조성

- 방문객의 호기심 충족, 김치 전통문화 계승, 재현을 위해 8道 김치 생산 공간 조성
- 8道 김치별 생산 파트 설치
- 전문가 초빙하여 8道 김치 재현 및 생산



○ 기능 및 용도

- 8道 김치를 김치타운의 핵심 매력 중의 하나로 활용
- 8道 김치담기 체험, 시식, 판매
- 방문객,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력적이고 이색적인 김치를 판매
- 장기적으로 8道の 파생 김치 생산 및 상품화 도모
- 사라져 가는 8道 김치 데이터 구축

□ **설치방안**

- 공간의 규모는 생산과 체험, 판매가 가능한 규모로 확대
- 김치 복원, 품질향상 등에는 김치산업진흥원과 세계김치연구소 협력
- 초기는 시범적인 생산공간 조성 및 운영, 안정화 후에는 공간 확대 고려

3. 김치타운 장기 비전 연계

1) 연관기업 집적화 단지 조성

□ **필요성**

- 김치업체는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해서 경영 애로는 물론이고, 기술개발, 유통, 수출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
- 김치 상품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김치협동조합, 김치 파생상품의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관련 사업체가 집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김치타운, 세계김치연구소, 전통식품발효단지, 김치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광주김치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성 증가
- 장기적으로는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버금가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연관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

□ **내용**

- 1차적으로는 김치유통시설 및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김치 관련 기능의 집적화 설계
- 유통 집적화 단지를 설립하여 광주 김치타운이 우리나라 김치 유통의 중심지로 도약
- 2차적으로는 김치와 관련된 모든 기관의 집적을 도모

- 김치박물관 추가 확장, 우리나라 김치 협회 이전, 김치 협동조합 입주 지원, 대한민국 김치 명인 등의 공간 조성
-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
- 세계 김치 관련 발효식품 전시관 조성
- 김치 창업보육을 위한 김치 인큐베이팅 지원 시설 설치 및 관련 전문가 배치로 법률, 재무 등 기업설립 제반을 지원

□ 방안

- 이를 위한 부지의 마련과 활용은 공구 단지 등을 검토하되, 공구 단지 재생과 연계해서 접근
- 공구 단지는 토지이용 용도상으로 연관기업 집적화를 위한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임

2) 김치문화산업단지 조성

□ 필요성

- 인지도가 높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광주김치타운의 미래의 지향과 정체성 확립
- 장기적으로는 김치타운을 넘어 우리나라 김치문화를 대표하는 한국 김치문화산업단지로 도약
 - 연구개발-산업화-유통-수출-홍보-교육-체험 등 우리나라 김치를 총괄하는 문화가 집적된 장소로 성장,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대표적 사례 〉

무주의 한국 태권도 공원이 우리나라 태권도 문화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 매년 국내외로부터 수많은 방문객을 유치

- 광주 김치타운이 김치에 관한 모든 것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김치산업 성장의 산실이자 문화의 터전으로 승격
- 김치에 관한 모든 것이 존재하고 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중주도시 광주의 위상 강화

□ 전략

- 김치에 관한 관광, 체험, 연구, 사업, 숙박, 관련사업 육성, 창업지원, 전국의 김치와 관련된 전후방 연계의 핵심지역으로 육성
- 문화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장기적 플랜 마련
 - 단계별 추진시책, 추진체계, 자원 조달 방안
 - 문화산업단지, 문화특구, 김치클러스터 등의 육성 방향 설정이 필요한데 산업단지, 특구, 클러스터 등의 성격이 다르고 적용의 법률, 정부 지원의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

〈표 4-32〉 육성방향별 관련 법률 및 지원

구분	내용	비고
문화산업단지	-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업의 지원-산업부, 부지 관련-국토부	- 문화 비중 부여 여부
문화특구	- 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식경제부 소관	- 특구의 규제완화 등
김치클러스터	- 클러스터 육성 관련 법률 - 산자부 소관	- 클러스터 육성 관련 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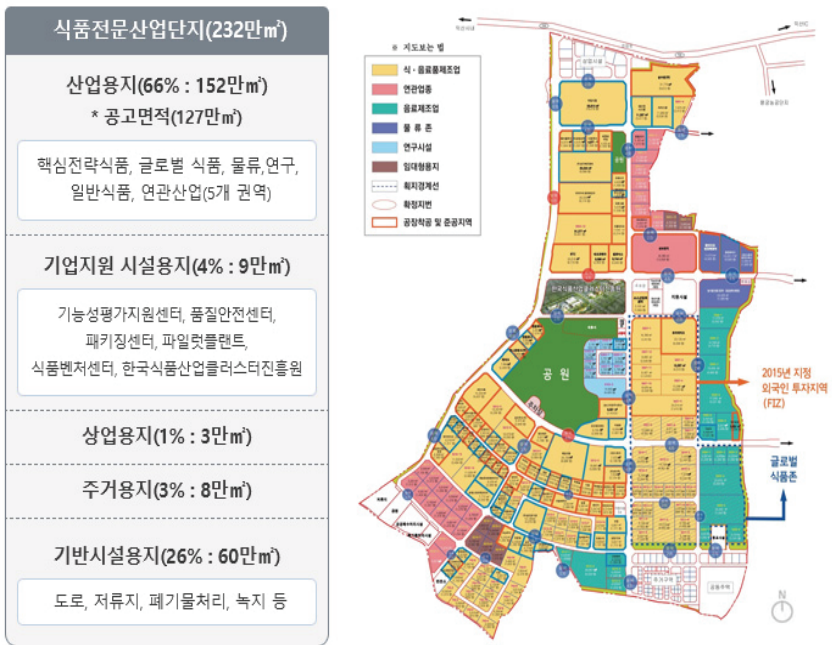
- 김치타운 부지의 단계적 확장
 - 1단계: 매입 부지
 - 2단계: 김치타운 맞은편 공원 부지
 - 3단계: 쇠락해서 기능이 결여된 공구단지 일원

○ 부지의 기능 배분

- 매입 부지 : 김치산업진흥원 관련 Complex Zone
- 김치타운 맞은편 부지 : 테스트베드 및 유통물류 관련 기업 Zone
- 공구단지 : 기업지원시설 및 연관기업 집적 Zone

〈그림 4-15〉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제5장

후속적 추진사항

- 제1절 유관 연구의 축적
- 제2절 타당성 조사 시행
- 제3절 조례 등 기반 정비

제1절

유관 연구의 축적

□ 필요성

- 김치타운 2차 부지의 김치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서는 광주광역시는 물론이고 나아가 전국의 인식도 제고와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
- 김치산업진흥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면 광주광역시만의 지역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
- 연구축적을 통해 김치산업진흥원이 국가기관으로 설립될 경우 이를 두고 벌어지는 지역 간 입지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임

□ 축적 내용

- 2차 부지 활용에 대한 본 연구가 토대가 되어 다음과 같은 후속 및 연계연구가 추진되어야 함
-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기초연구, 기본 연구, 정책연구 등 필요
 - * 과제의 수행은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광주전남연구원이나 광주광역시와 무관해서 객관적 관점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
- 김치산업진흥원과 관련된 관련 연구의 축적은 입지 선정에서 지자체의 의지 및 인프라 축적에 유리한 요소
 - * 기관 설립을 위한 입지 평가에 있어서 지자체의 의지 및 인프라 축적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
- 참고로 행안부가 주무 기관이 되어 21년 10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식품진흥원의 경우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다양한 관련 연구를 수행,

축적한 바 있음

* 일본의 ‘이도(離島)센터’에 대한 연구를 위시해서 7여년 간에 걸쳐 관련 연구를 시행

〈 한국섬진흥원 관련 연구 축적〉

- 섬지역활성화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행(2013년)
- 섬발전연구진흥원 기초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행(2018)
-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행(2019)
-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등 연구, 국토연구원 수행(2020)

제2절 타당성 조사 시행

-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경우, 기관에 대한 재원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 심의가 필요
- 기관 설치의 필요성, 재원 지원의 필요성, 성과창출의 가능성 등을 심사한 후 기재부 장관이 주무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 만약 광주광역시 출연하는 기관으로 설립할 경우는 행안부에 설립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함
- 따라서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 활성화하려면 연구축적 및 호의적인 여론 형성을 토대로 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표 5-1〉 타당성 조사 대상 및 시행기관

구분	대상	비고
기재부 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	- 법적 지위가 정부출연기관으로 기관이 설립되는 경우 *타당성 조사 기관: KDI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안부 설립 타당성 검토	- 법적 지위가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설립 되는 경우 *타당성 검토 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 광주광역시는 기초계획 수립 등 관련 연구가 축적되고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이 가시화되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연구를 추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조례 등 기반 정비

- 상위의 법률 규정에 부합되게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기관 설치 및 운영의 토
대인 조례의 정비가 필요
- 농식품부가 주무 기관이 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김치산업진흥원을 설치할
경우, 「김치산업진흥법」의 규정을 개정해서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및 예산지원
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참고로 현재 주철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
황은 제도기반 형성에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동시에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에도 김치산업진
흥원을 설립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

-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관련 자료
 광주광역시(2018), 김치산업 및 김치타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세계김치연구소(2021), 2019 김치산업 실태조사
 농식품부(2020), (가칭)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 및 마스터플랜연구,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용역과제
 이제연·임태경(2018), 섬 발전연구진흥원 기초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김현호·이제연·임태경(2019),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한국지
 방행정연구원 ISSUE PAPER.
 발효미생물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세계김치연구소(2018), 2018년도 김치산업동향
 세계김치연구소 내부자료
 세계김치연구소 홈페이지
 순창군 홈페이지
 순창미생물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순창장류(주) 홈페이지
 임실군 홈페이지
 임실치즈&식품연구소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지역뉴딜을 선도하는 12개 우수 지역특구 선정(2020.
 10. 21)
 김치산업진흥법, 김치산업진흥법 시행령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의원 발의(2020. 11. 19)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국내 농산물 수요확대를 위한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 세계자전거 대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행정자치부 연구용역

박진경·김선기(2013), 섬지역활성화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김현호·이제연·임태경(2019),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한국지
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20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행

행정안전부(2020),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타당성 등 연구, 국토연구원 용역수행

Saaty, T. L. (2008). Relative measurement and its generalization in decision making why pairwise comparisons are central in mathematics for the measurement of intangible factors the analytic hierarchy/network process. *RACSAM-Revista de la Real Academia de Ciencias Exactas, Fisicas y Naturales. Serie A. Matematicas*, 102(2), 251-318.

부록 1: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51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김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3.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김치산업진흥 기반조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른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19.>

1.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김치 및 김치재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 4의2. 수입김치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김치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8.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9.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사전 심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김치의 대표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품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6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치재료 확보, 시설개선, 시장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김치사업자가 김치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제8조(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문연구기관 등에 김치의 품질향상·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9조(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20. 5. 19.>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10조(연구·시험사업 등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용 작물의 품종개발과 김치의 품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시험사업, 전통김치의 복원, 김치재료 생산 농어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1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⑥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제13조(세계 김치연구소) ① 국가는 김치중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전시·체험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계 김치연구소(이하 “김치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연구소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김치의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촉진하며 대표상품을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김치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의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6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전통김치의 복원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전통김치 규격화의 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를 준용한다.

제17조(세계화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국가 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치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김치사업자는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등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김치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 김치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사이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5.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치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단체는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김치의 날) ①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김치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21조(품질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

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김치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2조(김치의 품질향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5. 19.>

1.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 개발
2. 김치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조사
- 2의2. 유통되는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에 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김치의 품질관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4조(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2. 6. 1., 2013. 3. 23., 2019. 8. 27., 2020. 3. 24.>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3. 삭제 <2012. 6. 1.>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한국김치 등의 표시) 김치와 그 용기·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한국(韓國) 또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들어가는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4장 보칙

제25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나 김치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8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김치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2. 21.]

부칙 <제17270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72호, 2021. 2. 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김치산업)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김치를 생산·가공·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생산·가공·제조 또는 조리된 김치를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5조에 따른 김치의 품평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김치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김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치산업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이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5조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대표상품으로 선정된 김치를 제조하는 김치사업자

2. 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김치사업자
 3. 그 밖에 경영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김치사업자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김치 제조에 필요한 재료 확보
 2. 김치 제조 및 보관 시설 개선
 3. 김치의 판로개척 및 홍보
 4. 경영개선에 대한 전문적 상담
 5. 그 밖에 김치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의 적정성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의 적정성
 3.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합성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20.>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4. 20.>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김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치산업 관련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김치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김치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7. 법 제18조에 따라 김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삭제 <2021. 1. 5.>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4. 2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20.>

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 4. 20.>

⑥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0.>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김치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이 김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김치의 홍보·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2. 전통김치의 규격화
3. 전통김치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4. 전통김치의 포장·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상품화
5. 그 밖에 전통김치의 복원·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김치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관리사업
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김치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김치의 품질향상이나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4. 김치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 간의 유통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
 5. 김치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이 생산하는 김치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②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만 해당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연간 보조금의 지급한도는 그 구성원이 생산한 김치의 연간 생산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 생산액의 산정기준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전년도 김치사업체의 생산액을 적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3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2013. 5. 31., 2014. 11. 28., 2021. 2. 19. >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인증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3.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식품
4.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김치재료(이하 “우수 김치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 김치를 생산하는 자
2. 제1호에 따라 생산된 김치를 판매하는 자
3. 제1호에 따라 생산된 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우수 김치재료의 구입사업
2. 우수 김치재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김치의 홍보·판매촉진 사업
3. 우수 김치재료를 이용하는 김치생산시설의 개선 사업
4. 그 밖에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20.>

1.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관리
2.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청문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삭제 <2013. 3. 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김치의 국제규격화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김치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조사

부칙 <제31472호, 2021. 2. 19.>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록 3: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9., 2020. 2.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0. 1. 25., 2011. 3. 9., 2011. 7. 21., 2012. 6. 1., 2015. 6. 22., 2018. 12. 31., 2020. 2. 18., 2020. 12. 8.>

1. “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 2의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 2의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 2의4.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7. “우수식품등인증”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1. 7. 21., 2020. 2. 11., 2020. 2. 18.>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18. 12. 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3. 9., 2011. 7. 21., 2018. 12. 31., 2020. 2. 18.>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3의2.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 3의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향상·수급·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8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12. 31.>
-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 [제목개정 2018. 12. 31.]

-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 25., 2012. 6. 1., 2013. 3. 23., 2015. 6. 22., 2015. 8. 11., 2018. 12. 31., 2020. 2. 18.>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표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 5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7.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의 진흥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③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④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 2020. 2. 18.>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산업진흥 및 농업의 연계강화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3. 9., 2020. 2. 18.>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18. 12. 31., 2020. 2. 18.>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18. 12. 31., 2020. 2. 18.>

-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 2. 식품산업의 진흥·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개발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공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1., 2020. 2. 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1조의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정보·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식품산업진흥 및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정보분석
2.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소비 현황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분석
3. 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7.]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①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9., 2013. 3. 23., 2020. 2. 18.>

1. 해당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7. 국내외의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8.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2. 11.>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 2. 11.>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11.>

[본조신설 2010. 1. 25.]

[제목개정 2020. 2. 11.]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9., 2013. 3. 23., 2020. 2. 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자재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7.]

제13조의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본조신설 2018. 12. 31.]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18. 12. 31., 2020. 2. 18.>

② 삭제 <2020. 2. 18.>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1., 2013. 3. 23., 2018. 12. 31., 2020. 2. 18.>

④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7. 21., 2013. 3. 23., 2018. 12. 31., 2020. 2. 1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9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5., 2011. 7. 21., 2013. 3. 23., 2015. 3. 27., 2018. 12. 31., 2020. 2. 11., 2020. 2. 1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7. 21., 2013. 3. 23., 2015. 8. 11., 2018. 12. 31.,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4.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⑦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8. 12. 31., 2020. 2. 11.>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20. 2. 18.>

⑨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2018. 12. 31., 2020. 2. 11., 2020. 2. 18.>

⑩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8. 12. 31.>

⑪ 그 밖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3. 27.,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2. 18.>

1.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2. 대한민국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열람·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열람·수거”로, “해당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본조신설 2015. 8. 11.]

[제목개정 2018. 12. 31.]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1. 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제16조 삭제 <2011. 7. 21.>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삭제 <2019. 8. 27.>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2. 18.>

1.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보급 사업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도·자문 사업
3.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 및 관리 사업
4.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식품의 해외 인증·표준을 통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보급·지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적 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농산물 및 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9., 2013. 3. 23., 2020. 2. 1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보급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의 조리과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2013. 3. 23., 2020. 2. 18.>

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 ① 정부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20. 2. 18.>

② 제1항의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9., 2020. 2. 18.>

제19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농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가공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용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7. 21.]

[제목개정 2020. 2. 18.]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

다. <개정 2018. 12. 31., 2020. 1. 29.>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1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1.]

제19조의4 삭제 <2020. 2. 18.>

제19조의5 삭제 <2020. 2. 18.>

제19조의6 삭제 <2020. 2. 18.>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7. 21.,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기준·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

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7. 21., 2013. 3. 23.,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1., 2013. 3. 23., 2020. 2. 18.>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본조신설 2015. 6. 22.]

제22조의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9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20. 5. 19.]

제23조 삭제 <2012. 6. 1.>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전문개정 2011. 7. 21.]

[제목개정 2015. 6. 22.]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제26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본조신설 2011. 7. 21.]
 [제목개정 2015. 6. 22.]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1., 2012. 6. 1., 2015. 3. 27., 2015. 6. 22., 2018. 12. 31., 2020. 2.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 1의2.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에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1의3.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 1의4.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
- 1의5. 제14조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는 행위
3.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우수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4.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5.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9.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7. 21.,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1. 우수식품등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인증을 받은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1., 2013. 3. 23., 2015. 6. 22., 2018. 12. 31., 2020. 2. 11., 2020. 2. 18.>

③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7. 21.,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1., 2015. 6. 22.>

⑤ 조사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1. 7. 21., 2020. 2. 11.>

⑥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1., 2015. 6.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2. 11., 2020. 2. 18.>

[제목개정 2015. 6. 22.]

제2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5. 6. 22.>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1의2.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 1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1의4.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 2. 삭제 <2012. 6. 1.>
- 3. 삭제 <2011. 7. 21.>
- 4. 삭제 <2012. 6. 1.>
-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 6.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제29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7. 21., 2012. 6. 1., 2013. 3. 23., 2015. 6. 22., 2018. 12. 31., 2020. 2. 11., 2020. 2. 18.>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2. 정기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4. 업종전환·폐업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

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5. 6. 22.]

제30조(승계) ①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 7. 21.,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0. 2. 18.>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제5장 보칙

제31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3. 9., 2011. 7. 21., 2012. 6. 1., 2013. 7. 30., 2015. 6. 22., 2019. 8. 27., 2020. 3. 24.>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
농산물·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 3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
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
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09. 6. 9., 2010. 1. 25., 2010. 5. 25., 2011. 3. 9., 2011. 7. 21., 2012. 6. 1.,
2013. 3. 23., 2013. 7. 30., 2015. 6. 22., 2017. 11. 28., 2019. 8. 27., 2020. 2. 18.,
2020. 3. 24.>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 삭제 <2012. 6. 1.>
3. 삭제 <2009. 6. 9.>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 4의2. 삭제 <2020. 2. 18.>
- 4의3. 삭제 <2012. 6. 1.>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 5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 5의3. 삭제 <2011. 7. 21.>
- 5의4. 삭제 <2011. 7. 21.>
- 5의5. 삭제 <2011. 7. 21.>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

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8.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제33조의2(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2015. 3. 27., 2015. 6. 22., 2018. 12. 31., 2020. 2. 18.>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 1의2. 제14조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의 취소
2. 삭제 <2019. 8. 27.>
3. 삭제 <2020. 2. 18.>
4.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5.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 ② 삭제 <2020. 2. 18.>
 -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7. 21., 2015. 6. 22.>
 -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1. 7. 21., 2015. 6. 22.>

[본조신설 2009. 5. 8.]

[제목개정 2011. 7. 21.]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9., 2011. 7. 21., 2013. 3. 23., 2020. 2. 18.>

제35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우수 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5. 6. 22.,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1., 2015. 6. 22., 2018. 12. 31.>

1. 제25조제1호의2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1의2. 제25조제1호의3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한 자
- 1의3.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2의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 3의2.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

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4.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5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8.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1., 2015. 6.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4. 삭제 <2018. 12. 31.>
 5. 삭제 <2018. 12. 31.>
 - 5의2. 삭제 <2018. 12. 31.>
 6. 삭제 <2018. 12. 31.>
 - 6의2. 삭제 <2018. 12. 31.>
 7.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1., 2015. 3. 27., 2015. 6. 22., 2015. 8. 11., 2018. 12. 31.>

1. 삭제 <2020. 2. 18.>

1의2.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1의3. 제25조제1호의5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6항(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12. 31.>

③ 제1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7. 21., 2018.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1. 25., 2011. 7. 21., 2013. 3. 23., 2018. 12. 31., 2020. 2. 18.>

부칙 〈제17618호, 2020. 12. 8.〉 (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⑬ 생략